

# 언론중재

2003년 겨울호

특집

## 언론사간 비판과 명예훼손

- 미디어비평의 이상과 현실
-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의 면책기준  
기고/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
- 2003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연구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

2003. 겨울

차 례



기간/2003년 겨울호 • 제23권 • 제4호/통권89호  
 인쇄/2003년 12월 25일 • 발행/2003년 12월 30일  
 등록/1981년10월14일 등록번호/바-692  
 발행인/박 영 식 • 편집인/최 정  
 인쇄인/이 병 석  
 발행/언론중재위원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25  
 (프레스센터빌딩15층)  
 전 화:732-6031~5, 732-6011~3, 725-0050,  
 730-9498, 2001-7627  
 FAX:730-9420, 730-5487, 732-7585  
 www.pac.or.kr  
 식자,편집/태성인쇄기획  
 인쇄/(주)제이디씨텍  
 표지디자인/현춘수

## 특 집

### 언론사간 비판과 명예훼손

- 4 • 미디어비평의 이상과 현실 • 박영상
- 15 •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의 면책기준 • 김재협

## 기고/연재

- 36 •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하) • 박용상

## 연구보고

- 54 • 2003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연구

## 지방트론회

- 80 • 언론피해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 • 윤경

## 해외시찰 보고서

- 86 • 미국·일본 신문의 옴부즈맨제도를 중심으로 • 권오근

## 위원칼럼

- 96 • 신문광고 - 홍수, 가뭄 • 이연수

## 해외동향

- 98

## 자 료

- 102 • 언론중재신청사례
- 122 • 최근의 국내언론관계판결
- 146 •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 154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 언론과 법

- 158

## 위원회소식

- 164

## 언론법제관련문헌

- 166

## 지상중계

- 168 • On-Line 중재상담실

- \* 본지는 잠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당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방송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 특 집

언론사건 비판과 명예훼손

## 미디어비평의 이상과 현실

박 영 상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교수

- 한양대 문리대 신문학과 겸
- 미국 미주리대 언론학 석, 박사
- 한양대학교 사헌대학 학장
- 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장
- 저술: '언론자유, 책무, 그리고 중재제도',  
'공적 보도자료의 한계와 책임',  
'신문윤리와 매체비평'

### I. 문제 제기

2003년 10월부터 EBS에서 「미디어 바로 보기」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지상파 공영방송 3사가 모두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을 편성한 상황이 되었다. 더욱이 이들 프로그램의 편성시간대나 방송시간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각 방송사의 기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sup>1)</sup> 신문의 경우는 1988년 <한겨레>가 편집국내에 여론매체부를 두어 본격적인 미디어비평을 시작했고, 지금은 <대한매일>, <경향신문> 등 일부 신문이 고정적인 미디어란을 두거나 미디어비평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기자협회보>나 <미디어오늘>과 같은 미디어 전문지와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인터넷언론까지 미디어비평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가히 '미디어비평의 전성시대'라 할만하다.

2000년대 접어들어 이처럼 미디어비평이 활성화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미디어환경의 변화가 한 몫 한 것으로 평가된다(김창룡, 2003). 인터넷언론으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방송보도의 성역', '신문과 방송의 밀월관계', '언론계 비리를 눈감아 주는 침묵의 카르텔'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김대중 정부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계의 만연한 불법 비리를 공개했다면 인터넷 언론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과 실시간 동영상 제공 등으로 기존 언론 판도와 질서를 흔들었다. 일부 신문과 지상파방송에 의한 '뉴스와 정보의 독점시대'의 종말을 고한 것이다.

미디어비평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만큼 그간 이루어진 미디어비평의 공과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sup>2)</sup> 미디어비

1) 2003년 6월 28일 첫방송을 시작한 KBS1의 「미디어 포커스」는 토요일 저녁 황금시간대인 9시 30분부터 10시 10분까지 40분간 방송된다. EBS의 「미디어 바로 보기」도 일요일 저녁 7시부터 7시 40분까지 편성되어 있다. 오히려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의 효시로 꼽히는 MBC 「미디어비평」은 우여곡절 끝에 제목을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으로 변경하고 시간대도 다소 늦은 금요일 밤 11시 15분으로 잡혔다.

2) 올해만 해도 지난 6월 한국언론정보학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주관한 토론회가 있었고, 11월에는 한국방송학회의 <쟁점과 토론>, 연이어 관훈클럽 주최 세미나가 열렸다.

194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디어비평 전문지라고 할 수 있는 <비판신문>이 창간

평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미디어간 상호견제와 비판을 통해 언론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평가에서부터 생존을 위한 '진흙탕 싸움'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시각에 이르기까지 여러 입장이 개진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디어비평에 대한 평가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근거로 그러한 평가를 내렸느냐 하는 점이다.

일부의 평가를 보면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비평이 갖는 의미나 필요성에 대한 본질적 논의 없이 특정 미디어나 정부에 대한 감정이 아무런 여과 없이 공공연히 노출되기도 한다. 때로는 구체적인 논증도 없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으로 비평행위를 폄하하거나, 비평행위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나 하는 음모론적 시각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단 한 건의 사소한 실수를 가지고 그간의 비평행위 전반을 싸잡아 비판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더욱이 이런 지적이 주된 비판대상으로 지적되어 온 미디어를 통해 나올 경우 이는 또 다른 상호공방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무책임한 일부의 주장으로 말미암아 미디어비평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사라지고 미디어의 비평행위 자체를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보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미디어비평의 본질과 기능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올바른 미디어비평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현재 전개되고 있는 개별 언론사의 미디어비평 행위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미디어

비평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믿는다.

## II. 미디어비평에 대한 기존 논의

우리나라 미디어비평의 역사는 일제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최경진, 2003). 언론전문지의 효시는 <신문연구>로 1928년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 연구단체로 알려진 조선신문연구회가 발행한 잡지였다. 이 외에 일제 치하와 해방 후에도 여러 언론전문지들이 발행된 기록이 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디어비평 전문지라고 할 수 있는 <비판신문>이 창간되었고, 1952년에는 <신문의 신문>이 발간되었다. 주간 형태로 발간된 이 신문들은 비록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시사문제도 다루긴 했지만 언론과 출판 문제에 대한 비판적 기사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던 것으로 평가된다(백승권, 1996: 19).

### 1. 신문의 미디어비평

1970년대 중반부터는 방송이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반 신문에서 방송관련 기사나 비평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1974년 <한국일보>에는 '주부의 TV 주평', <중앙일보>에는 '주간 TV평'이 게재되었고, 1977년 <동아일보> 'TV 주평', 1978년 <조선일보> 'TV 주평'이 신설되었다. 이 때부터 각 신문마다 텔레비전 주평과 모니터란이 고정확대되었다(최경진, 2003). 이 당시 신문에 게재된 내용들은 대부분 미디어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비평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

개나 모니터링에 가까운 것이었다.

체계적인 미디어비평은 1988년 <한겨레>가 독립부서인 여론매체부를 두면서 시작되었다. 또 저널리즘 비평 전문지인 <기자협회보>나 <미디어 오늘>도 선도적으로 미디어비평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정국과 맞물려 <경향신문>이 미디어면을 고정하였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비정기적이지만 미디어비평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미디어비평에 대해 최영목(2001)은 방송비평 기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방송 프로그램의 사회적 맥락과 수용자의 측면을 배제하고 있다. 둘째,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주요 비평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신문사마다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비평하고 있으며,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광고 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셋째, 보도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넷째, 비평이 감상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석과 평가의 측면이 약하다. 다섯째, 규범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력, 즉 나쁜 언어, 선정성, 역기능적 측면을 주로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기태(2001)도 신문의 미디어비평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동일한 기사나 프로그램을 비평하면서도 평가마다 서로 상반된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 과정은 없고 결론만 있는 비평이 많다. 셋째, 이슈 중심의 부정기적 미디어비평이 많다. 넷째, 미디어 '비평'을 미디어 '비판'으로 판단하는 경향

성이다. 다섯째, 전문성과 성실성이 부족한 비평이 있다. 여섯째, 칭찬에 인색한 비평이 많다.

무엇보다 이 시기의 미디어비평의 활성화는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첫째, 언론개혁 정국에서 벗어난 언론간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각 언론사들이 앞 다투어 미디어비평을 양산함으로써 자사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상대방에 흠집을 내거나 자사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언론매체 상호간의 비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동일한 공론장 기능을 수행하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그 긍정적인 사회기여에 대한 기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생산적인 비판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비평의 상대방 또한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상대방체의 약점을 잡아 흔들려는 의도에서 시작되는 매체비평은 오로지 '비방' 차원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 이처럼 오로지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그 입이 걸수록 효과적'이라는 발상이 난무하고 있다. 상황이 어찌됐든 일단 한바탕 욱부터 쏟아 부어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진술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설령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 셈이다. 치열한 공방의 와중에 품위를 지키려다간 되레 역공을 당할 우려가 있다. 일부 언론의 미디어비평에 사용되는 용어나 논리 전개방식은 이러한 '맞장 뜨기' 전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비평은 최소한의 품위 유지나 질적 수준조차 유지하기 어렵다.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을 편성한 3개 방송사가  
모두 공영방송사라는 점

## 2. 방송의 미디어비평

신문의 방송에 대한 비평이 자유로운 것과 달리 방송의 신문에 대한 비평은 얼마 전까지도 일종의 금기처럼 여겨졌다. 이를 깨고 방송에서 본격적인 미디어비평을 시작한 것이 2001년 6월 MBC의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이었다. 2003년 접어들어 KBS도 6월 28일부터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인 「미디어 포커스」를 방송하면서 본격적인 미디어비평 대열에 합류했다. 10월 15일에는 EBS까지 「미디어 바로 보기」 프로그램을 편성하였고, MBC는 2003년 11월부터 「미디어비평」의 제목을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으로 바꾸고 포맷과 방송시간을 변경하여 계속 방송하고 있다.

사실, 방송이 신문이나 다른 미디어의 내용에 대해 비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신문이 방송을 비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송도 신문의 내용에 대한 비평을 할 수 있어야 미디어간 상호비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공교롭게도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을 편성한 3개 방송사가 모두 공영방송이라는 점이다. 특히 지난 11월 한국방송학회에서 주최한 <쟁점과 토론>에서는 공영방송의 미디어비평 활동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간에 뚜렷한 시각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다.

우선, 공영방송의 미디어비평 행위 자체에 반대하는 김우룡(2003)은 KBS와 MBC의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첫째, 공영방송의 미디어비평, 특히 특정 신문비판은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할 최대가치인 보편적 서비스에 역행한다고 한다. 둘째, 공영방송이 특정 신문을

‘조폭언론’, ‘수구언론’, ‘족벌언론’ 등으로 지칭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악의적 선전이다. 셋째, 미디어비평은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좋은 독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넷째, 방송과 신문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반목을 부추기는데 일조 하였다. 다섯째, 정부의 부당한 언론정책을 제대로 비판한 적이 없어 언론자유 신장에 기여하지 못했다. 여섯째, 미디어의 질 향상, 공정보도 성취에 기여하기 보다는 미디어의 사회적 공신력을 크게 추락시켰다. 일곱째, 대체로 정부, 노조, NGO와 같은 목소리를 낸다. 여덟째, 공영방송의 신문공격은 방송의 정치도구화 비판을 낳기 쉽다.

그러나 같은 세미나에서 김창룡(2003)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는 미디어간 상호비평이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언론계 내부 비리, 부패에 대한 ‘침묵의 카르텔’이 타파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보도 검증을 통한 저널리즘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였다. 셋째, 이종매체간 상호비판과 감시체제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방송주권’과 ‘시청자 주권 시대’를 선도하는 공공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나아가 그는 공영방송이 공공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은 언론인들의 보도와 윤리 문제, 신문사·방송사 등의 뉴스와 경영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며 이런 문제에는 각 언론사, 언론인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는 이런 사안이 ‘동업자 봐주기’ 차원에서 제대로 사회의 주요의제조차 되지 못했다

는 것이다. 이처럼 금기시 되던 사안에 대해 특정 프로가 정면으로 다루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정성과 신뢰성이며, 그래서 민감하고도 중요하지만 시청률은 낮을 수밖에 없는 미디어비평 같은 프로는 공영방송만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낼 수 있는 기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 Ⅲ. 미디어비평의 본질과 기능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미디어비평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내려졌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은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미디어비평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학술적, 사회적 평가 가운데 자사에 유리한 내용은 침소봉대 하고 자사에 불리한 주장은 왜곡하거나 축소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sup>3)</sup>

결국 이 과정에서 미디어비평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논의는 막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비평(criticism)은 문학이나 예술작품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 대중문화 전반에 대한 것으로까지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현대비평의 방법론은 과거 전통적인 문학비평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지만 비평의 본질적 목적이나 기능

은 전통비평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래 서구에서 비평에 해당하는 단어인 'criticism'은 희랍어 'krinein', 라틴어 'criticus'에서 나온 말이다. 희랍어 'krinein'은 '분할', '구분' 또는 '결정하다', '식별하다', '권위 있는 의견을 말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라틴어 'criticus'는 '재판관', '감정가', '심사원'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구인환, 구창환, 1976: 342). 이러한 어원적 의미를 종합해볼 때 문학비평이란 작품을 해석하고 분류하고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가리킨다(이상우 외, 2002: 9). 여기서 해석이란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했는가를 세밀히 살펴보는 행위이고, 분류는 어떤 작품이 연구될 가치가 있고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식별하는 일이다. 평가는 한 작품이 얼마만큼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비평의 개념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미디어비평이란 넓게 보자면 '삶의 환경을 이루는 대중매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기호와 이미지로 포장돼 있는 대중매체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이다(최영목, 2001). 후자의 의미로 해석할 경우 미디어비평은 비평의 대상만 다를 뿐 그에 대한 해석과 분류, 평가라는 본질적 개념은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문학비평은 작품(work)과 작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비평과 다소 다르다. 낭만주의 시대에 예술

3) 심지어 지난 2001년에는 한 신문사가 소장학자가 발표한 세미나 발제문 가운데 자사의 구미에 맞는 부분만을 거두 절미한 채 인용하여, 해당 학자로부터 항의를 받는 해프닝도 있었다.

무엇이 좋은 비평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진실성, 효용성, 창조성, 복합성과  
일관성 등을 꼽을 수 있어

가들은 신의 영감을 받은 창조적인 능력을 지닌 개인으로 인식되었다. 예술가가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하고 지배함으로써 작가는 의미의 유일하고 중심적인 원천으로 정의되었다. 이처럼 창조적 작가가 생산한 작품 그 자체와 예술가로서의 작가 문제를 주로 탐구하는 전통비평에 대한 의문이 1960년대 이후 제기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바르트(Barthes, 1977)는 작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작가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다음의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전통비평에서 지나치게 신화화된 작가 이미지를 거부한 것이다. 둘째, 작가가 텍스트 의미의 원천이자 기원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의미생산자로서 독자나 수용자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셋째, 하나의 텍스트는 수많은 "문화적 요인들이 서로 충돌하는 다차원적 공간"이므로 작가에 의해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써 현대비평은 '작가와 작품의 관계'로부터 '텍스트와 수용자의 관계'로 관심의 초점을 변화시켰다. 텍스트는 예술가로서 작가가 의미를 고정시켜 놓은 자족적인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코드, 관습, 상징의 재배열로 인식된다. 텍스트 비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구성원리라고 할 수 있는 코드(code)를 이해하는 일이다. 따라서 현대비평은 텍스트의 구조, 수용, 맥락 등에 관심을 가지며, 의미가 만들어지는 사회적 맥락에도 초점을 맞춘다(주창윤, 최영목, 2001: 18-9). 미디어비평 역시 이러한 현대비평의 방법을 미디어 생산물을 비평하는데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좋은 비평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진실성, 효용

성, 창조성, 복합성과 일관성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꼽을 수 있다(박철희, 김시태, 1995: 34-8). 첫째, 진실성은 텍스트와 사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텍스트가 사회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물론 여기서 진실성이 누구의 진실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따라 평가의 내용은 달라진다. 또 진실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진실이 사실(fact)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의미한다면, 특정 텍스트가 과연 역사적으로 진실했는가 진실하지 않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둘째, 효용성이란 텍스트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기준을 말한다. 텍스트가 수용자에게 주는 영향에는 즐거움, 정보, 교육 등이 있다. 텍스트가 수용자에게 독서나 시청의 즐거움을 얼마나 주는지, 그리고 얼마나 교육적인 기능을 담당하는지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창조성은 주로 텍스트와 작가와의 관계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얼마나 개성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창조성은 낭만주의 예술의 평가기준이지만 비단 문학뿐 아니라 현대의 대중문화에서도 중요한 기준임에 틀림없다.

넷째, 복합성과 일관성은 텍스트의 수준에서 구성과 기술적 표현이 잘 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구성이 좋다"거나 "잘 짜여져 있다"라고 할 때는 복합성과 일관성의 기준을 사용해서 평가한 것이다.

한편, 미디어비평은 수용자로 하여금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설명의 폭을 넓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평은 텍스트에 대한 기술을 넘어서서 수용자로 하여금 무엇인가 성

찰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좋은 비평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 제도, 사회에 대해 반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성찰성은 텍스트와 수용자 사이, 그리고 수용자와 사회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비평의 요소이다(주창윤, 최영목, 2001: 16). 올릭(2000, 53-60)은 이를 미디어비평의 '비판적 안내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안내자로서의 역할이란 단순히 관광안내자처럼 텍스트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하찮은 부분과 내부의 깊은 부분 모두를 간파함으로써 수용자로 하여금 이해와 성찰을 이끄는 것이다.

나아가, 미디어비평은 프로그램이나 기사 속에 들어있는 형식과 주장, 역사적·심미적 내용 등을 설명해 줌으로써 수용자들이 미디어를 소비하는데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 보도와 편집에 대한 해석 기능이 이것이고 또 논쟁이 되는 사안의 보도태도와 해설을 점검하고 비평함으로써 쟁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도록 기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미디어비평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김우룡, 2003).

첫째, 해석자로서 기능해야 한다. 미디어비평은 미디어 환경을 총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미디어 조직과 운영, 소유와 정책 등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 신문·잡지의 레이아웃에서 마케팅까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비평은 충실한 미디어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교육자로서의 기능이다. 텔레비전의 경우 시민단체의 소비자운동이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사회적 압력단체는 종교, 인종 그리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디어 소비자인 시민에 대한 교육자 역할을 하는데 미디어비평이 기여해야 한다.

셋째, 이론가로서의 기능이다. 비평에는 이론과 방법 그리고 정신이 있어야 한다. 비평가란 인물, 행위, 특히 학설, 작품 등의 가치, 능력, 정당성, 타당성, 윤리성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사람인 바, 미디어에 대한 어떤 기준을 기술적으로 적용하거나 검사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엄격하고 냉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넷째, 감시자로서의 기능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할 만큼 미디어의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은 막강하다.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으나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국민은 많지 않다. 지나친 상업주의, 정치적 편향성,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그 밖에 미디어의 비윤리적 측면을 감시하고 고발하는데 비평은 앞장서야 한다.

다섯째, 조정자로서의 기능이다. 사회는 혼란스럽다. 이해가 상충되는 이익집단 간에 갈등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고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지역 간에 마찰과 불협화음도 쏟아져 나온다. 미디어는 양극단을 배제하고 중용주의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미디어비평이 미디어간에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고 특정 신문을 공격하는 전위대처럼 인식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비비평(非批評) 또는 사이비 비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살펴 본 미디어비평의 본질과 기능은 이상적인 모델에 가깝기 때문에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비평의 주체와 대상간에 작용하는 권력관계가 비평의 내용과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비평 활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요인, 예컨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 또한 미디어비평의 현실을 규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매체간 상호비평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해  
민주적 여론정치의 활성화에 기여

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비평의 이상적 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그 자체가 현실 미디어비평의 공과를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IV. 제언: 바람직한 미디어비평의 방향

미디어비평은 미디어 상호간에 언론의 공적 기관으로서의 보도 및 논평기능을 상호검증하고, 그로 인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법원에서도 “매체간의 광범위한 상호비평의 활성화는 언론의 부패를 막는 안전판이자 국민의 정보선택권을 넓혀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지법 2001. 4. 11. 99가합96928). 이 판결의 의미를 해석하면 첫째,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개개 언론사가 공급하는 다양한 의견을 타 언론사에 의한 비판과 함께 접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매체간 상호비평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해 민주적 여론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언론사간의 상호비평은 언론부패를 막는 안전판으로 부패 예방적 기능까지 수행한다는 것이다(김택수, 2003). 이러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비평행위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미디어는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 복무해야 하는 공익기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이중적 성

격을 갖고 있다.<sup>4)</sup> 따라서 미디어간 상호비평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은 공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언론윤리와,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언론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의 룰을 지키기 위한 기업윤리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구체적인 규범내용은 다르지만 이상적인 언론환경에서 양자는 상호 공존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익은 사적 이익이 최대화될 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자유주의의 기본명제이다. 때문에 개별 언론기업들이 건전한 경쟁질서를 만들기 위해 기업윤리를 제대로 지켜낸다면 이들의 사익은 최대화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언론윤리에서 지향하는 공익의 실현으로 귀결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실에서 언론윤리와 기업윤리가 상호 공존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언론기업이 사익 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업윤리의 본질적인 목적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왜곡된 기업윤리의식을 내세워 언론 본연의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건전한 미디어비평을 공박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기업윤리를 왜곡하는 대표적인 논리가 이른바 ‘동업자 윤리’이다. 시장이 안정되어 있을 경우 기존의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의 시장진입을 막으려 한다.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다. 다른 기업들로부터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쟁보다는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불과 얼마 전 까지도 우리 언론에서 미디어간 상호비평이

4) 지난 2001년 4월 <중앙일보>와 <대한매일>간에 있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언론기관은 전체를 하나로 보아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는 하나, 하나의 통일적 단체로서의 성격을 띤 것이라기보다는 개개 언론사의 단순한 집합체로 그 구성원인 개개 언론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라는 속성을 함께 띠고 있다”고 한 것은 이러한 언론의 이중적 성격을 지적한 것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기껏해야 인상비평 수준에 머물렀던 이유도 이러한 '동업자 윤리'의식이 지배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공고해 보이는 '카르텔'이라고 해도 막상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동업자 윤리'는 사라지고 다만 살면 된다는 '자사 이기주의'적 사고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은 모든 사회적 현상을 자사의 이익이라는 잣대로 재단하게 된다. 자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사회적 현상은 모두 나쁜 것이며,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틀에 빠지는 것이다. 이 때 미디어비평은 자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미디어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변질된다. 여기서 국민의 알권리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당장 시장에서 살아남느냐 하는 생존경쟁 과정에서 언론윤리는 사치스런 덕목으로 치부된다.

이처럼 왜곡된 기업윤리의식은 당연히 버려야 하며, 언론윤리와 기업윤리가 상충할 경우에 올바른 언론기업이라면 항상 언론윤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언론기업의 존재론적 의미는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인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이윤 실현은 언론의 본질적 기능 수행의 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따라서 언론의 기업으로서의 가치는 단순한 상품판매설적이거나 이윤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언론매체로서의 기능 수행에 요구되는 언론윤리의식이 우선되지 않은 기업윤리는 허상에 불과하다. 이를 외면한 채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우선한다면, 당장은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

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신뢰 상실로 언론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에는 기업적 가치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언론에 요구되는 윤리적 의무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미디어비평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한 일이다. 미디어비평의 기능은 자사는 물론 타 언론사가 언론으로서 가치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미디어비평의 대상이 되는 다른 미디어는 더 이상 시장에서의 동업자나 경쟁자가 아니다. 미디어 스스로가 최우선적인 역할로 자부하는 '환경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주저 없이 펜을 들어야 한다.

비평이란 용어에 내재된 의미는 일종의 '결점 찾기'(fault-finding)라고 한다(Williams, 1976: 84-6). 따라서 비평은 부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경우가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미디어의 비평행위도 주로 현상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판적인 논조를 띠기 마련이다. 그러나 미디어비평의 주체는 언제나 또 다른 비평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평주체 스스로가 엄격한 도덕적 규범과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바람직한 미디어비평을 위해 요구되는 윤리적 덕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디어비평은 무엇보다 객관적 사실(fact)에 입각해서 출발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라는 덕목은 사실 언론의 모든 뉴스보도행위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언론윤리이다. 미디어비평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물론 엄격히 말해서 미디어비평은 일반적인 보도행위와 다소 성격이 다르다. 비평가의 주관

언론의 미디어비평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되어야

적 의도와 판단이 강하게 개입될 수밖에 없다. 비평의 대상이나 이슈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비평의 방향을 결정해서 결론을 내리는 방식까지 비평가는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출발한다. 이런 측면에서 비평가는 객관적인 관찰자라기보다는 사실에 대한 해석자의 위치에 있게 된다.

따라서, 미디어비평에 요구되는 기본 덕목이란 것은 보도의 사실성이나 정확성 자체보다는 사실 해석의 정확성과 균형성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비평대상이 되는 매체가 잘못된 사실을 전달했다든지, 사실을 왜곡했다든지, 또는 사실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어 비평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해야 비로소 비평대상 스스로도 수긍할 수 있는 미디어비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미디어비평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과거에는 언론학을 전공한 교수나 외부 비평가들이 칼럼 형식으로 미디어비평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장에 대한 배려가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현업 종사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한편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지 못하고 주변만 들쭉시키고 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물론 최근에는 미디어비평 기사나 프로그램이 정기성을 띠면서 전담부서도 생기고 기사나 PD의 전문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미디어비평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러한 수준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문제점을 나열하고, 주제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인터뷰나 주장을 몇 가지 제시한 다음 다분히 원론적인 차원에서 결론을 맺고 끝날 수밖에 없다.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파헤치거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를 못한다. 결국 언론인 스스로가 가장 싫어하는 외부 비평의 문제점인 '인상적 비평'과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심층적인 미디어비평이 필요하다. 단순히 특정 시점의 기사나 프로그램을 관찰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식의 비평은 인상비평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언론이 특정 사안에 대해 일관성 있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일은 미디어비평의 핵심 과제이다.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논조가 바뀔 경우 그 이유를 따져 묻는 것 자체가 곧 미디어비평의 기본 임무 중 하나인 것이다.

특정한 시점의 기사나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수용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매체의 행위에 대한 비판이야말로 심층적인 미디어비평이 담당해야 할 몫일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한 비평의 효과는 투자한 부분보다 훨씬 클 수 있을 것이다.

현상에 대한 해석자이자 비평가로서의 언론 매체에 주어진 미디어비평의 예리한 칼날은 항상 밖으로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젠든 자신을 겨눌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미디어비평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망각할 때 미디어비평은 자신은 물론 한국 언론 전체에 심각한 신뢰성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

#### 〈참고문헌〉

Allen, R.(1987), Channels of Discourse: Television and

- 
- Contemporary Criticism(김훈순 역, 1992)
- Barthes, R.(1977), "The death of the author", in Image-Music-Text. Glasgow: Fontana
- Orlik, P.(1994), Electronic Media Criticism : Applied Perspective(박기태 역, 2000)
- Williams, R.(1976), Keyword: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London: Fonta Press
- 구인환, 구창환(1976), <문학개론>, 삼영사
- 김기태(2001), "매체비평 다시읽기", <신문과 방송>, 2-3월 호
- 김우룡(2003), "방송의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을 비평한다", 한국방송학회 <쟁점과 토론> 세미나
- 김창룡(2003), "미디어비평의 현실과 과제", 한국방송학회 <쟁점과 토론> 세미나
- 김택수(2003), "판결로 본 매체간 상호비평의 의의와 한계", <미디어비평' 과 한국 TV저널리즘>,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 박철희, 김시태(1995), <문예비평론>, 탑
- 백승권(1996), "되짚어보는 언론비평지 역사", <미디어오늘>, 5. 15
- 이상우 외(2002), <문학비평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 주창윤, 최영목(2001), <텔레비전 화면개기>, 한울
- 최경진(2003), "미디어 저널리즘에 대한 미디어 전문가의 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 2003년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 최영목(2001), "방송의 미디어비평, 꼭 필요한가?",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 상호비평의 전망과 과제> 세미나 발제문

# 특 집

언론사간 비판과 명예훼손

##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의 면책기준

김 재 협

수원지법 부장판사

- 서울대학교 법대 졸, 대학원(법학석사) 졸
-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 프랑스 엑스마르세이유 제3대학 언론방송법 DESS, DEA학위취득
- 저술: 『언론과 범죄보도』, 『한국의 반론보도청구권』, 『공익에 의한 언론자유 제한』, 『위법한 취재관행과 법적 환경』 등 다수

### I. 글머리에

1999년 말에 어느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 사주의 조세포탈 혐의 조사 및 구속과 이에 대한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들의 행태나 보도태도 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일련의 기사를 게재하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발로 여러 건의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이 이어졌다. 그리고 최근 들어 신문이나 방송할 것 없이 미디어비평이라는 형식으로 다양하게 매체비평보도를 다루고 있다. 자신의 매체에 대한 자체 비평도 가끔씩 다루기는 하나 주로 다른 신문이나 방송 등에 대한 매체비평을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언론사간의 상호비평보도가 증가됨에 따라 언론 보도에 대하여 상시적인 전문적·체계적 비판과 감시의 역할 증대로 언론보도가 내실화·충실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다른 경쟁 상대방 언론사의 언론보도에 대한 왜곡되거나 편협한 시각에 기초한 분석과 비판, 때로는 경쟁에 치우친 악의적인 비판으로 인하여 언론사간 상호 불신과 대립이 격화되고 독자나 시청자로부터도 언론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급기야는 그 부정적 측면이 지나치게 되어 법적 소송으로 야기되는 결과에 이르기기도 한다.

우리나라 개별 언론사들의 이념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언론사간 상호비판이 활발해졌고, 그에 따라 언론사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하여, 단순히 사인이나 공직자등 공인이 제기하는 명예훼손소송의 효과를 넘어 언론사가 제기하는 명예훼손소송은 그에 따른 자유로운 언론보도의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훨씬 커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sup>1)</sup>

1) 배병일, “언론사간 매체비평과 소송의 한계”, 『언론중재』 2001 겨울호, 4면 참조.

그리하여 자연히 언론사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기준의 법리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소송<sup>2)</sup>에 있어서의 일반적 법리는 언론사나 그 소속 기자가 피고로 된 유형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지, 언론사가 직접 원고가 된 경우를 상정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 언론사의 면책 판단에 있어서도 원고의 신분<sup>3)</sup>에 따른 별개의 기준 정립, 특히 공적 인물인지 사인인지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대별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정해 왔고, 거기에 덧붙여 언론보도 내용 그 자체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일부 달리하여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그 법리를 형성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법리의 체계화 내지 정형화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는지는 아직 속단하기에 이르다.<sup>3)</sup> 더구나 원고가 언론사인 경우에 관한 명예훼손소송에 대하여는 몇 년 전까지는 그러한 소송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소송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그에 관하여 다른 주체간의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의 법리와 다른 특별한 면책기준의 이론을 구축하여

온 것도 아니다. 다만 원고의 법적 성격 예를 들어 원고가 정치적 공무원, 정당이나 정당인인지, 공직자 등 공인인지,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인지, 단순한 사인인지, 공익단체나 노동조합인지, 언론사인지 등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소송을 유형화하고 구체적 유형과 관련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sup>4)</sup>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언론소송의 유형을 그 명예훼손보도의 내용을 감안하여 피해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법적 성격에 따라 공직자 및 공적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크게 대별하여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그 적용법리를 달리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용인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만이 아니라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판례에 의하여 형성되어 온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이론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다만 그 구체적인 법리나 면책기준은 형식적으로는 미국과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것 같다.<sup>5)</sup> 이론상 미국은 공인에 대한 언론보도의

2)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도 특별히 형사소송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소송은 민사소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한다.

3) 우리 판례를 꼼꼼히 분석해 보면,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인인지에 따라 예견 가능할 정도의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고, 특히 방론의 성격이기는 하지만 의견표명 행위에 대하여 미국과 같은 기준에 따른 절대적 면책 특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설시도 서로 다른 것이 있는 등 다소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설시가 많아 법리의 체계화가 완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체계화 작업이 진행 중인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한위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일고찰", 『저스티스』 2002. 10호, 157면은 유형별 적용법리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5) 김민중, "원고의 신분과 명예훼손법리의 적용", 『언론중재』 2000년 여름호, 32면. 명예훼손 민사소송의 원고가 공직자나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언론기관에 기사조작과 같은 고의가 있거나, 진위에 대한 무모한 경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을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미국에서 발전된 공인이론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로 이해된다.

언론사간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기준도  
원고가 공적 인물인 경우에 관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 언론사에 대하여 명예훼손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적 보도사실 외에 언론사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도 원고가 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원고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명예훼손적 보도사실만 입증되면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명예훼손책임을 인정되고, 다만 피고 언론사가 명예훼손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의 '공익성', '진실성 내지 상당성'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도 피고 언론사가 지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 학설의 대체적인 견해이고 판례도 이에 따르는 것 같다. 즉 통설이나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의 논리적 구조는 원고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피고 언론사가 면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고, 단지 원고가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피고 언론사에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입증책임을 완화 등을 통하여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의 명예훼손책임을 둘러싼 실질적인 모습이 원고나 피고의 사회적 내지 법적 성격이나 보도 내용의 성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판단은 구체적인 사건을 통한 판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는 미국에서는 원고의 신분유형에 따른 법리를 따로 적용함으로써 소송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우리의 판례는 원고의 신분을 일부 감안하기는 하나 표현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표현 영역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적용법리를 달리 함으로써 소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면 우리 판례의 태도를 아직 불확실한 기준 정립을 위한 유동적 단계로 보는 회의적인 지적이 있다.

나아가 언론사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기준의 법리와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하여는 결론적으로 언론사는 그 공적 임무와 역할 내지 활동 내용, 사회에서의 인식 등에 비추어 공적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므로 그 면책기준도 원고가 공적 인물인 경우에 관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공적 인물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법적 성격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달라지고, 보도된 내용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내지 알가치의 정도 등도 달리하므로(물론 그 정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주체의 성격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보도의 내용 즉 보도의 가치에 대한 평가도 덧붙여져야 할 것이다) 공적 인물에 대한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면책범위와는 그 광협을 다소 달리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론사간의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는 원고 언론사는 통상의 다른 공인과는 달리 스스로 반론 수단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 접근이 용이하고 신속한 반론을 할 수 있다는 등의 특수성이 있고, 공적 사안에 대한 상호(또는 다양한 언론 매체에 의한) 공개적인 주장과 반박 등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기대될 수 있으므로, 피고 언론사에게 주어지는 면책의 범위가 더 신축적이고 넓어지는 쪽으로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 방법의 하나로 새로운 기준의 정립을 기대하거나 부분적으로나마 미국의 현실적 악의 이론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필자로서도 그러한 방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리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명예훼손소송의 유형에 따른 법리 개발을 위한 노력의 한 일환으로 공인 이론에 덧붙여 언론사간의 명예훼손소송의 특수성을 살펴보고, 그에 도움이 되는 미국의 판례의 경향을 간략하게 고찰한 다음, 우리의 경우도 언론사간의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나마 미국의 공적 인물 등에 관한 법리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아울러 언론사간의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사건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 있는지 여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그간 있었던 우리 판결을 중심으로 필자의 생각을 덧붙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 II. 미국의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법리와 의견면책특권

### 1. 공적 인물 이론

미국 판례가 현재 취하고 있는 명예훼손법리를 요약하면, ① 원고가 공무원 또는 공인 이면 상대방의 명예훼손적 보도 외에 현실

적 악의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배상을 받을 수 있고, ② 원고가 사인이고 보도된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일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원고는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면 실제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지만 원고가 추정적 손해 또는 징벌적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상대방의 현실적 악의를 증명해야 하며,<sup>6)</sup> ③ 원고가 사인이고 보도된 내용도 사적인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종전의 엄격책임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원고는 상대방의 현실적 악의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추정적 손해와 징벌적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sup>7)8)</sup>

미국에서 공인을 사인과 달리 취급하여 명예훼손 법리를 수정·발전하게 한 이유로는 공인의 공적 생활은 본질적으로 공적인 관심사이어서 그 공개 자체가 공공 이익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고, 공인은 신분상 사회적 문제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자신을 공적인 논란의 대상으로 만들어 국민의 감시와 명예훼손에 처할 증가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점,<sup>9)</sup> 그리고 공인은 보통 허위진술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많으므로 거짓보도를 탄핵하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어 자기의 명예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6) Philadelphia Newspapers, Inc. v. Hepps, 475 U.S. 767, 12 Media L. Rep. 1977(1986).

7) Dun & Bradstreet v. Greenmoss Builders, 472 U.S. 749, 11 Media L. Rep. 2417(1985).

8) 이상과 같은 공인과 사인의 명예훼손소송에 관한 그 성립 요건과 입증책임 등에 관한 미국 판례의 태도와 흐름에 관한 자세한 분석에 대하여는 Kent, R. Middleton, William E. Lee, Bill F. Chamberlin, 'The law of public communication', Pearson, 6ed, 2003, 119-148면 참조.

9)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45, 1 Media L. Rep. 1642(1974). 반면에 사인은 공중에 대한 노출 위험을 용인하지 않았고, 자신의 좋은 이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부분의 이익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결국 명예훼손적 거짓보도에 의하여 침해되는 손해의 회복을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Kent, R. Middleton, William E. Lee, Bill F. Chamberlin, 위 책, 129면 참조.

미국에서는 언론사간의 소송에 있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어

점 등을 들고 있다.<sup>10)11)12)</sup>

또, 공인이론의 영향으로 1995년과 1996년의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소장이 접수된 사건의 82%는 재판(trial)이 시작되기도 전에 판사에 의하여 기각 또는 각하되고,<sup>13)</sup> 명예훼손이 아닌 다른 소권을 주장하여 제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와는 다소 다른 관점이기는 하지만, 미국 판례가 원고의 신분에 따른 명예훼손 법리의 현격한 구별을 피고가 대중언론매체인 경우에 한하는지, 언론매체가 아닌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로 논해지고 있는 것 같다. 피고가 비언론매체인 경우에는 공적 인물이 원고가 되더라도 현실적 악의의 입증 없이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또는 그러한 경우에도 공인 이론에 따른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 연방대법원도 명백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부정하는 입장 즉 피고의 신분에 따른 명예훼손 입

증책임에 관한 법리의 구별 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으로 보인다.<sup>14)</sup>

다른 한편 원고가 언론사인 경우에는 미국의 공인 이론이 다른 방향으로라도 다시 수정되어 적용되는 것인가? 미국의 공인 이론에 따르면 언론사는 그 사회적 역할이나 주관적 관점, 반박 수단에의 접근 용이성 등 어느 모로 보아도 공적 인물, 더 구체적으로는 전면적 공적 인물(all-purpose public figure)<sup>15)</sup>로 분류될 뿐, 언론사를 다른 전면적 공적 인물과는 다른 특수한 공인의 하나로 분류하여 그에 대하여 따로 명예훼손법리를 수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언론사간의 소송에 있어서도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미국의 공인 이론은 더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공공정책결정에 관한 비판 등의 발언을 구별해 내는 '기준'으로서 그 발언 대상자가 공무원 또는 공적 인물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이론으로, 현실적 악의라는 고도의 주관적 위법요

10) 반면에 사인은 침해에 보다 더 취약하고, 반박할 효과적인 수단과 기회가 부족하다고 한다.

11) 한편 공무원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제약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민주정치의 실현 즉 인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결정은 다수가 참여하는 공적인 논쟁을 통하여 관계 인민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그 결정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에 관한 비판을 열어 두어야 하고, 공무원 이외에도 중요한 사회적 결정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도 그 의견을 표명하면 현대사회의 대중적 성격 때문에 중대한 사회적 결정들에 대하여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들고 있는 견해도 있다(전원열,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 2001. 7. 148면 참조).

12) 이재진,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 『언론중재』 2000년 겨울호, 71면에 의하면, 사이버공간에서는 공인과 사인의 구분을 원고가 사이버공간에 얼마나 접근이 용이한가 하는 근접성에 의한다고 한다. 일부 학자들은 컴퓨터를 통해 명예훼손적 글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 누구나 공인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결국 기존 명예훼손법이 정하는 공인, 사인에 대한 구분이 적용됨이 없이 모두 공인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

13) Group Reports Media Won More Libel Suits, New York L.J. 1997, 8, 13자, 6면 참조.

14) 전원열, 위 논문 113면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구별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15) 공적 인물의 세부적 분류와 그 기준에 관하여는 이 논문에서 다루는 것이 주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적어 다루지 아니한다.

소가 요구되는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의 공적 관심사에 관한 발언은 기존의 우리나라 명예훼손법에서의 '공공성 요건 충족 발언'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미국의 공인이론에 대하여는 공인에 대한 오보가 지나치게 보호되면서 개인의 명예가 지나치게 침해되고 있고, 거짓 정보가 판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어 일반인에게도 손해라는 비판도 지적되고 있다.<sup>17)</sup>

## 2. 의견 면책의 특권 등

### 가. 진실의 항변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소송에 있어 원고에게 아주 높은 입증의 부담을 지우고 있어, 피고인 언론매체는 상당히 보호되고 있다. 그 외에 피고가 적극적으로 소멸시효나 면책사유를 입증하여 스스로 방어할 수도 있다.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면책사유는 진실의 항변이다. 주의할 것은 형사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진실이 반드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형사상 처벌의 목적은 피해자의 보상이 아닌 사회의 평화와 질서의 보호이고 특히 선동적 명예훼손죄는 그 보호법익이 권위와 위신인데, 명예훼손사실이 진실이면 오히려 군주의 위신에 더욱 해로운 것이

고, 결투 등의 평화교란을 유발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sup>18)</sup> 그리고 민사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소송이 아닌 프라이버시 소송에서는 진실의 항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통법에 의하면 민사상의 명예훼손소송에서 진실은 절대적 면책사유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1909년 뉴햄프셔주의 판례가 선량한 동기로 정당한 목적을 위해 표현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판시한 이래 상당수 주의 입법이나 판례가 이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의 항변은 1964년 뉴욕타임즈 판결 이후에는 공인이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진실의 허위임을 입증하게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일어나 그 전보다 그 중요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한편 진실의 진실성은 실질적으로 진실이 되는 것이지 모든 사소한 부분까지 진실이어야 함을 요하지 않는다.<sup>19)</sup> 즉 사소한 부정확성은 진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진실이 진실만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 독자나 시청자에게 사실과 다른 암시를 가져오게 할 것이어서 거짓인 명예훼손이 된다.<sup>20)</sup>

### 나. 의견 면책의 특권

미국의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에 의한 법적

16) 전원열, 위 논문 83면도 같은 취지이다.

17) 이재진, 위 논문 51면에 의하면, 1987년 4월 8일자 미국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잘못된 보도와 언론관행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20%를 넘는다고 한다.

18)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1997, 조선일보, 370-371면 참조.

19) Strada v. Connecticut Newspapers, Inc., 477 A. 2d 1005, 10 Media L. Rep. 2165(Conn. 1984). 20) Second Restatement 518조 A, comment f. 참조.

20) Memphis Publishing Co. v. Nichols, 569 S.W. 2d 412, 420, 4 Media L. Rep. 1573, 1579(Tenn. 1978).

사인간의 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은  
의견의 특권에 의하여 면책될  
여지가 거의 없어

책임이 인정되는 진술은 그 진술의 허위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실이 아닌 의견은 진위 여부에 대한 판가름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에 관하여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아 헌법상 절대적으로 보호된다. 이러한 입장은 1974. 6. 25. 미국 연방대법원이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에서 “수정 헌법 제1조 아래에서는 틀린 의견(false idea)이란 존재하지 아니한다. 어떤 의견이 아무리 유해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정정은 다른 의견과의 경쟁에 의해야 하는 것이지 법관과 배심원의 양심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라고 선고한 이후에 정립된 것이다.<sup>21)</sup> 한편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The second Restatement, 1977) 566조는 “명예훼손적인 진술은 의견의 형식일 때 진술에 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그 의견의 기초로서 ‘밝혀지지 아니한 명예훼손적 진술’(the allegation of undisclosed defamatory facts)을 암시하는 경우에만 제소될 수 있다.”<sup>22)</sup>라고 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가 민주사회에서 불가결한 신랄하고 냉소적인 비판 등의 의견도 보호하는 등 의견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의견이라고 이름붙여진 모든 형태의 의견에 면책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제된 사실이 암묵적으로라도 내재되지 아니한 순수 의견(pure opinion)은 절대적으로

면책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적 취향, 문학적 비판, 종교적 신앙, 도덕적 확신, 정치관과 사회 이론 등은 사실이 아닌 개념으로 이른바 평가적 의견(evaluative opinion)은 순수 의견에 속한다. 그리고 공중에게 이미 제공되고 알려진 진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인 등에 대한 비위나 폄훼적 사실을 추론하거나 암시하는 이른바 연역적 의견(deductive opinion)은 표현자의 판단으로 대체적으로 순수 의견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의견 표현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공개된 사실이나 상대방에게 이미 알려진 사실 이외의 정보 전달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정보적 의견(informational opinion)은 연역적이거나 평가적일 수도 있으나 비공개 사실이 존재함을 추리하거나 암시하는 것으로 그 추리나 암시가 정당하지 아니하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sup>23)</sup> 특히 소문에 빚된 의견(purported opinion), 예를 들어 ‘내 의견에 의하면 A는 아동 학대자’라고 말하는 것은 표현자가 A의 행동 등에 관하여 알려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잘못된 사실의 전제가 함축되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sup>24)</sup> 그리고 사인간의 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은 의견의 특권에 의하여 면책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1) 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수정 헌법 제1조에 근거한 면책특권을 인정한 것은 위 Gertz 판결이 처음은 아니었다. 1930년대부터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정한 집단(community)의 경계나 관점을 넘는 ‘공적인 문제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헌법적인 보호를 해왔는데, Cantwell v. Connecticut (1940) 310, U.S. 296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카톨릭 신도들에게 매우 공격적인 발언을 하여 평화를 깨는 선동을 한 Common Law상의 범죄를 범한 사건에서 그러한 발언도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

22) American Law Institute, The second Restatement (1977) 170면.

23) 박용상, 위 책, 443-452면 참조.

24) Milkovich v. Lorain Journal Co., 497 U.S. 1, 17 Media L. Rep. 2009(1990).

그런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 순수 의견이란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판단의 기준은 전통적으로 사용된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그 입증 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그 표현이 전과된 매체 등의 요소를 고려한 전체적 상황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연방대법원이 이 기준을 헌법상 보호되는 의견의 공식적인 검증 수단으로 채택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sup>25)</sup>

#### 다. 기타

연방대법원이 수정 헌법 제1조에 근거하여 공적 논쟁에서의 의견 표현행위와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상대방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하여 국가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른바 고의적 감정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torts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가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로 논의되고 있다.<sup>26)</sup> 그 성립요건은 ① 피고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행동해야 하고(the defendant must act intentionally or recklessly),<sup>27)</sup> ② 그 행동은 극단적이고 과도해야만 하며(the conduct must be extreme and outrageous), ③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해야 하고(severe emotional distress), ④ 피고의 행동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the cause of severe emotional distress)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도를 지나친 행동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판례를 들여보면, 빵을 주문한 소비자에게 쥐를 배달한 행위,<sup>28)</sup> 계속적이고 난폭한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위협하는 행위<sup>29)</sup>가 이에 속한다고 한다. 이 소송은 개인 상호간 특히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와 기업자간의 불법행위 소송으로 주로 이용되어 왔고<sup>30)</sup>

25) Kent, R. Middleton, William E. Lee, Bill F. Chamberlin, 위 책, 155-156면 참조.

26) American Law Institute, The second Restatement (1965) §46 comment b.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참을 수 없는 행위'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주의를 게을리 한 채 극단적이고 과도한 행동을 하여 타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람은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고, 만일 그로 인하여 신체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신체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7) 통상 recklessly를 무모한 부주의 등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뉴욕 타임즈 판결 등에서 현실적 악의와 병행하여 표현된 용어인 reckless disregard로 우리의 법적 용어로 단순 과실이나 중과실 등 과실의 개념에 포함하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우므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8) Great Atl. & Pac. Tea, Co. v. Roch, 153 A. 22(MD, 1931).

29) W. Page Keeton et al., Prosser and Keeton on the Law of Torts 61(5th ed. 1984).

30) Brown v. Nutter, McClennan and Fish, 45 Mass. App. Ct. 212, 696 N.E. 2d 953(1998). 로펌의 법률 여비서가 로펌과 상급 변호사를 상대로 IIED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노동자보상법의 소송금지규정(고용계약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문서에 의하여 하지 아니하는 한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고용법인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로펌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변호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다. 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가 근무시간 중이나 일과 시간 이외에도 개인적인 일 특히 위법하고 범죄와 관련되거나 개인적 비리나 비밀을 감추는 일을 하게 하였고, 특히 변호사가 자신의 집을 저당 잡힘에 있어 비서로 하여금 부인의 서명을 대신하게 하고 공증까지 받게 하였다(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눈물어린 호소와 자살 위협 등으로 승락함). 그것이 후에 문제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돌이킬 수 없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히스테리로 정상적 근무를 못하고 악몽에 시달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정신적 치료도 받았는데, 변호사는 그 와중에도 상관의 지시를 어기고 비서를 찾아오거나 감시·미행하거나 전화로 괴롭히는 행위를 상당기간 하였다.

이른바 고의적 감정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로  
논의되고 있어

(그 후 이에 연유하여 스토킹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sup>31)</sup> 언론의 표현에 대하여는 활발히 제기되지 않았으며,<sup>32)</sup> 제기된 경우에도 대체로 원고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이나 방송 보도가 도를 지나쳤는지는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인데, 비밀리에 활동 중인 마약감시원 등의 신원 공개,<sup>33)</sup> 응급실에서 일어난 애인의 죽음에 대한 상세한 보도,<sup>34)</sup> 포르노업계의 경쟁자에게 '이달의 똥꼬녀석(asshole of the month)'라고 부른 기사,<sup>35)</sup> 살해당한 딸이 아무런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sup>36)</sup> 등에 대하여 도를 지나친 것이라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sup>37)</sup>

도를 지나친 행위(Outrageousness)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피고에 대한 분노를 유발하여 '도가 지나치다!'라고 외치게 할 정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건의 경우에 이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단순히 피

고의 의도가 불법적·범죄적이라거나 '악의적'이라고 평가되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으나,<sup>38)</sup> 개별적인 행위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도를 지나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집요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소송에서도 원고가 공인이고 피고가 언론사인 경우에는 '현실적 악의'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태도로 보인다.<sup>39)</sup> 그러나 최근에 몇몇 법원에서 연약한 사인에게 공격적인 뉴스를 한 경우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경우가 있다. 즉 남편으로부터 집에서 폭력을 당한 부인에 대한 기사 보도시 그 가정 폭력 직후 방송기자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사진 담당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부인과 인터뷰하고 비디오로 촬영한 다음 이를 방송보도한 행위,<sup>40)</sup> 3년전 유괴되

31) Commonwealth v. Alphas, 430, Mass. 8, 712, N.E. 2d 575(1999). 부부가 이혼시 법원이 남편에게 집이나 근무처에서 부인을 괴롭히지 말고, 응급한 경우가 아닌 이상 말에 의한 의사통지를 금하고, 특히 괴롭히는 전화를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붙였는데, 남편이 이를 위배하여 계속적으로 괴롭힌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함.

32) IIED는 특히 Gertz판결 이후 헌법적 차원에서의 의견 면책 특권이 인정되면서 명예훼손법의 초점이 '허위 사실의 적시'로 옮겨짐에 따라 더 이상 명예훼손 소송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게 된 의견 표명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용되게 되었고, Falwell v. Hustler 사건에서도 Falwell은 Hustler의 표현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Defamation), 사생활의 침해(Invasion of Privacy)와 더불어 IIED를 근거로 소를 제기하였다.

33) Ross v. Burns, 612 F. 2D 271, 5 Media L. Rep. 2278(6th Cir. 1980).

34) Reichenbach v. Call-Chronicle, 9 Media L. Rep. 143(Penn. Ct. C. P. Lehigh County 1982).

35) Ault v. Hustler, 13 Media L. Rep. 2232(D. Or. 1987).

36) Holtzschneider v. Thomson Newspapers Inc., 411 S.E. 2d 664, 19 Media L. Rep. 1717(S.C. 1991).

37) Quinn v. Walsh, 49 Mass. App. Ct. 696, 732, N.E. 2d 330(2000)에서는 남편의 공공연한 외도사실을 공개적으로 보도한 행위를 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38) 다른 불법행위의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케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39) Hustler Magazine v. Falwell 485 U.S. 46; 1988 U.S. LEXIS 941; 14 Media L. Rep. 2281. 그 이후에 Edgar J. Steele v. The Spokesman-Review, Cowles Publishing Co. 61 P. 3d 606; 2002 Ida. LEXIS 194; 31 Media L. Rep. 1412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

40) Baugh v. CBS, No. C93-0601 FMS(ARB), 1993 WL 280319(N.D.Cal. 1993).

어 살해당한 6세 어린이의 해골을 경찰관이 지켜든 장면을 클로즈업해 방송한 행위,<sup>41)</sup> 방송기자가 어린이 없음을 알면서 어린 세 아이에게, 바로 옆집 사람이 세 아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였다고 말해준 행위<sup>42)</sup>에 대하여 그러하였다.

## II. 다른 나라의 면책 사유

### 가. 영국에서의 면책사유<sup>43)</sup>

영국의 명예훼손법은 보통법상의 엄격책임 원칙을 취하고 있고, 현실적 악의의 이론을 채택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최고법원인 The English House of Lords는 1999년 Reynolds v. Times Newspapers Ltd. 사건<sup>44)</sup>에서, 정치적 이슈와 관련한 보도에 대중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언론에 면책특권을 줄 수 있다는 판결을 하여 공적 이슈와 관련한 보도에 있어 언론의 명예훼손의 면책범위를 크게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 나. 독일에서의 면책사유<sup>45)</sup>

독일은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규정(독일 형법 제186조 이하)이 있으나, 민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규정은 없다. 그러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독일민법 제823조의 불법행위 일반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독일 형법 제193조에 '정당한 이익의 옹호'라는 독자적인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이 피해자가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의 경우와 성립요건을 달리하거나 입증책임이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한다.<sup>46)</sup> 우리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일본에서의 면책사유<sup>47)</sup>

일본의 경우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조건 및 면책사유는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다. "민사상의 불법행위인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익을 피할 목적인 경우에는 적시되는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없고, ... 위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

41) Armstrong v. H&C Communications Inc. 575 So. 2d 280, 18 Media L. Rep. 1845(Fla. Dist. Ct. App. 1991).

42) KOVR-TV Inc. v. Superior Court of Sacramento County, 37 Cal. Rptr. 2d 431, 23 Media L. Rep. 1371(Cal. App. 1995).

43) 한위수, 위 논문 142 내지 144면 이하, 배금자,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과 법리", 『언론중재』 통권 제83호(2002, 여름호), 28면 이하 참조.

44) 3W.L.R. 1010 (H.L. 1999) (U.K.).

45) 한위수, 위 논문 144 내지 147면 참조.

46) 학술적, 예술적, 영업적 업적에 대한 비판, 권리의 행사나 방위 또는 정당한 이익의 옹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판적 의견의 발표, 상관의 부하에 대한 징계 및 견책, 공무원의 업무상 고발 또는 비평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의견발표의 형식이나 의견발표가 행하여진 정황에 비추어 모욕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한위수, 위 논문 145면에서 재인용).

47) 최석규, "공인 대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의 현황과 문제점", 2002년도 제2회 언론법 연구회 세미나 발표문에서 인용함.

미국의 현실적 악의 이론은 인도나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등 다른 나라의 재판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유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판결<sup>48)</sup>을 미루어 보면, 공적 사안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의 공표의 경우에 진실의 항변이 채택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상당성에 대한 심사기준의 차이는 원고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여부, 보도내용의 공공성 여부에 따르고 있는 등 우리의 경우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라. 기타 다른 나라의 면책사유<sup>49)</sup>

미국의 현실적 악의의 이론은 인도나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등 다른 나라의 재판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현실적 악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주 대법원은 Theophanous v. H&W Times 판결<sup>50)</sup>에서 현실적 악의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적했지만, ‘reasonableness standard’라는 표현으로서 증명의 정도를 약간 변화시키고 증명 책임을 피고에게 전환하여 수정된 형태를 채택했고, 필리핀 대법원은 1999년에, 대만 대법

원은 2000년 7월에 현실적 악의 이론을 명시적으로 수용했다고 한다.<sup>51)</sup> 언론자유를 위한 국제인권단체(The International Centre Against Censorship)도 2000. 7. 국제적인 명예훼손에 관한 기준으로서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tection of Reputation)을 제정하였다고 한다.<sup>52)</sup>

### Ⅲ.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에서의 면책에 관한 법리

가. 관련 법령의 규정과 우리 판례의 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형법 제310조에서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민법이나 다른 관련 법률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민법상의 명예훼손과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같은

48) 일본 최고재판소 1966(昭和41). 6. 23. 판결, 民集 20권 5호 1118면.

49) 이하는 배급자, 위 논문 28면 이하 참조. 인도 대법원은 살인혐의자와 간수간의 범죄관련성을 보도한데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문제삼은 R. Rajagopal v. State of T.N. (1994)판결에서 “공직자는 피고가 진실을 무모하게 무시하고 보도를 한 사실(reckless disregard for the truth)을 증명할 수 없는 한, 공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명예훼손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1994) 6 S.C.C. 632, 650 (India)), 파키스탄 대법원도 유명한 정치가에 대해서 노망하고 타락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은 Nazami v. Muhammad Rashid (1996)판결(P.L.D. 1996 Lahore 410, 425(Pak))에서 신문사는 악의를 가지고 표현하지 않아 면책된다고 하는 등 현실적 악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50) (1994) 124 A.L.R. 1 (Austl.).

51) 자세한 사항은 배급자, 위 논문, 29면.

52) 다른 한편 고위 관료와 정치인 등이 고액 소송을 통해 언론의 위축과 강압 효과를 거두고 있고, 고위 관료 등이 다소간의 부정확한 보도를 빌미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제 자신의 명예회복을 강구하는 것을 넘어서 언론을 위축시켜 자신에 대한 보도를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언론의 비판기능 위축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는 점이 여러 정황에 의해 입증되면 소권의 남용이라고 보아 소송상의 조치를 취하든지 배상액의 결정에 참작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기준에서 논하고 있다. 즉 후자와 전자의 성립 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 등 면책 요건이 동일하다는 전제 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제가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많지만 이 논문의 연구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본질적으로 그 추구 목적이 다르며, 명예훼손적 보도에 관하여 형사책임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 특히 선진국의 추세임에 비추어 보아서도 이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으로 그치고 더 이상 상세히 논의하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에 대하여만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고 있을 뿐 제309조 제1항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sup>53)</sup>

우리 판례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를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310조를 준용하여 ① 공공성(사항의 공공성 및 목적의 공익성) ② 진실성 또는 상당성으로 보는 준칙이 확립되었고, 그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하여는 피고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공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는 판례도 있으니<sup>54)</sup> 이는 곧이어 볼 것

이지만, 진실의 절대적 면책 항변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관점에서 보면 다소 문제가 있다.

나. 미국의 명예훼손 이론과 면책 이론의 적용 가능성 여부

#### (1) 미국의 공인 이론의 적용 여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여러 차례에 걸친 판결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알권리)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53)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은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비판의 자유를 신장하여야 하는데 비판과 비방의 한계를 설정하기 모호하고, 비판적 보도는 신랄한 경우에 그 효과가 있는 것인 점 등으로 감안하여 보면 이에 관하여도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54)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다만,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2775 판결은 "비방목적의 기사 게재로서 공공성요건이 부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나 피해감정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으로 그 판단의 결과는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참작되어야 한다"고 한다.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공공의 이익은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에 관한 것도 포함

완화되어야 한다'<sup>55)</sup>고 판시하였다. 즉 공적 인물이나 공적 사안에 관하여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의 공공성 유무, 진실성 또는 상당성에 관한 심사기준을 달리하고 또 입증부담도 완화시키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의 이해와 관련하여 판례는,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하고,<sup>56)</sup>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sup>57)</sup> 한편,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와 관련하여 판례는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해석하고,<sup>58)</sup> 공직선거 유세 중 상대방 후보의 전과를 공개한 사건<sup>59)</sup>에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고 있다.

55)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등(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5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판결, 신학대학교 교수가 출판물 등을 통하여 종교단체인 이른바 '구원파'를 이단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그 실질적 지도자로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사실적시 행위를 특정인이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나 덕목이 부족함을 부각함으로써 구원파를 경계할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5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58)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5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공공의 이익이 적어도 주된 동기가 되어야 하고 부수적으로 사적 이익이 포함되는 경우까지 만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므로 적어도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고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능하고 적합한 인물이 공직의 담당자로 선출되도록 기여하는데 부족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는 '오로지'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제 진정한 사실의 적시에 관한 한 그것이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위 단서 조항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후보자비방죄는 선진제국에서 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형벌법규(영미는 물론 일본 공직선거법에도 이와 같은 규정은 없다)로서 선거에 즈음하여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교환과 의사의 표시를 억제하는 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자체의 타당성이 의심스럽다는 견해가 있다(조해섭, 대법원판례해설 28호, 1998, 685면 이하). 한편, 일본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선에 의한 공무원의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관계한 때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형법 제230조의2 제3항)을 두어, 공무원 또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무원 및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두텁게 하고 있다.

다른 한편 상당성의 요건에 관한 판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히 완화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시된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은 상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판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 등을 판단기준<sup>60)</sup>으로 실시하고 있다.<sup>61)</sup>

이와 같은 우리 판례의 입장을 고찰해 보면, 대체적으로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 간에 심사기준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문제 보도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강하게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실시한 입장으로,<sup>62)</sup> 원칙적 심사기준으로나마 미국의 공인 이론의 상당 부분을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 악의'의 범리를 채택하지 않고 면책사유의 입증 책임을 피고 언론사에게 지우는 것이 크게 다르나,<sup>63)</sup> 공공성의 요건을 완화하고 진실성과

상당성에 관한 입증의 부담 정도를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그 차이의 정도를 줄이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명예훼손소송에서의 공공성 요건을 넓게 인정하지만 여전히 그에 병행하여 진실성과 상당성의 입증책임을 일률적으로 피고 언론사에게 지우는 판례의 경향에 대하여 공공문제와 비공공문제 발언에 대하여 헌법적 요청에 따른 차등보호의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즉, 명예훼손적 발언 중에서도 공공문제 발언은 차등적으로 더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위법성 판단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책임의 분배가 해석상 가능하므로, 공공문제 발언에 기한 명예훼손소송에서 발언자인 피고 언론사가 공공문제 관련 발언임을 주장·입증하면, 진실성과 상당성에 관해서는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도록 해야 하고, 프라이버시 사항이 아니면서 진정한 공공문제에 관한 것이 아닌 발언에 대해서는 피고가 진실성, 상당성을 주장·입증하게 해야 한다는 비판<sup>64)</sup>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는 ① 명예를

60)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61)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33840 판결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62) 전원열 외 5인 공저, "언론보도와 민사책임",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나남출판, 2002, 135면.

63)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에서,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이른바 현실적 악의 이론을 명시적으로 배척하고 있다.

64) 전원열, 위 논문 83면, 277-281면 참조. 인격권침해의 문제를 헌법차원에서 생각한다면, 프라이버시 사항에 관한 보도가 아닌 진실입증이 있으면 그것으로 위법성은 바로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판례의 입장은 원칙적 심사기준으로나마  
미국의 공인이론의 상당부분을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중시하는 역사적 전통과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미국과 다르고, ② 우리는 정치적 비판을 억압하기 위하여 명예훼손소송을 악용해온 역사적 경험이 없으며, ③ 헌법 제37조 제2항,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는 인격권과 대등한 지위로서 이익형량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④ 소송절차상 디스커버리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 원고측이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를 채택하고 있지 않음을 들어 현실적 악의 이론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반론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sup>65)</sup>

(2) 진실 항변의 면책 책임법리의 적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일련의 연방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공공문제의 보도, 사인의 공적 관심사에 관한 보도에 관하여 진실이 원칙적으로 절대적 면책항변임이 인정되었고, 사인의 비공적 관심사 보도에 관해서도 진실만으로 절대적 면책이 된다는 것이 판례에는 없으나 다수 견해이다.

진리는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일뿐더러 최선의 공공정책 개발의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진실을 발언하는 자가 그 발언이 정당함을 주장·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것이 비록 진실이지만 프라이버시 사항이므로 발언되어서는 안된다는 등)을 들어서 진실 발언을 막으려는 자가 그 금지가 정당함을 주장·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민법이 사적 영역에서의 자유를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면, 진실을 발언한 자는 (그 진실 이외에 추가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입증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진실이 절대적 면책항변이 된다고 보려고 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우리나라 형법 제310조의 조문이다. 즉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정하여 진실성과 공공성이 동시에 충족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상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해석론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위 형법 제310조와 절연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과제의 하나인데, 이에 관하여는 그 문언대로 해석하면 공익적 목적과 사익적 목적이 섞인 발언은 곧바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며 진실 발언도 그 자체로 면책받지는 못하는데, 이는 민주정치체제를 대전제로 하고 있고 그 실현의 필수조건인 표현의 자유를 헌법상 가장 중요한 이념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sup>66)</sup> 면책사유의 하나인 ‘공공성’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해석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헌적 견해에서 제안하는 해석론 즉 ‘진실은 공익을 추정시킨다’라고 보는 해석도 하나의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견해에 따르면 개인과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은 진실을 발견하고 알리는 데에서 비롯하며, 진실 없이는 어느 개인과 사회도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은 진실에서 나오는 것이고, 진실이 공익을 추정시킴을 인정한다면, 위 형법

65) 한위수, 위 논문, 153면 이하 참조

66) 전원열, 위 논문, 244면 참조.

제310조가 비록 진실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진실성이 주장·입증되면 바로 공익성(내지 공공성)이 추정되고 따라서 그것이 프라이버시 사항이라든지 하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sup>67)</sup>

### (3) 의견의 면책 이론 적용 여부

명예훼손은 원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의견 즉 평가는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의견은 면책되어야 한다. 우리 판례가 과거에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단지 특정인물이나 사건에 관하여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하거나<sup>68)</sup>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에 기초한 의견 표명은 위법성이 없다고 하거나<sup>69)</sup> 순수의견과 혼합의견을 구별하면서 면책되는 의견이란 순수의견을 말한다고 하는<sup>70)</sup> 등 미국의 의견 면

책 이론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는 순수 의견의 경우에도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 등의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독자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sup>71)</sup> 어떠한 대상에 대한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비유를 사용한 평가의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유가 지나치고 감정적이고도 모멸적인 언사에 해당하여 모욕적 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sup>72)</sup> 등의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모멸적 언사의 형태로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도 함축된 사실이나 숨겨진 사실에 대한 보다 진지한 탐구와 형법상의 모욕죄와 혼동하여 판시한 것으로 다소 애매하고, 공적인 사안에 대한 순수 의견에 대하여도 형법상의 모욕죄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민사상 명예훼손이 인정

67) 전원결, 위 논문 주)524. 참고로 일본 형법의 명예훼손죄 조항 즉 명예훼손에 관한 위법성조각을 정한 우리 형법의 제310조에 대응하는 일본형법의 제230조의2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경우의 특례]라는 표제 하에, 제1항은 우리 형법 제310조에 대응하는 문언을 적고, 제3항은 "전조 제1항의 행위[명예훼손행위]가 공무원 또는 공선에 의한 공무원의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임의 증명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 한다"를 들고 있다. 즉 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그 자체로 사회 전체의 공익에 관계된 것이므로 특별 취급하여,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만 하면 바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이다.

68)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69)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위법성 조각을 위하여 그 행위의 공공성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전제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는가, 혹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서울고등법원 2001. 12. 20. 선고 2001나24145 판결).

70)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71)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

72)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다37524, 37531 판결. 민노총의 투쟁방법을 '공산계릴라식 빨치산전투'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표현자체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민노총의 투쟁방법을 그에 비유한 평가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공산계릴라식 빨치산전투'는 그 비유가 지나치고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에 해당하여 이러한 모욕적 표현까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불법행위가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시하고 있지 않다.

언론사는 다른 공적 인물보다 더 공공적인 성격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면책범위를 넓게 보아야

되지 않는다는 반대의 주장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sup>73)</sup> 위 몇 개의 판결만으로 순수 의견에 대한 독자적인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우리 판례의 태도를 정립하는 데는 다소 성급하다고 본다.<sup>74)</sup>

#### IV. 언론사간 언론소송의 특수성

##### 1. 공적 존재로서 언론사가 갖는 특수성과 면책기준 판단시 고려 요소

법인인 언론사가 그 설립 목적이나 감시와 비판, 여론 형성 등의 사회적 역할에 비추어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인 또는 공적 존재로 보아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sup>75)</sup> 따라서 그 면책기준도 원고가 공적 인물인 경우에 관한 일반적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다만 공적 인물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법적 성격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달라지고, 보도된 내용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내지 알가치의 정도 등도 달리하므로(물론 그 정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주체의 성격만이 아니라 구체

적인 보도의 내용 즉 보도의 가치에 대한 평가도 덧붙여져야 할 것이다) 공적 인물에 대한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면책범위보다는 넓어져야 한다. 또한 피고 언론사의 원고 언론사에 대한 폭로나 비판 기사는 원고 언론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도 있었으나(구체적 기사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독일의 인격영역론의 구분방식을 빌리면 사회영역, 공개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고, 특히 언론사는 다른 공적 인물보다 더 공공적인 성격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면책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에서의 면책의 심사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수성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명예훼손법리는 표현의 자유보장과 인격권 보장간의 이익형량원리라 할 것인데, 언론사간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보장과 인격권 보장 사이의 이익형량의 성질을 띠고 있기도 하나 궁극적으로는 언론사 상호간의 대립적인 표현의 자유 보장에 직결된다. 즉 인격권의 보장을 통한 일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보장이 필연적으로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

73) 순수의견이라고 해서 사실과 무관할 수는 없고, 문제로 되는 순수 의견은 이미 사실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는 그 진술을 하는 자가 이미 발언한 사실에 기초를 두거나 혹은 발언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진술하는 의견을 말한다.

74) 그와 관련하여 앞서본 미국의 새로운 불법행위의 한 유형인 고의적인 정신적 괴롭힘(IIED)의 개념 검토가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고 하겠다.

75) 그간 하급심에서 언론사간 명예훼손사건을 다루면서 모두 언론사를 공적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서울지법 2003. 9. 26. 선고 2001가합24223 판결, 2003. 8. 22. 선고 2002가합63379 판결, 2002. 3. 20. 선고 2001가합18051 판결, 2003. 4. 21. 선고 2001가합61345 판결, 2003. 2. 14. 선고 2001가합45626 판결, 2001. 4. 11. 선고 99가합96928 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2. 10. 11. 선고 2001가합14741 판결, 서울고법 2003. 8. 21. 선고 2002나22153 판결, 2002. 10. 10. 선고 2001나49885 판결 등 참조).

게 되고, 그 결과 언론사간 언론소송에 있어서의 이익형량원리는 언론의 자유보장 상호간의 이익형량에 해당한다. 둘째, 언론사는 다른 공적 인물보다 훨씬 더 명예훼손보도에 대한 반박을 하는 등 피해 발생을 차단하거나 입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줄일 수 있는 매체를 가지거나 그 매체에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는 기능도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공인 이론의 근거 중의 하나로 공직자 등은 통상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많으므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사인보다 쉽게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언론사는 그 같은 언론매체에의 접근 용이성에 있어 훨씬 유리한 지위에 있어 다른 공인보다 면책기준을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도 그만큼 폭넓게 수용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개개의 언론사가 공급하는 다양한 의견을 타 언론사에 의한 비판과 함께 접할 권리가 있다. 넷째, 사상은 사상의 자유시장을 통하여 여과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바 스스로의 견해를 충분히 밝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매체를 갖고 있는 언론사나 언론인이 다른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에게 제약을 가하고자 이용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고 법원이 그에 관여하는 폭은 가능한 한 좁혀야 한다. 특정 상대 언론사에 대한 다른 언론사의 악의적이고 신랄한 비판 보도에 관하여 정당

한 판정은 수요자인 독자나 시청자에게 맡김이 타당하고, 부적절하거나 터무니없는 비판에 대하여는 수요자에 의하여 외면당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성부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sup>76)</sup> 언론사간의 상호비판 과정은 통상 이 같은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므로 사용된 명예훼손적 표현들에 비방 목적을 인정하여 공공성을 부인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수인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여섯째, 부득이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고 언론사의 자체 언론매체를 통하여 충분한 반론과 비판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신용이나 인격 손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경우가 아주 적을 것이므로 위자료를 명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소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 2. 그간의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 판결에 관한 비판적 분석

### 가. 일반적 태도 분석

그간 제기된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에 관한 판결을 보면, 언론사에 대하여는 모두 공적 존재로 인정하였고,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소송의 일반적 법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등 원칙적인 법리면에서는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다만 피고 언론사에게 허용되는 비판 보도나 의혹제기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보면서 그에 상응하여 같은 공적 임무를 담당하고

76)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헌법재판소 1999. 6. 24.자 97헌마265 결정 등.

그간 제기된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에 관한  
판결을 보면, 언론사에 대하여는  
모두 공적 존재로 인정

있는 원고 언론사에게도 그 비판의 수인 범위가 넓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하여 언론사간의 명예훼손소송의 특징을 부각하고 있고(대체로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서 언론사들이 이를 통하여 국가기관, 단체, 개인에 대하여 비판적 기능, 경고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의 수인범위도 그 만큼 넓어져야 할 것인바, 언론사간의 광범위한 상호비판은 언론의 부패를 막는 내재적인 안전판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태도나 입장이 자신과 다를 때 올바른 여론형성의 틀을 깨트리지 않는 한 이를 비판하여 견제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sup>77)</sup> 또 이러한 비판은 폭넓게 수인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78)</sup>), 면책사유의 하나인 공공성의 인정에 관하여도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sup>79)</sup> 진실성 내지 상당성에 관하여도 다른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보다 다소 너그럽이 인정하여 입증책임의 점차적인 완화를 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다른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비판과 의혹 제기의 허용과 입증책임의 완화를 하고 있는지는 계량화하거나 저울질하기는 어렵다. 이는 그간 언론사간의 명예훼손소송에서 문제된 비판·비방이나 폭로 기사의 내용이 천차만별이어서 구체적인 보도기사의 내용에 따라 비판과 의혹 제기의 허용범위와 입증책임의 완화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달리하여야 할 당위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결에 관한 비판적 분석

대체적으로 언론사의 공인으로서의 특수한 지위나 성격을 충분히 감안하고, 비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에서 통상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유형에서 정립된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보다는 보다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공익성, 진실성과 상당성 등 면책사유에 관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우리 법제 하에서는 피고 언론사에게 면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대로 두고 그 입증

77)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형성을 위하여는 언론사 상호간의 활발한 비판의 필요성이 있다고 표현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위 2001가합45625 판결 등).

78) 공적 존재인 언론사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민주국가에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공익적인 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이익을 창출해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언론사의 특수성에 비추어, 주식투자와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사이의 이익 충돌의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계에서 더욱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서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언론사가 주어진 역할 범위 내에서 한 정당한 보도에 해당한다(서울고법 2003. 8. 21. 선고 2002나22153 판결).

79) 언론사의 주식투자에 대한 비판적 보도와 의혹제기에 관하여 그러한 주식 투자로 인하여 그 소속 기자도 부담을 가지고 언론수용자인 독자나 시청자들로부터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살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언론사의 주식투자 문제에 관한 공적 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방송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서울고법 2003. 8. 21. 선고 2002나22153 판결).

의 정도만을 완화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과 판단 방식은 이론상으로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그 방법만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언론사간의 명예훼손소송의 증가 내지 남발 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차제에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에서만이라도 미국의 현실적 악의의 법리와 의견 면책의 법리를 가감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경우 언론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언론사간의 지배구조나 규모, 영향력의 차이는 물론 발행의 시차, 취급하는 기사의 성격, 나아가 그 독자층의 구성이나 관심사 또는 역할의 차이 등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가 문제되나, 우선 전국을 상대로 한 일간지를 발행하는 신문사와 방송사에 한해서라도 그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 교묘한 방법으로 언론 자유를 운색하거나 치장한 악의적인 비판과 왜곡 기사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으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가진 민주 언론의 활발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지향하는 틀에서는 일부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것이나 그런 기사로 인하여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언론사의 건전한 판단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이는 논박의 과정을 여과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자층에 의하여 합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며, 나아가 지나치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왜곡 보도에 대하여는 소송을 통하여 '현실적 악의'가 인정되고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어 해결될 것이므로 그 부작용을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논쟁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양금이 여과되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

요는 있고, 그 보완책으로 해당 언론사의 상호 반론권의 폭넓은 인정이나 제3 언론사의 관련 기사 비평의 확대 등이 관행적으로 정착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 V. 글을 마치며

그간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에서 문제된 사안을 보면 활발한 비판과 논박을 통해 진실에 접근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는 기사도 많으나 자신의 언론사가 그 사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하여 상대 언론사나 그 소속 기자 등을 매몰차게 비방한다는 의심을 자아낼 수 있는 기사도 있는 등 그 기사의 성격은 천차만별이다. 그리하여 악의적이고 치졸한 비판이나 인신공격에 가깝거나 주관적인 매도나 폄하로 일관된 기사를 접하면, 수요자로 하여금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야 하는 언론사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등 우려의 분위기를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부적절하고 개탄스러운 공격적 비판도 공개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 그 과정에서 거의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언론사간의 명예훼손적 보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를 통해 심판받게 하기 보다는 언론의 자유시장에 맡겨 수요자의 계속적인 감시와 비판을 받게 함이 타당하다. 부득이 소송절차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통상의 공인에 대한 언론소송보다 더욱 원고 언론사가 갖는 신분, 표현 내용 등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학계나 판례가 언론계 및 일부 언론법학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

언론사 상호간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하여는  
미국의 현실적 악의이론을  
도입할 여지가 충분

직 미국의 현실적 악의 이론을 수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나,<sup>80)</sup>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공인 이론의 정당성 근거로 제시된 매체접근이 용이하고, 비판위험을 인수하였으며,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제반 근거들이 우리의 언론사간 언론소송의 경우에 더 강하게 적용될 정도로 충족되고 있고, 그러한 소송으로 이어진 대부분의 사안이 표현의 과장이나 다소 모멸적인 표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소송의 남발로 인하여 언론사 자신은 물론 법원의 부담 증가, 그로 인한 언론사간의 불신과 대립의 골이 깊어져 국민의 언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거나 심지어는 평가

르기로 이어지는 양상이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우려마저 있어 제한적이거나 일정한 규모와 역할을 가진 언론사 상호간의 명예훼손소송에 대하여는 미국의 현실적 악의 이론을 도입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 경우에는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이 급감할 것이고, 언론사로서는 소송에 투자할 여력을 좀더 충실하고 객관적인 날카로운 비판에 쏟게 되어 종국적으로 사상의 자유시장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함은 물론 모든 언론사에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80) 신평, “헌법적 관점에서 본 명예훼손연구-의견과 사실의 이분론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191-192면은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은 현실적 악의이론을 우리식으로 수용하고자 한 것이고, 이를 인용한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은 현실적 악의이론을 배척한 종전의 판례태도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

박 용 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목 차

- I. 서 론
- 1. 개관
- 2. 범죄보도의 의의 및 실상
  - (1) 범죄보도의 이익 및 가치
  - (2) 범죄보도의 실상과 문제점
- 3. 피의자와 범인의 익명성의 이익
  - (1) 보도대상자에 대한 불이익한 효과
  - (2) 단순한 범죄혐의 보도와 명예저하적 효과
  - (3) 대중매체의 영향 - 실명보도의 망신 효과
- 4. 범인이나 피의자의 지위
  - 시사적 인물 내지 공적 인물 여부
  - (1) 개관
  - (2) 학설의 전개 - 독일  
[사례] 소매치기 단속반 비위사건 (1928)
  - (3) 현재의 다수설 및 판례  
[사례] 레바하 살해범 기록극 사건 (1973)
- II. 신원공개(실명보도)가 허용되는 경우
  - 1. 개관
  - 2. 공적 인물인 경우
  - 3. 사인인 경우
  - 4. 사법 및 공공질서의 목적에 따른 신원공개
- III.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에 대한 명예보호
  - 1. 무죄추정의 원칙과 그 표현행위에 대한 의미
    - (1) 무죄추정의 원칙
    - (2) 범죄혐의자에 대한 명예보호
    - (3) 법원의 재판권과 범죄보도
  - 2. 형의 단계에서 혐의에 관한 진술 및 보도
    - (1) 고소·고발의 자유
    - (2)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 3. 수사단계의 보도
    - (1) 수사개시 단계의 보도
    - (2) 실명보도의 요건
    - (3) 수사기관의 발표와 보도
  - 4. 공판 개시 후 소송에 관한 보도
    - (1) 개관 - 여론재판의 폐해
    - (2) 재판공개주의와 언론 보도
    - (3) 법정 보도의 허용성 및 한계
    - (4) 인격권 보호를 위한 재판의 비공개
    - (5)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는 법정보도 - 법정에서의 촬영, 녹화 및 중계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인 필자가 범죄보도의 쟁점에 관한 이론과 사례들을 망라하여 정리한 글이다. 학계뿐만 아니라 언론계 실무자에게도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2회에 걸쳐 연재한다. .... 편집자 주

### III.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에 대한 명예보호

#### 1. 무죄추정의 원칙과 그 표현행위에 대한 의미

##### (1)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 존중의 원리와 법치국가주의로부터 연역되는 원칙이다. 이것은 형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뿐 아니라 여타의 모든 국가기관도 구속하며, 공소 제기 전에도 적용되므로 단순한 범죄혐의자에게도 유리하게 적용된다.<sup>43)</sup>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와 같이 원래 국가기관을 수명자로 하는 것이므로 공적 과업을 이행하는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이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가 수사에 부담을 주고 법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국은 그에 대한 법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sup>44)</sup> 영국 보통법상의 법정 모욕(contempt of court)에 대한 법원의 처벌권은 이러한 보도활동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제공한다. 1961년 리스본에서 행해진 제8차 국제형법회의는 증인의 진술이 영향을 받거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는 어느 것이나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방지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독일의 주언론법과 현행 형법은 공소장이나 기타 서류의 내용을 구두변론이나(비공개절차에서는) 소송종료 후까지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독일 형법 제353 d 제3호). 오스트리아의 1981. 7. 12. 언론매체법은 제1심

판결이 있기 전에는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의 보도를 금지한다.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의 관점에서 인격권을 설명한다면 판결 확정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결론이 나온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범인도 부당한 폭로로부터 보호받고 민법 및 형법상 명예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 행정 기타 법원의 모든 절차에서 언론보도는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적 지침이 적용되고, 따라서 법원의 선입견을 가져오거나, 범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불리하게 하는 주장은 금지된다.<sup>45)</sup> 무죄추정의 관점에 따른 인격권의 보호는 익명보도나 실명보도에서나 막론하고 적용되는데, 일단 유죄가 확정되면 그 보호는 종료하고, 그 이후에는 확정적인 범죄자에 대한 인격권 보호 여부의 문제만이 남게 된다.

##### (2) 범죄혐의자에 대한 명예보호

범인이나 범죄혐의자 및 그 가족을 공공에 공개하는 보도는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사회적 멸시를 받게 하고, 그들의 사회복귀 및 사회화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독일언론평의회(Deutscher Presserat)의 지침에 따르면 피의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범죄자라고 주장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원칙에 대한 예외는 특히 고위의 공적 자격이 있거나 압도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sup>46)</sup>

범죄혐의자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하는 공개적인 주장은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침해로서

43) Herwigh Engau, Straftäter und Tatverdächtige als Personen der Zeitgeschichte: Ein Beitrag zur Problematik identifizierender Mendiendarstellungen 1993, S. 220f

44) Engau, aa.O. S. 234

45) Engau, aa.O. S. 238

46) Wenzel, 4. Aufl. S. 437

불법행위가 성립된다.<sup>47)</sup> 또 범인이라거나 또는 유책이라고 하는 책망은 그 범죄혐의자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금지된다.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혐의자는 인격권에 기한 부작위청구권을 가지며, 그러한 표현행위가 임박한 때에는 방해예방을 위한 부작위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다.<sup>48)</sup> 독일의 판례는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그 혐의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기에 관한 죄를 인정하는 표현을 하지 말라는 부작위의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sup>49)</sup> 피의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동안에는 민사소송에서 자기의 무죄가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를 범인이라고 표시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은 증인이나 법관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면 정당한 것이다.

범죄혐의자를 보호할 필요성에서 허용되는 이러한 잠정적인 권리보호는 혐의자가 임박한 보도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드물고, 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구제받기에 너무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충분한 구제수단이 되지 못한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애당초부터 범죄혐의자의 익명의 이익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그에 반하는 보도를 시원적으로 금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sup>50)</sup>

### (3) 법원의 재판권과 범죄보도

검찰의 수사결과나 법원의 사실인정이 언론에서 예상보도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민들은 그 결과에 의아(疑訝)해 할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형사법원이 갖는 전속적인 권한이 행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단지 요식상의 문제로 보이게 할 수 있고, 후에 법원에서의 판단이 보도와 다르면 독자들에게 법원이 잘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므로, 그것은 형사법원의 권한에 대한 침해해 의미를 의미하게 된다. 그것은 언론보도의 진실성 여부를 문제삼지 않는 일반 독자의 사심 없는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인상은 좀처럼 시정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51)</sup>

권한 있는 기관의 세심한 법발견의 절차가 장시간 소요되고 법원의 절차는 지연되기 쉬우며, 시사성에 관한 신속한 보도가 포기될 수 없다는 주장은 이러한 종류의 사전판결(Vor-Urteil)이 허용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적법한 법절차에 의한 비용이 크고 그를 위해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법치질서가 전제로 하는 최소한의 요구인 것이다.

## 2. 혐의 단계에서 혐의에 관한 진술 및 보도

### (1) 고소·고발의 자유

확실하게 누가 어떠한 비행을 하였음을 아는 사람은 피해자로서 또는 증인으로서 그 사실을 언급함에 아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가 피해자로서 고소하거나 또는 목격자로서 고발하거나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 있

47) Eberhard Schmidt, Justiz und Publizistik, Tübingen 1968, S. 56

48) Engau, a.a.O. S. 249

49) OLG Köln, AfP 1985 S. 293, 294, ("Killerkommando")

50) Engau, a.a.O. S. 250

51) Löffler/Ricker, Handbuch des Presserechts S. 253; Wenzel, a.a.O. S. 69; Engau, a.a.O. S. 243ff; OLG Köln, AfP 1985 S. 293, 294, ("Killerkommando"); OLG Köln, AfP 1987 S. 2682, 2683("Syrische Terroristen"); BGH NJW 1975 S. 1882 ("Der Geist von Oberzell"); BGH, GRUR 1975 S. 89, 91; BGH, NJW 1982 S. 1805 ("Schwarzer Filz")

음에는 의문이 없으나, 그 주장의 비행행위자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정당화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들 진술자가 목격할 바 이외에 그를 처벌하기 위해 요구되는 총체적인 외적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사정이 일부 흠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의·과실이나 목적 등 내적 구성요건이라든가 위법성 및 유책성을 실현하는 사유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사책임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관할 형사법원에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이른바 법관의 특권, Richterprivileg)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아무도 그가 처벌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없는 불확정한 상태가 지배하는 것이다.<sup>52)</sup>

형사상의 고소는 이론상 누구나가 누구에 대해서든 행할 수 있으므로 형사상의 고소 그 자체만으로는 보도에 있어서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한다. 그러한 고소에 관한 보도는 특별한 정보의 이익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충분한 인정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것을 언급하여 피고소인에게 실제상 죄가 확인되었다고 하는 인상을 불러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기사의 내용에서 최종적 유죄라는 결론을 이끌 수 있는 증거의 제시는 확인된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최종적 유죄라는 결론을 유도하려는 기자의 의도가 있었는가의 여부 또는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세심한 독자가 다른 결론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 보도의 옳고 그름은 객관적인 인

상, 즉 사심 없는 일상적 평균인이 수용하는 바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sup>53)</sup>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특별히 철저하지도 무관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개의 기사를 대하는 경우이다. 그러한 독자는 특별히 세심한 것도 아니고 형법상의 판단문제나 절차에 관하여 잘 아는 것도 아니므로 게재된 내용대로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는 무비판적 태도 때문에 쉽게 영향 받으며, 암시적인 보도가 작용할 여지를 주게 된다.

독일의 판례와 학설에 의하면 혐의, 추측, 개연성의 표현에 의해 또는 단순한 의문제기의 형식으로 주장된 사실관계가 허위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sup>54)</sup> 혐의의 주장은 그 근거로 한 사실이 진실이 아닐 때 뿐 아니라 그 추론이 필연적인 것이 아닌 때에도 허위라고 취급된다.<sup>55)</sup> 그 보도에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있음직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혐의의 표현(Äußerung eines Verdachts)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오인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즉, 그 정보가 공익에 관한 사항이고 보도자가 허위보도를 배제하기 위하여 사전에 가능한 모든 조사를 시도한 경우에는 그 범죄 혐의의 보도는 허용된다.<sup>56)</sup>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범죄혐의자를 범인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기자의 세심한 취재 결과 사례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공익에 대한 중한 범죄의 혐의가 현저하기 때문에 언론기관이 조사한 부죄(負罪) 내용의 정확성을 확신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명백히 처벌

52) Engau, a.a.O. S. 240

53) Engau, a.a.O. S. 245

54) RGSt 60, 373/374; BGH GRUR 1975 89/91(Brüning-Memoiren I); BGH, NJW 1978 S. 2151; BGHSt 18, 182/183(Call-girl-Affäre)

55) RGSt 67, 268/270

56) BGHZ 31, 308/313(Burschenschaft); BGH, NJW 1977 S. 1288/1289

하도록 몰아가려는 보도태도는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못한다.<sup>57)</sup>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가 장기간 지지부진하고 사법기관의 중대한 잘못 때문에 현존하는 유죄자료도 이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범인이라는 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른바 긴급행위로서도 범인이란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sup>58)</sup>

다만, 주의환기를 목표로 하는 모든 언론작업에서는 독자들에게 쉽게 이해되도록 쉬운 용어로 풀어쓰거나 관심을 끌기 위한 호소적이고 자극적인 표현방법이 구사되기 마련이고, 이러한 관행이 법적으로도 평가되지 않을 수 없다.<sup>59)</sup> 그러나 명예보호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언론의 관행으로 인한 법적 부정확성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예컨대, 고살(故殺)행위자(Täter eines Tötungsdeliktes)에 대하여 판결이 나기 전에 모살자(謀殺者, Mörder)라는 법적인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최초로 살인이라고 판단되었던 행위가 과실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보도를 인기 있게 하려는 의도에서 타인의 명예를 희생하면서 정확한 묘사의 요청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현실의 왜곡된 상을 나타내거나 과장하는 표현은 진실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sup>60)</sup> 보도 내용에 오해의 위험이 있으면 표현행위자는 이 점을 명백히 표시할 의무가 있고, 이해에 곤란한 것이 있으면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청의 이행이 장황하고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하

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기자의 작업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정당화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사례] 공금유용 처벌주장 사건 (1996)

프랑스 파기원 1996. 3. 19. 선고

Sonacotra c. MM. X..., Y... 판결

노동자를 위한 주택건축공사 등 공기업 사장과 임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기업의 전직 사장(이 사건 원고)이 공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고, 그를 횡령혐의로 사소(私訴)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한 신문 기자(이 사건 피고)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전임 사장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과 함께 그 공기업의 현 사장과 임원의 행위를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극찬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 기사에는 전임 사장(원고)의 유죄를 확신하는 입장에서 기소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비위행위도 언급하고, 보다 높은 형량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유사한 사건에 대한 과거의 형량을 분석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전임 사장이 위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법원은 그 기사의 대상이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해 언론보도의 자유 영역 범위 내에 속하기는 하나, 그 내용에 언론 자유의 허용 한계를 벗어난 표현방법이 구사되었고, 다른 사실의 적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명예훼손 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그 기사의 공공성이 강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 액수로는 상징적인 액수인 1프랑의 배상을 명했다.

### 3. 수사단계의 보도

#### (1) 수사개시 단계의 보도

수사기관이 제출된 진정, 탄원 또는 투서 등

57) OLG Köln, AfP 1985 S. 293, 294. ("Killerkommando"): OLG Köln, AfP 1989 S. 683, 685; Damm, Presserecht mit Kommentar, Percha 1985 S. 25, 114; Eb, Schmidt, Justiz und Publizistik, S. 48ff

58) Engau, a.a.O. S. 244

59) Engau, a.a.O. S. 246

60) Engau, a.a.O. S. 248

을 수사의 단서(端緒)로 삼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內査)를 시작하게 되는데, 내사 결과 혐의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식 입건 처리하여 공식적인 수사가 개시된다. 이와 같이 수사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은 검찰이 범죄행위에 관한 혐의를 인지하였고 사실관계의 조사에 관한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불과하므로 수사의 개시 그 자체가 공개적인 언급을 위해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수사절차가 개시되면 그것은 보통 확인의 필요가 있는 혐의가 포착된 표시가 되며, 그 의미의 한도에서 공개적인 언급의 계기가 생긴다.<sup>61)</sup> 물론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에 관한 보도는 피의자에 대해서 망신을 주게 될 위험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실명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요건에 따르게 된다. 그밖에도 이 과정에 대한 보도는 각 단계의 수사상황에 유의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사결과를 넘어서 혐의의 정도를 높일 수 없다.

[사례] 여대생 테러리스트 단정 보도사건 (1979)

뒤셀도르프고등법원 1979. 6. 20. 판결

15 U 199/79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상의 수사과정에 대해 보도할 때 언론은 수사기관의 수사진행 상황에 맞추어서, 사례 관계 보도하도록 면밀한 주의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혐의에 불과한 사실을 확실한 사실로서 보도해서는 안되고, 알려져 있는 무혐의상태에 대해 숨기거나,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977. 7. 30. 은행가의 위르겐 폰토(Jürgen Ponto)의 피살 직후 엘레오노레 폰스겐(Eleonore Poensgen, 원고)이라는 여대생이 이 사건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녀는 동년 8. 2. 체포되었고, 다음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8.

7.에 그녀는 석방되었으며, 그녀에 대한 수사는 동년 9. 13. 종료되었다. 이 수사과정에 관해서, 피고인 슈프링거 출판사는 약 백만부 정도 발행되는 빌트(Bild)지에 1977. 8. 3.부터 9.까지 4차례에 걸쳐 문제가 된 기사를 보도했다.

원고는 비록 그녀에게 처음부터 그와 같은 혐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녀를 살인자이며 테러리스트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50,000마르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지방법원은 그 소송에서 청구된 금액전부를 인용했는데, 피고들의 불복 항소 결과 뉘셀도르프 고등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25,000마르크의 배상을 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가담자로서 유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확실한 가담자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 빌트지는 원고가 폰토씨의 미망인에 의해 범행가담자로 확인되었다는 것을 보도했을 뿐, 원고가 그녀의 무혐의를 증명해 줄 알리바이 증인들을 말했음에도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추후에는 그 증인들이 원고의 진술을 입증한 사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더욱이 빌트지는 수사가 진전되면서 원고의 혐의사실이 희박해져 가는 상황을 안 후에도, 앞서 게재한 부정확한 보도를 정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977. 8. 7. 원고의 석방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원고의 혐의를 경감시키는 상황보다 혐의를 높이는 상황을 더 강조하여 보도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현장에 있었다고 확인한 폰토의 미망인과 운전사의 진술에 관하여 보도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발언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실인정하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결론을 내렸다.

언론은 폰토씨의 살해사건에서 원고의 가담혐의에 관해 보도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부정확하게 표현된 빌트지의 보도는 위법하였고 과실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 보도는 특히 언론자유에 따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보도를 통해서 야기된 그녀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침해는 그녀를 괴롭혔을 것이 틀림없었다. 원고에 대한 비난의 중대성 때문에, 언론은 그 사건을 보도할 때에 정확하게 평가해서 보도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

61) Wenzel, 4. Aufl. S. 436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은 일반적인 혐의 및 유력하다고 하는 혐의를 미리 확정해서 보도할 수 없다. 더욱이 그녀의 혐의가 희박해진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 사실을 숨겼고, 확실하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을 임의로 보도했다.

피고인 기자들은 독일 민법 제831조에 의거, 준수해야 하는 언론의 의무를 과실로 인하여 지키지 못했다. 왜냐하면 빌트지의 보도는 실시된 바와 같이 몇 가지 관점에서 때때로 편집의 인지상태에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들이 살해음모의 가담과 같은 그러한 중대하고 단호한 비난에 관한 부주의한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하고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사실은 비난받아야 한다. 또한 물의를 일으키는 저속한 신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정을 더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곡하여 표현할 수 없다.

법원이 특히 강조한 것을 보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언급되고 있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법원이 미망인과 운전기사의 공식적인 발언을 무시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독자들에게 테러리스트인 그녀의 석방은 유감스럽게도 사법재판의 오류라는 인상을 짙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 (2) 실명보도의 요건

모든 대중매체의 보도에서는 혐의자의 익명성이 유지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무죄의 추정(Unschuldsvermutung)이 직접 언론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 미디어도 역시 그 보도에서 무죄추정의 정신에 따라 절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독일의 판례에 의하면 이 경우 실명보도에 있어서는 범죄행위가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실명의 사용이 범죄의 보도에 불가피하며, 그 혐의가 상당한 정도로 진실하다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 국한된다고 한다.<sup>62)</sup>

개별적인 개인의 상황을 인용하는 것은 이름을 언급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 예컨

대, 성 대신에 이름과 피해자가 경영하는 여관의 주소가 명시된 경우가 그러하다. 이름을 밝히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의 사진이 공개되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면 그것은 범죄의 설명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됨이 보통이다. 피해자의 상세한 생활관계도 역시 막바로 묘사되거나 그 집의 사진이 공개될 수 없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가 성공한 경우 불안과 위협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범죄동기의 해명을 위해 생활관계에 관한 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이 허용된다.

## [사례] 수리사실 실명보도 사건 (1987)

1987. 6. 2. 쾰른고등법원 판결

OLG Köln NJW 87, 2682

시사잡지가 한 시의 외사관청(外事官廳)의 장에 대한 수리사건의 수사절차를 보도하면서 그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하고 그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이미 유죄로 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형사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증거의 부족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되자 그 공무원이 고등법원의 제2심 민사소송에서 그 잡지사에 대하여 위자료 10만마르크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1만 마르크의 지급을 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간행물의 기사에서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특정적으로 상세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 기사에 범죄혐의로 인한 수사절차가 진행중이고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명예훼손(Uble Nachrede)이 성립된다.

수사가 종결되거나 기소되기 훨씬 전에 언론기관이 수사기록의 일부를 탐사하여 그로부터 나온 혐의를 근거로 피해자의 죄책을 주장하는 계기로 삼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익의 옹호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한 경우 후에 기

62) OLG Frankfurt, NJW 71, 47/48

소가 제기되었으나 형사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판절차에 회부하지 않았다면 그 간행물의 기사에 의해 범해진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위자료청구가 인정된다.

(3) 수사기관의 발표와 보도

수사단계에서 미디어에 의한 범죄혐의자의 인격권 침해는 경찰 및 사법기관이 피고소인의 신원을 밝힘으로써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고려를 요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그것은 수사의 효율성과 함께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갖는다. 수사관청이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 비공개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고, 형법상 금지되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우리의 형법이 피의사실공표를 금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검찰이나 경찰 등 범죄수사기관이 그 관할 처리사건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식발표를 할 수 있는 경우란 그 사건의 국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지대하여 국민 대다수의 간절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검찰, 경찰의 공식발표는 위와 같은 실체적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공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관으로서 임무를 부여받은 자가 공식적인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절차를 거쳐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배포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sup>63)</sup> 나아가 대법원은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나 수사담당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그 공표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sup>64)</sup>

대법원은 1999년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찰의 공식발표의 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사례] ‘산업스파이’ 오보사건 (1999)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공1999상. 330]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17. 선고

96나4659, 4666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피해자인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 세븐 대표이사 소외 M은 1991. 1. 서울지방경찰청에 위 회사 상품 기획부 차장 X(원고)와 재무관리부 과장 소외 P가 위 회사의 사업계획서 등 기밀서류를 복사하여 소외 경쟁사 간부들에게 건네주는 등 회사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X(원고)와 위 P를 고소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 Y감사는 그 무렵 위 고소인 M과 이러한 사실을 제보한 소외 회사 물류과장을 소환하여 조사한 다음, 원고와 위 P를 소환하여 신문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원고를 구속하였다.

Y감사는 같은 날 검사실에서 기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와 위 P에 대한 피의사실을 요약·정리한 수사자료를 배포하면서, 이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원고 등이 경쟁업체에 스카우트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음이 밝혀졌다는 내용의 수사 경위와 앞으로의 수사 방침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피고 조선일보사 사회부 K기사는 1991. 1. 22. 원고 X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을 열람하여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을 지

63) 이혼소송중부 청부폭력 오보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 2. 27. 선고 95나24946판결

64) 대법원 1998. 7. 14. 96다17257판결, 공98. 8. 15. [64], 2108

득하고, 이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담당검사를 찾아가 수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취재한 다음, 이를 기초로 같은 달 23. 조선일보 제23면에 "회시기밀 유출 간부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그 혐의사실을 기사화하여 공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업무상 알게 된 소외 회사의 영업기밀을 유출하여 위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회시기밀문건을 복사하여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 및 절도죄로 기소되었는데, 위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가 취소되고 절도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검사 Y가 위와 같이 직무상 알게 된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그 피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경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숙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

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대법원은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가 추가 보강수사를 하지 않은 채 참고인들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피의자의 범행동기나 그가 유출한 회시기밀의 내용 및 경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향후 수사확대 방향 등에 관하여 상세히 언급함으로써 마치 피의자의 범행이 확정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각 언론사의 기지들을 상대로 언론에 의한 보도를 전제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공식발표는 한편에서는 대중매체로 하여금 그 보도에 위험부담을 없애준다. 왜냐하면 기자는 원칙적으로 관청의 공식적 발표를 신뢰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기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기 때문이다. 그 경우 검찰이 A를 사기로 수사한다거나, B가 긴박한 살인혐의로 체포되었다거나, C가 방화혐의로 기소되었다거나 하는 등 발표된 수사상황을 그 발표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한 언론매체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보도에서 피의자의 익명성이 유지되는가의 여부는 결정적으로 수사관청의 태도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므로 각 국은 그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 및 재판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보도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예를 보면 인격보호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에 관한 불필요한 공개는 피해야 하고

성명을 거명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한다.<sup>65)</sup>

내용적으로 정확하고 따라서 명예를 보호하는 법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보도라고 할지라도 범죄혐의자에 대하여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망신효과와 위협을 내포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진실에 적합한 보도에 있어서도 인간의 자주결정권에 터잡는 익명성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으로서 보다 존중되어야 한다.<sup>66)</sup>

#### 4. 공판 개시 후 소송에 관한 보도

##### (1) 개관 - 여론재판의 폐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료되어 기소된 후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에 있어서는 그 보도에 의한 여론조성이 재판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때문에 신중을 요한다.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소송절차상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보도는 더 신중해야 한다.

언론이 보도에 관심을 갖는 사건은 보통 사회적으로 센세이셔널한 사건이고 독자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을 수 없는 미디어가 이러한 대중적 구미를 부추기게 되는 경향은 보도의 실상에서 경험되고 있다.

##### [사례] 케네디 살해범 피살사건 (1963)

신문재판의 예로서 논의되는 것이 케네디 대통령 살해범으로 지목된 Lee Harvey Oswald 에 대한 보도태도였다.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대법원장 Earl Warren 위원회는 조사 끝에 대통령의 피살 후에 저질러진 미디어에 의한 재판의 문제를 공공의 양심에 극적인 문제로 제기하였다 (Report of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John F. Kennedy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4), p. 241). 그 위원들은 언론인들에 대해 자율적 기율이 없었다고 통렬히 비난하였고, 알 권리 뿐 아니라 수정헌법 제6조의 권리도 지키는 전문직업의 윤리규범을 요청하였다.

미국변호사협회의 주장에 의하면 그에 대한 유죄의 심증은 수사공무원의 진술과 제한된 증거의 공개보도로 인하여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으며 그 사건을 위한 배심원의 선정과 공정한 재판은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한다. 대통령 피격 후 검거된 Lee Harvey Oswald를 둘러싸고, Dallas경찰서는 기자와 사진사 뿐 아니라 구경꾼으로 혼잡하였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그는 재판을 받기도 전에 경찰서 복도에서 Jack Ruby에 의해 사살되었다. 이러한 공판전의 지나친 보도 때문에 만약 그가 살아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설사 그가 진범인이라고 단정될 수 있을지라도 적법절차준수의 불가능성 때문에 상급심에서의 무죄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Dwight L. Teeter, Jr. & Don R. Le Duc, Law of Mass Communications Freedom and Control of Print and Broadcast Media, 7th Ed. Westbury, New York, The Foundation Press, Inc., (1992), p. 637)

따라서 언론의 재판보도는 독자층 다수의 의견에 영합하는 편견적(偏見的) 보도(präjudizierende Berichterstattung)의 경향을 띠게 되고, 여기에는 대중적 비난이나 집단적 혐오가 가세하기 마련이다. 언론간의 취재 및 보도경쟁의 결과 이러한 경향은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이와 같이 언론이 재판에 대하여 보도하는 양상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지만 우선 지적할 것은 이른바 '여론재판'(輿論裁判, trial by newspaper, Medienjustiz)의 폐해라고 논해지는 것이다. 통상 문제가 되는 것은 범죄와 형사사건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수사과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에 앞서 사건을 비난하거나 또는 그에 관련된 인물을 묘사하고 평가하는

65) 1991. 5. 1. 연방통일적으로 시행된 형벌 및 벌금절차의 지침 제23호

66) Engau, a.a.O. S. 252

데 있다. 그것은 탄핵적이거나, 아니면 우호적인 경향을 갖는다. 이러한 유죄인정식 보도나 무죄로 단정하는 보도는 매체간, 특히 신문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오늘날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언론이 재판에 관여하는 형태는 이른바 “언론에 의한 형사소송의 수행”(Strafprozessführung über Medien)으로 일컬어지는 폐단이다.<sup>67)</sup> 이것은 사전에 관련성 여부나 증거능력의 여부를 불문하고 잡다한 증거를 제시, 평가하며, 혐의자에 대하여 유리·불리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집단적으로 형사소송에 개입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특히 피고인의 생명과 자유가 다루어지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피고인을 무차별적으로 단죄(斷罪)하는 언론의 보도는 문명사회가 형사소송법으로 어렵게 구축한 증거법칙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른바 ‘증거배제의 법칙’은 아무리 중요한 증거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증거로 허용될 수 없는 이른바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법정에서의 입장조차 허용치 않음을 의미하나<sup>68)</sup> 무차별적인 소나기식 보도는 이러한 법칙을 무효화한다. 언론에 의한 증거내용의 상세한 설명과 평가는 법정 외에서 모든 증거가 제시됨을 의미하며, 피고인의 적법절차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 물론 증거법칙에 문외한인 배심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전문직 직업법관에 의해 처리되는 우리의 경우 이러한

우려가 덜할지 모른다. 그러나 법관에게도 선입견(先入見)이 형성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적대시되는 범죄자에 대하여는 이미 광범위하게 조성된 여론에 의한 단죄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함에는 힘겨운 결단을 요하게 될 뿐 아니라, 혹시 쉬운 길을 가려는 법관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여론에 추수하는 판결을 유도하게 될지 모른다.

그뿐 아니라 언론이 일방적으로 복을 쳐대면서 편견적 입장을 반복하여 전파하게 되면 공중은 그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들의 머리 속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상이 조성되며, 이것은 이른바 ‘편견적 여론’(öffentliche Vorverurteilung)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sup>69)</sup>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신문과 방송이 예단(豫斷)을 갖고 용의자를 유죄나 무죄나 단정하는 보도를 하게 되면 일반 공중의 머리 속에는 그에 상응하는 판단이 형성되게 마련이다. 그에 의해 재판도 받기 전에 여론의 표적이 된 당사자나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인상이 전파되면 그것은 법관에게뿐 아니라 증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법관은 이미 예단 없는 상태에서 증거를 조사할 수 없게 되고 증인도 선입견 없이 사건에 임할 수 없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디어의 이러한 영향 아래 판사와 검사가 영향을 받게 되며 그에 굴복하게 될 우려가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다. 때로는 원·피고 등 소송의 이해관계자는 물론 사건을 다루는 검사나 변호사가

67) Joachim Wagner, Strafprozessführung über Medien, 1987, S. 101; Friedrich-Adolf Jahn, Der Einfluß der Medien auf das Strafverfahren aus gesetzgeberische Sicht, in: Dietrich Oehler, Friedrich-Adolf Jahn, Rudolf Gerhardt, Manfred Burgstaller, Winfried Hassemer, Der Einfluß der Medien auf das Strafverfahren, Schriftenreihe des Instituts für Rundfunkrecht an der Universität zu Köln Band 52, C.H.Beck'sche Verlagsbuchhandlung, München 1990, S. 6

68) 예컨대,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傳聞法則, hearsay evidence rule)에 의하면 증인의 진술내용이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대상으로 하는 때에는 이른바 전문증거(傳聞證據)로서 원칙상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 310조의 2). 이렇게 보면 기사가 직접 체험한 사실이 아니라 타인들로부터 취재하여 작성된 기사는 모두 전문증거이다.

69) Jahn, aa.O. S. 7

언론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현상은 조용하고 숙고적(熟考的) 작용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법관의 판단작용을 저해하게 될 뿐 아니라, 재판받을 형사피고인이나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하여금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게 한다.<sup>70)</sup>

무엇보다도 이러한 보도경향이 사법에 주는 좋지 못한 영향은 사법에 대한 신뢰(信賴)의 저하 내지 불신(不信)이다.<sup>71)</sup> 편견적인 보도가 법관의 중립성을 해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일반적으로 퍼지게 된다면 그것은 사법의 존재인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게 된다. 또 재판결과가 예단적 보도와 어긋나는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오로지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것만을 가지고 재판해야 하는 법원이 그에 의해 판결한 결과가 이미 종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다르게 나타나는 때에는 이미 예단에 의해 판단을 내린 시민들은 법원의 판단을 불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판례는 이러한 여론재판의 폐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한다. 형사소추에 관한 언론의 보도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defendant's right to a fair trial)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법원은 편견적인 언론보도에 의해 공정한 재판이 박탈된 피고인의 유죄판결을 취소할 것임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때로는 재심을 받게 한다거나 무죄 방면된 사례도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1년 살인범 단정보도 사건<sup>72)</sup>에서 한 사람의 혐

의자가 적대감으로 충만된 환경에서 기소됨으로써 그 기소가 단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게 된 때에는 혐의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박탈당한 것이라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다음의 판례는 은행살인강도범의 자백을 사전에 보도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보도의 영향을 문제시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을 취소한 극적인 사건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에스테스사건<sup>73)</sup> 및 셰퍼드사건<sup>74)</sup>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유명한 Samuel Sheppard 박사의 살인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언론의 선정주의적 보도가 셰퍼드박사의 공정재판청구권을 박탈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사례] 리도 사전자백 방송 사건 (1963)

미국 연방대법원

Rideau v. Louisiana, 373 U.S. 723, (1963)

이 사건은 1961년 루이지애나주에서 은행 고객 3명을 인질로 잡고 현금을 강탈한 뒤, 인질 한 명을 살해한 은행강도사건에 대한 재판에 관한 것이었다. 범행 수 시간 후 범인 윌버트 리도(Wilbert Rideau)가 경찰에 체포·수감되었다. 그 이튿날 구치소에서는 보인관이 리도를 심문하는 장면이 약 20여 분간 촬영되었는데, 그 내용은 보인관의 심문에 대하여 리도가 은행강탈과 인질극 및 살인사실을 시인하는 광경이었다. 며칠 후 그 인터뷰장면이 그 지역의 텔레비전에 3차례에 걸쳐 방영되어 그 지역 주민 15만 중 1차 방영에서는 약 2만4천명, 2차에서는 약 5만3천명, 3번째에서는 약 2만명이 시청하였다. 2주후 리도는 무기소지, 인질 및 살인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그의 변호사들은 즉각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친 텔레비전 방송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재판은 공

70) Dwight L. Teeter, Jr. & Don R. Le Duc, Law of Mass Communications Freedom and Control of Print and Broadcast Media, 7th Ed. Westbury, New York, The Foundation Press, Inc., 1992, p. 636

71) Winfried Hassemmer, Der Einfluß der Medien auf das Strafverfahren aus strafrechtliche Sicht, in: Dietrich Oehler, Friedrich-Adolf Jahn, Rudolf Gerhardt, Manfred Burgstaller, Winfried Hassemmer, Der Einfluß der Medien auf das Strafverfahren, Schriftenreihe des Instituts für Rundfunkrecht an der Universität zu Köln Band 52, C.H.Beck'sche Verlagsbuchhandlung, München 1990, S. 67

72) Irvin v. Dowd, 366 U.S. 717

73) Estes v. State of Texas 381 U.S. 532, 85 S.Ct. 1628, 14 L.Ed. 543 (1965)

74) Sheppard v. Maxwell 384 U.S. 333, 86 S.Ct. 1507 16 L.Ed. 2d 600 (1966)

정을 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법원 이송신청을 했고, 배심원 중 위 인터뷰장면의 방송을 시청한 3인의 배심원과 켈커슈구의 보안관대리 2인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이의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리도는 결국 켈커슈구의 법정에서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루이지애나 대법원도 유죄판결을 인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유죄판결을 파기하였다.

법원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증거물에 포함된 것으로서 이미 방영되었던 녹화파일에는 보안관과 경찰관이 구금된 리도를 조사하는 장면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보안관의 신문에 대해 리도가 강도, 인질 및 살인 등의 범죄 사실을 자세히 시인하는 광경이었다. 그것은 그 지방경찰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었으나, 리도가 촬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조차 제시되지 못했다.

연방대법원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연방헌법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및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부여받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리도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충고해 줄 변호사도 없었던 상황에서, 보안관의 주재하에 구치감에서 취조받는 리도의 모습을 주민들은 세번씩이나 시청했음에 주목하고, 이송신청이 거부된 채 그 지역의 법원에 의해 진행된 인민재판식의 절차과정은 어떠한 후속되는 적법절차도 단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게 될 것이므로 정당한 법적 절차를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정당한 법적절차에 의하면 이런 식의 증거물 제시에 의한 기소 방법으로는 어떠한 혐의자에 대해서도 사형선고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Chamers v. Florida, 309 U.S. 227, 241).

## (2) 재판공개주의와 언론 보도

피고인에 대한 심리는 법원조직법상의 공개재판주의에 따라 공공의 입장이 허용된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진다. 연혁적으로 보아 공

개재판제도는 폐쇄된 비밀주의적인 사문주의(査問主義) 재판절차를 지양하여 공개적 변론절차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소송당사자 특히 형사피고인을 사법의 자의(恣意)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재판공개주의의 운영 경험에 의하면 수많은 테러리스트의 재판에서 보여주듯이 공공의 입장허용은 법원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에서 선동과 소란을 가져왔고, 오히려 진실발견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었다. 다양한 통제기구를 갖는 권력분립적 법치국가에서 이렇게 공공의 통제기능이 중요성을 상실하게 된 경향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 재판공개주의의 주된 의미는 공공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법정공개외의 반사적 효과로서 이해되던 언론매체에 의한 간접공개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음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미디어에 의한 재판보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의 공개를 하지 않거나 그에 관한 보도가 절제될 필요가 논의된다. 종전에 재판의 공개를 배제하는 주요 이유는 국가의 비밀 또는 공서양속 등 공적인 이익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관계인의 인격권 보호에 그 중점이 옮겨지게 되었다.

## (3) 법정 보도의 허용성 및 한계

법정의 보도가 허용된다고 하여 특히 그 수사대상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신원공개가 자동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sup>75)</sup> 즉, 공개재판주의가 언론매체의 실명보도를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원의 심리에서는 피고인의 수많은 개인적

75) Wenzel, 4. Aufl., S. 446

Copyright © 2013 by Daegu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ISSN 1226-9376(Print) / ISSN 2288-4444(Online) / P-ISBN 978-89-965-032-4-4 / E-ISBN 978-89-965-032-5-1

생활환경이 언급되기 마련이지만, 심리 경과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내밀영역, 비밀영역 및 사사적 영역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는 한계를 지켜야 한다. 소송절차에서 개인적 생활환경이나 자료에 관한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이나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한 진술일 뿐, 공개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언론이 그것을 그대로 보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에서 진술된 피고인의 개인적 생활영역에 속하는 사정이 넓은 범위의 공공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그 사건의 시사적 의미 및 그 보도가 피고인과 그의 혐의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필요한가의 여부에 의존한다.

법정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일반적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과 소송경과는 진실되게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실상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설명이나 피고인을 모욕하거나 그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은 금지된다.

(4) 인격권 보호를 위한 재판의 비공개

공개된 변론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상세한 내용이 진술되기 마련이다. 그러한 재판을 비공개로 한다면 대중매체는 그러한 상황을 보도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그러한 조치가 피고인의 비밀영역 및 내밀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사유로서 관계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기업의 비밀보호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입법적 결함이라고 생각되지만, 위 법문상의 사유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인격권 보호를 위해서도 위 규정은 준용될 수 있다. 오늘날 주로

재판의 공개가 배제되는 이유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비공개 여부의 결정에는 구체적인 사례의 사정에 따라 공공의 알 권리와 소송관계인의 인격보호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그 경우 언론에 의한 재판보도의 경향은 인격보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과 대중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정보다는 이러한 범죄의 주변 사정에 관하여 더 큰 관심을 가지며 이를 비난적 요소로 평가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독자들이 관심을 갖는 피고인의 직업생활이나 생계생활 등의 사정은 성질상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생활의 주변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적 영역과 공개적 영역의 중간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도나 공개 여부는 어려운 형량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에 비하여 사사적 영역이나 비밀영역 및 내밀영역과 같이 인격영역의 핵심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공개적으로 비난받을 위험이 클수록 공개원칙은 더욱 후퇴되게 된다. 인격영역의 침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인격보호가 증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형사사건에서 공개원칙을 과도하게 배제하는 것은 입법자의 명료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소송경과의 투명성과 범죄경위에 관한 이해를 위하여 그 보완책이 문제된다. 법원은 공공의 통제 및 정보의 이익을 보다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건의 전면적인 비공개보다는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그 일부에 관하여 일시적인 비공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또 재판장은 비공개를 해제한 후에 그 결과에 관하여 압축·설명하거나 감정인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고려될 수도 있다.

인격보호를 중시한다면 법원도 비공개조치

에 인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비공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신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법원은 그에 따라야 한다. 비공개의 요건이 존재한다고 해도 소송관계인 모두가 명시적으로 공개 변론을 원하는 경우에는 물론 공개로 하여야 한다. 비공개의 요건이 있음에도 신청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재량권을 갖지만, 공개원칙보다 인격보호가 원칙적 우위를 가지며,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사사적 영역과 비밀 및 내밀영역에 우위가 주어진다.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는 내밀한 사항, 정신적 육체적인 주목거리 등에 관한 진술이 임박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의 인격적 영역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고, 피고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비공개할 것이 강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인격이나 행위배경의 이해를 위하여 변론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비보도를 조건으로 기자의 입장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독일 법원조직법 제175조 제2항 1문 참조).

1991. 1. 1.부터 시행된 특수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면 약취·유인·강간·강도 등 특수 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그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보도할 수 없다(동법 제8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보호와 함께 보복범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는 범정보도 - 법정에서의 촬영, 녹화 및 중계

법정을 영상에 의해 극화하려는 경향에 대처하는 법적 제도로서 예컨대 영국과 스웨덴

에서는 오래 전부터 법정에서의 촬영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왔으며, 독일에서도 다수 학설은 이러한 제한을 지지하여 왔다. 1982년 제54차 독일 법률가대회가 법원 전체의 구내에서 보도를 목적으로 한 사진촬영은 불법이라고 선언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의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간접공개 중에서도 일정한 태양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을 취한다.

독일에서는 공적 인물 내지 시사적 인물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공판절차에 대한 초상보도가 민사상 책임을 지는가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된 바 있다. 인격권에 의한 효과적인 초상보호를 강조하는 견해에 의하면 공적인 의미 때문에 이미 익명권을 상실한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공판절차에서 그의 초상 보도가 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도할 수 없으며(독일 예술저작권법(KUG) 제23조 제2항 참조), 이렇게 보도될 수 없는 초상은 원칙적으로 사진의 촬영도 금지되고, 나아가 촬영이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도 역시 불법이라고 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것은 익명성을 상실한 자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영상보도는 또 다른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설은 그러한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기소되어 공개적인 재판절차에서 다루어지는 피고인의 초상은 따로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촬영을 감내해야 한다고 한다.<sup>76)</sup> 피고인이 법정에서 어떻게 보이고 행위하는가를 법정에 참석한 기자가 기술·보도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이러한 피고인에 관한 인상의 언어적 전달이나 시각에 의한 전달은 근본적으로 다름이

76) Eberhard Rotberg, Öffentlichkeit der Rechtspflege, in Studium Generale 23 (1970) S. 758

없다는 것이 그 주장의 이유이다.<sup>77)</sup>

그러나 엔가우는 관찰자의 언어적 전달과 영상전달을 동일시하는 이러한 Rotberg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한다. 언어로 표현된 바를 대하는 수용자는 그것이 주관적으로 각색된 결과의 묘사라고 인식하며, 언어에 의한 보도는 묘사대상인 피고인과 수용자 등 관찰자간의 간격을 유지해 줌에 비하여 피촬영자 자신이 공중에게 전해지는 영상보도의 경우에는 피촬영자 자신의 인격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 가해진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Rotberg의 견해는 무엇보다 영상보도가 포착하는 태양과 방법을 무해한 것으로 보아 그로 인해 야기되는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78)</sup>

사법 당국은 집요한 사진기자들에 대하여 자주 관대하고 굴종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인의 주목을 끄는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법원건물에 등장하거나 법정 에 입장하기까지 사진기자들의 무자비하고 소란스런 쇄도에 무방비상태로 방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사안에서 언론의 취재전쟁은 무질서와 함께 수많은 굶주린 고양이와 쥐를 사냥하듯 피고인에 대한 박해적 공격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 피고인의 일거수일투족과 순간 순간의 얼굴표정이 수십 개의 카메라에 의해 포착되곤 한다.<sup>79)</sup> 사진기자의 촬영세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은 손이나 물건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머리를 숙여 감추는 행동을 취하게 되지만, 그것이 사진촬영에 방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모습의 촬영 보도는 그에 대한 비꼬는 사진설명과 함께 더욱 더 그를 모욕 주게 된다.<sup>80)</sup>

사진기자가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취한 장면은 그의 처참한 처지에 더하여 더욱 심각한 부담을 주게된다. 피고인으로서 법정 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정신적·심리적으로 무거운 긴장을 주기 때문에, 고도의 극기심이 없이는 극복될 수 없는 것이고, 그 긴장은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눈에 띠는 것을 모두 포착하려는 사진기자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피고인의 내적 불안은 가중될 뿐 아니라 당황함 및 경직성을 높인다. 사진기자의 성가신 추궁은 형사법정에 선다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미 제한된 피고인의 집중력을 더욱 약화시키며, 신경증적으로 산만해진 피고인은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심리와 소송의 경과에 대한 주의력을 잃게되고, 변론에서 피고인의 방어능력은 현저히 약화된다. 그밖에도 피고인이 흥분되어 침착성을 잃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그는 정신적 장애까지 앓게 될 수 있다. 그러한 순간에도 촬영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피고인은 소송을 견디기 어렵게 된다. 공정하고 인간적인 법원의 심리가 피고인을 이러한 괴롭힘에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시사적으로 중요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진촬영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sup>81)</sup>

법공동체에서 법원보도가 갖는 가치가 지대하다 할지라도, 언어에 의한 보도가 상술한 한계내에서 허용된다는 이유 때문에 과도하게 저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더 나아가 스케치나 그림의 형태에 의한 해설은 사진보다는 훨씬 분별 있게 그를 성가시게 함이 없어 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시사적으로 중요한 피고인의

77) Engau, aaO S. 513  
 78) Engau, a.a.O, S. 513  
 79) Engau, aaO S. 514  
 80) Engau, aaO S. 515  
 81) Engau, aaO S. 516

정당한 이익에 대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한해서는 법원조직법 제169조 2문을 넘어 법원건물 내 및 그 부근에서의 촬영은 애당초부터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엔가우의 견해이다.<sup>82)</sup>

### 5. 판결확정 후 사회복귀 또는 사회화의 이익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관점은 범인의 이익을 위해 그 초상의 보도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게 된다. 익명성의 보전은 범인 및 범죄혐의자를 폭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수형 후 범인의 방해받지 않는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범인에게도 헌법상 개인에게 보장되는 자율적인 자주발현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사례] 레바하 살해범 기록극 사건 (1973)  
독일연방헌법재판소 1973. 6. 5. 판결  
Lebach-Entscheidung BVerfGE 35, 202

이 사건의 사안을 보면 독일제2방송공사(ZDF)는 '레바하의 군인살해사건'이라는 기록극을 제작·방송할 예정이었다. 그 사건의 주범 2인은 1969년 동성연애자로서 요트를 마련하여 외딴 섬에서 그들만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국경수비대 초병 4인을 살해하고 무기를 탈취한 후 금융중개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사건으로서 당시 독일에서는 장기간 사회의 비상한 이목을 끈 사건이었다. 레바하는 위 군인살해사건에 방조범으로 기소되어 6년형을 마치고 출옥할 예정

이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레바하가 그 사건에서 단지 중범에 불과한 자였을 뿐 아니라 과오를 뉘우치고 범죄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중시하여 그의 사회복귀를 위한 필요에서 레바하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본안판결시까지 그 프로의 방송을 금지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범죄사건의 보도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익의 형량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범죄행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 중범죄인 경우에도 - 범죄자의 '언론에 보도되지 아니하고 싶은' 권리가 보다 큰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입장을 전제로 하였다. 재판부는 시간이 경과되어 그에 대한 보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시간적인 한계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되는 시점으로부터 범죄자의 사회복귀의 이익이 발생하며, 이 시점부터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보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 참고 문헌

Nipperdey, Würde des Menschen in: Neumann-Nipperdey-Scheuner, Die Grundrechte, 2. Bd., Berlin 1954, S. 1, 3, 30f  
Herwigh Engau, Straftäter und Tatverdächtige als Personen der Zeitgeschichte: Ein Beitrag zur Problematik identifizierender Mendiendarstellungen (Europäische Hochschulschriften: Reihe 2, Rechtswissenschaft: Bd. 1376), Frankfurt am

82) Engau, aaO S. 517

- Main: Berlin: Bern: New York: Paris: Wien: Lang 1993
- Erdsiek, Zum Persönlichkeitsrecht des Straftäters, in: AfP 1973, S. 413
- H. J. Schneider, Kriminalitätsentstehung und -behandlung als Sozialprozesse. Kritischer Überblick über die kriminologischen Kongresse im Herbst 1971 in: JuS 1972 S. 191
- Kohler, Kunstwerkrecht, Stuttgart (1908)
- 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3. Auflage, Verlag Dr. Otto Schmitt KG, 1986
- 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4. Auflage, Verlag Dr. Otto Schmitt KG, 1994
- Eberhard Schmidt, Justiz und Publizistik, Tübingen 1968
- Löffler/Ricker, Handbuch des Presserechts, 2. Auflage, C.H.Beck, München 1986
- Damm, Presserecht mit Kommentar, Percha 1985
- Dietrich Oehler, Friedrich-Adolf Jahn, Rudolf Gerhardt, Manfred Burgstaller, Winfried Hassemer, Der Einfluß der Medien auf das Strafverfahren, Schriftenreihe des Instituts für Rundfunkrecht an der Universität zu Köln Band 52, C.H.Beck'sche Verlagsbuchhandlung, München 1990
- Eberhard Rotberg, Öffentlichkeit der Rechtspflege, in Studium Generale 23 (1970)
- Dwight L. Teeter, Jr. & Don R. Le Duc, Law of Mass Communications Freedom and Control of Print and Broadcast Media, 7th Ed. Westbury, New York. The Foundation Press, Inc., (1992)
- 秋吉健次, '명예훼손 소송에서 로스의혹 보도와 TV프로그램', 月刊民放 1998년 1-4월호에 연재된 "マスコミ判例研究 7, 8, 9, 10"

# 2003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연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 및 평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책임연구원 : 이재진 교수)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진행하였으며 이 글은 조사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주

## I. 연구목표와 방법

### 1. 연구목표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이상 실효성 있는 언론중재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 왔다. 또한 반론권(right of reply) 등을 도입한 외국의 법제나 이론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법과 현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독특하면서도 적절한 언론중재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0년 1월부터 2003년 6월 사이에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재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였으며(만족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개선방향)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보도실태와 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런 문제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서 언론중재제도 이용과 관련된 일차적인 자료를 수집한다. 이를 통해 2003년 현재 23년째를 맞고 있는 언론중재제도의 이용만족도를 평가한 후 궁극적으로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성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이나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목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i) 한국 언론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 ii)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 iii) 언론중재제도의 내용적 만족도 평가 및 효과적 운용방안 모색
- iv)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 제고방안 모색

### 2. 연구문제

언론중재제도와 관련된 위와 같은 연구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첫째,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한 (피)신청인들의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어떠한가?

-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가?
- 우리나라 언론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는 어떠한가?
- (피)신청인이 생각하는 언론보도의 문제점과 피해의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언론중재제도 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 언론보도 피해구제를 위한 권리 및 방법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어떠한가?
- 중재절차 및 심리과정, 결과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어떠한가?

셋째, 언론중재제도의 대한 인식 및 내용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 현행 중재제도 운용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 중재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 역할 및 개선방향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 1) 조사대상 선정기준

2000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모집단 전체(신청인, 피신청인)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중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주소 불명자(중재사건기록 상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
- 해외거주자
- 중복된 신청인, 피신청인
- 신청인 1인이 다수의 언론사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한 경우와 1인의 피신청인이 각기 다른 보도에 의해 2회 이상의 중재심리에 참가한 경우 각각 1회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피신청인이 언론사 자체로 되어있는 경우와 언론사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대리인으로 변호사 및 법조관련 부서가 명시되어있는 경우는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 (1) 신청인

개인의 경우는 중재심리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신청당사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회사·공공단체·법인 등과 같은 단체의 경우 실제적으로 중재심리에 참석한 자, 즉 대표가 참석한 경우는 대표를,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는 대리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하나의 보도에 대해 2인 이상이 중재제도를 신청한 경우, 2인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단, 회사나 단체의 경우 중재심리가 열리지 않은 경우와 심리에 불참한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 피신청인

실제 중재심리에 참석한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피신청인이 중재심리에 불출석하였거나 중재신청이 취하된 경우, 피신청인이 언론사 발행인으로 되어있는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동일 언론사의 경우 중재신청건의 대리인이 다르다면 각각을 독립사안으로,

대리인이 동일하면 중복사안으로 판단하였다.

## 2)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2000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조사대상자로 제한하였다. 2000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의 언론중재건수는 총 2,091건이며 중복된 (피)신청인과 주소·연락처 불명 등의 이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신청인은 1,355명, 피신청인은 976명이었다.

## 2. 조사방법

본 연구는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의 이용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이용한 우편조사방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우편조사는 넓은 지역을 포괄하면서도 응답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동원되었다.

1차적으로 이루어진 우편조사에서, 먼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한 후, 훈련된 연구보조원들로 하여금 (피)신청인 개개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본인여부, 연락처와 설문지를 받을 수 있는 주소, 설문에 응할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다. 이러한 전화조사 과정을 통해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가 확인된 신청인, 피신청인 572명 중 설문참여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신청인과 피신청인 418명에게 우선적으로 설문지가 우송되었다. 이때 언론중재위원회와 한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의 이름이 인쇄된 봉투에 설문지가

반송용 봉투와 동봉되어 보내졌으며 반송용 봉투에는 반송에 필요한 우표가 붙여졌다. 설문지에 마감일이 명시되었고 아울러 높은 설문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많은 방법이 동원되었다.

2차로 이루어진 우편조사는 주소가 명기되었으나 중재제도이용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던 (피)신청인들과 설문참여 여부에 대한 전화 확인 시 확답을 주지 않은 (피)신청인들을 대상으로 1,663부가 우송되었다.

3차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는 피신청인들에 대한 우편설문회수결과 서울지역 10대 일간지와 3대 방송국에 소속된 피신청인들의 응답률이 너무 저조한 결과를 보인 이유로 이들에게 설문지를 재발송하지 않고 교육받은 조사원들로 하여금 직접 전달 후 현장 회수하거나 우편으로 회신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1, 2차 설문지 우송 후 연락처를 알고 있는 (피)신청인들에게 확인전화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설문참여를 독려하였다.

## 3. 우편조사결과 및 회수율<sup>1)</sup>

조사대상자 전체의 총 회수율은 신청인이 1,355명 중 236부(17.4%), 피신청인이 976명 중 127부(13.0%)가 회수 되었으며 전체 회수율은 15.2%로 최종 집계되어 외형적으로는 일반적인 우편조사의 보통회수율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설문참여와 설문회수에 능동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실질적인 분석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전 전화접촉 승낙자들의 설문회수율은 신청인이 50.6%, 피신청인이 41.5%로 집계되어 일반적인 우편조사 회수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 전체 설문 발송 분 중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전직, 사퇴 등의 이유로 20% 정도의 설문이 반송되었다.

#### 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설문지의 검토(data cleaning), 코딩, 편집과정 등을 거쳐 SPSS for window 10.1로 분석되었고 EXCEL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과 그래프작업이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전체적으로  $p < .05$ 로 설정하였다.

예상되는 결과로는 신청인 전체와 피신청인 전체를 대상으로 교차분석한 결과가 분석의 연구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인그룹, 피신청인그룹 내에서도 중재결과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 Ⅲ. 분석결과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2000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3차에 걸친 우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회수된 363건의 설문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공통되는 질문, 신청인에게만 묻는 질문, 피신청인에게만 묻는 질문 순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정리하였다.

1. 우리나라 언론보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2. 언론중재제도 인지도 및 필요성
3. 중재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4. 중재신청사건과 관련된 신청인·피신청인의 입장
5.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6. 언론중재위원회 이용 및 평가
7. 언론피해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

#### 1.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신청인 전체 응답자 236명중 남자 206명(97.6%), 여자 15명(2.4%)이었으며 나머지 25명이 응답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전체 응답자 127명 중 남자 113명(96.8%), 여자 3명(3.2%)으로, 신청인, 피신청인 공히 남자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령 분포에서는 40대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청인 90명(40.7%), 피신청인 73명(62.9%)이었고, 50대의 경우가 신청인 60명(27.1%), 피신청인 23명(19.8%)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상당수가 40, 50대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학력수준을 살펴본 결과로는 신청인의 경우 대졸 76명(35.0%), 대졸 이상 98명(45.2%)이었고, 피신청인의 경우, 대졸 81명(65.9%), 대졸 이상 42명(3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사항으로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수준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이 피신청인 보다 신청인의 경우가 더 높았다는 점이다.

신청인 응답자의 중재사건 관련성에서는, 신청인의 경우, 사건당사자(66.8%) 및 대리인(23.2%)이 대부분이었고, 피신청인의 경우 해당 언론사 간부나 대표(63.7%), 문제기사 작성자(24.8%)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지역적 분포에서는 신청인 응답자 중 129명(60.0%), 피신청인 응답자 중 80명(70.3%)이 서울중재부에서 중재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2. 우리나라 언론보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 1)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행

우리나라 언론보도의 문제점과 피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이 공익과 개인 권익보호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 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신청인들 중 다수의 응답자가 '사회적 책임을 대체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61.8%)고 대답한 반면, 피신청인은 '잘 이행하고 있다(34.6%)', '보통이다(41.0%)'라고 대답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상당한 인식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에서 드러난 양자간의 차이는 신청인들이 언론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어 언론중재를 신청했던 당사자들이므로 피신청인에 비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언론에 의한 피해경험을 가진 신청인들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가 전체의 69.6%를 차지하며 이중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7.8%나 된다. 이와 반대로 피신청인의 경우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41.0%), 다소 긍정적이라는 의견(34.6%)과 다소 부정적이라는 의견이(21.2%) 있었으며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은 찾을 수 없었다.

## 2) 언론자유 정도의 문제

우리나라의 언론자유 보장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신청인의 78.7%, 피신청인의 82.8%가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해서 일반적으로 언론자유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언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정적 의견은 신청인의 경우 10.9%, 피신청

인의 경우 6.0%로 비교적 적게 나타나 신청인·피신청인 모두 언론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언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신청인 응답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는 대답도 6명(2.6%)이나 있었다는 점이다.

## 3) 공정보도 저해요인

언론이 정론을 펴고자 할지라도 여러 가지 내외적인 문제에 의해 공정보도 혹은 객관보도가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우리 언론의 공정보도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질문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답을 얻었다.

신청인들의 경우 공정보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언론인의 자질부족'(54.6%), '언론사 간부의 간섭과 통제'(17.5%), '언론사 노력부족'(10.9%)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피신청인들의 경우 '언론인의 자질부족'(37.9%), '언론사의 노력부족'(29.3%), '언론사 간부의 간섭과 통제'(13.8%) 등을 공정보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보듯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언론인의 자질부족'을 공정보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는 언론인들의 연수기회나 재교육 기회 부족으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법 지식을 포함한 전문지식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4) 인권침해 발생요인

사회가 다변화되고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서 속보성을 가지는 언론의 특성상 사실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보도나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보도가 발생할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잘못된 보도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로 인한 피해의 종류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표 1> 인권침해 발생요인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부정확한 보도	77	33.5	43	37.1
일방적 편파보도	85	37.0	37	31.9
선정적인 보도	31	13.5	10	8.6
과장, 축소보도	14	6.1	6	5.2
전체가 아닌 일부보도	16	7.0	16	13.8
기 타	7	3.0	4	3.4
무응답	6	-	11	-
총 계	236	100.0	127	100.0

먼저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보도의 원인'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신청인은 '일방적인 편파보도'(37.0%), '부정확한 보도'(33.5%), '선정적인 보도'(13.5%)에 의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피신청인들도 '부정확한 보도'(37.1%), '일방적인 편파보도'(31.9%) 등을 인권침해 발생원인으로 보고 있다.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해 신청인은 '윤리의식 결여'(34.1%), '언론의 일반인을 경시하는 태도'(18.9%), '전문지식 부족'(18.4%)을 가장 큰 원인으로 택했으며, 피신청인은 이런 보도들이 생기는 이유를 '지나친 특종경쟁'(36.2%), '전문지식부족'(19.8%), '윤리의식 결여'(19.8%) 등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피신청인들의 대답에서 '특종경쟁으로 인한 부정확한 보도 가능성'

이외에 '전문지식 부족'과 '윤리의식의 결여'를 스스로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차후에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이 언론내부에서 이루어져서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 5) 잘못된 보도로 발생하는 피해의 종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피해의 종류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구분 없이 대부분이 '명예훼손'을 가장 큰 피해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신용(재산)피해', '사생활 침해'를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서 특징적인 사항은 1996년의 중재제도 만족도 조사에서는 피신청인의 52%만이 명예훼손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 71.8%의 응답을 보인 신청인 집단과 의견 차이를 나타냈었는데,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신청인·피신청인 모두 77%이상이 명예훼손을 가장 큰 문제로 받아들여 지난 조사이후 언론인들의 명예훼손 현상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96년 이후 활발해진 언론중재제도의 중재결과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 3.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 1) 언론중재위원회의 인지도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언론중재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및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알기위해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2〉 언론중재위원회 인지여부

	신 청 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몰랐다	17	7.5	0	0.0
이름은 알고 있었다	100	44.3	29	25.0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	109	48.2	87	75.0
무응답	10	-	11	-
총 계	236	100.0	127	100.0

첫째로 '중재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언론중재위원회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신청인의 48.2%가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으며, 44.3%는 '이름은 알고 있었다'고 대답해서 조사대상 신청인들 중에서 7.5%를 제외한 92.5%의 신청인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신청인은 응답자 중 75.0%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으며, 25.0%가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해서 조사대상 전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거나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사실상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TV광고와 신문보도, 방송보도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이 3가지 경우 이외에 신청인의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알게 된 경우가 전체의 9.0%로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언론에 의한 보도피해에 대해 인식하지 않고 있던 일반인들이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신의 주변 사람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해 듣거나, 자신의 문제를 주변에 상담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TV나 방송매체를 통해 어렵듯이 인식

하고 있던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96년의 이용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96년의 조사시기에는 TV나 언론을 통한 언론중재위원회 광고가 일반인들에게 많이 노출되던 시기여서 '주변사람들(23.5%)' 보다는 'TV광고(57.0%)'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를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다. 이에 주변사람들에 의한 막연한 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격과 업무에 대해 TV광고나 신문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은 '신문광고'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를 알게 되었다는 대답이 33.8%로 나타났고 '방송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는 응답이 17.4%로 그 뒤를 이었다.

## 2)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96.1%, 피신청인의 92.2%가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구제 수단으로 언론중재제도는 필요하다'라고 답해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언론중재 이용자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

	신 청 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필요하다	220	96.1	106	92.2
필요없다	9	3.9	9	7.8
무응답	7	-	12	-
총 계	236	100.0	127	100.0

중재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모

두 '기본권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절차와 비용이 간편하므로'라고 대답해서 언론중재제도가 그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소수의 의견이지만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에 부정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중재제도로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불필요 의견'을 밝힌 신청인 전체의 52.9%로 가장 많았으며 '법정소송을 통한 확실한 피해구제를 원하기 때문'(17.6%)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신청인의 경우는 언론중재제도에 의한 실질적인 구제효과와는 무관하게 '언론자유'의 통제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60.0%)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나 극소수이지만 아직도 언론중재제도의 초기입법 당시에 제기되었던 우려를 가진 피신청인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결과를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대부분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언론중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수의 신청인, 피신청인들이 언론중재제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언론중재제도 자체의 유용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구제로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언론의 통제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좀 더 효과적인 피해구제수단으로서의 중재제도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 4. 중재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실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언론보

도에 의한 피해가 생기고 그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상담과 중재신청을 한 경우, 절차에 의해 중재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참석시키고 중재심리가 진행된다. 이 중재심리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져 반론보도 등의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이런 중재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청인·피신청인들의 평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 1) 중재위원들에 대한 평가

먼저 중재위원들의 중재심리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90.5%와 피신청인의 95.7%가 '전원 참석' 혹은 '대부분 참석'하였다고 응답해서 중재위원들의 중재심리 참석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재위원들의 중재적극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적극적'으로 느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중재위원들의 중재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 중재위원들의 중재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수치를 96년의 조사결과 수치와 비교해 볼 때, 96년 결과에서 33.9%(신청인), 24.5%(피신청인)이었던 부정적인 의견이 2003년 조사에서는 각각 14.5%와 13.8%로 크게 낮아져 중재위원들의 중재에 임하는 자세가 예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재위원들의 중립성 정도에 대한 물음에서는 중재위원들이 대체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심리에 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중재위원의 중재 중립성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편파적	13	7.3	5	4.3
편 파 적	20	11.3	18	15.5
보 통	35	19.8	36	31.0
중 립 적	48	27.1	25	21.6
매우 중립적	61	34.5	32	27.6
무 응 답	59	-	11	-
총 계	236	100.0	127	100.0

신청인은 61.6%가 중재위원들이 대체로 공정하다고 답했으며 같은 질문에 대해 피신청인은 49.2%가 대체로 공정하다고 대답해서 피신청인보다는 신청인들이 중재위원들의 공정성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위원들이 대체로 편파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각각 18.6%(신청인), 19.8%(피신청인)로 전체 응답자의 20%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중재위원들의 중립성에 대해 편파적이라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중재심리 과정에 중재위원들이 언론사의 입장을 피해자들에게 설득시키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으며 그 이유를 전직 언론인들과 법관으로 이루어진 중재위원구성 특성 때문으로 해석했다.

중재위원들이 중재처리 이전에 사안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에서 대체로 숙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평가 결과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 전체의 25.8%의 응답자가 중재위원들이 사안을 '완전 숙지'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피신청인은 13.8%만이 사안을 '완전 숙지'하고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견도 19.8%(미숙지)로 신청인의 10.7%에 비하면 아주 높게 나타나서 중재위원들의 사안 이해 정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재위원들의 이런 사안 이해도에 대해 비상임직인 중재위원들의 특성상 중재심리에 임박해서야 중재사안에 대한 논의를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으며 일부의 응답자들은 중재위원들의 사안 미숙지로 인해 중재심리 이해당사자간의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할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표 5〉 중재위원의 직권강도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미흡	24	13.4	11	9.5
미 흡	25	14.0	16	13.8
보 통	52	29.0	40	34.5
강 력	49	27.4	38	32.7
매우 강력	29	16.2	11	9.5
무 응 답	57	-	11	-
총 계	236	100.0	127	100.0

중재위원들의 중재권한에 대해서는 신청인·피신청인 모두 '보통'이거나 '강력'하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과반수이상이었으며 매우 강력하다고 평가한 경우도 신청인 16.2%, 피신청인 9.5%로 중재위원들의 직권강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런 평가를 96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일반적으로 느끼는 중재권한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96년의 조사결과에서는 중재위원들의 중재권한에 대한 유사한 물음에서 신청인의 47.6%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으며 피신청인도 41%의 응답자가 중재위원들의 중재권한에 대해 강력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었다. 이런 평가의 차이는 96년도의 이용만족도 조사가 직권중재결정권이 아직 정착되기 이전에 실시되어 중재위원들의 강화된 중재권한 효과가 미처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중재신청사건과 관련된 신청인·피신청인의 입장

중재심리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는 평가와 법정과 같은 분위기였다는 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신청인은 '자유로운 분위기(43.2%)'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법정과 같은 분위기'라고 응답한 반면, 피신청인은 '법정 분위기와 비슷'했다는 의견이 전체의 53.4%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의견교환이 가능한 편안한 분위기'였다고 응답해서 서로의 입장에 따라 상반된 느낌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중재심리에 대한 상반된 분위기는 중재심리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권위적 분위기를 가지면서도 서로에게 최선의 조정결과를 얻기 위한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가능한 환경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런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권위가 공존하는 분위기는 신청인·피신청인 모두에게 합리적인 중재와 조정을 위한 조건으로 여겨진다. 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보다 '법정과 같은 분위기'를 더 많이 느끼는 이유는 신청인의 중재요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받고 기사 및 신청인 주장에 대한 설명 혹은 해명을 위해 참석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재심리에 임하는 신청인·피신청인 상대방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피신청인의 '중재심리에 임하는 태도'와 '중재결과에 대한 수용태도'에 대한 질문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중재심리 참석태도'와 '중재결과 수용태도'에 대해 비교적 협조적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혹은 언론사의 심리태도나 결과수용태도를 그다지 협조적

이지도 않았으며 심리결과의 수용에 있어서도 부정적이었다는 상반된 평가를 보이고 있다.

〈표 6〉 중재심리 중 상대방의 태도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소극적	65	36.5	5	4.3
소극적	28	15.7	6	5.2
보통	34	19.1	19	16.4
적극적	29	16.3	39	33.6
매우 적극적	22	12.4	47	40.5
무응답	58	-	11	-
총계	236	100.0	127	100.0

피신청인의 경우 신청인이 중재심리에 '아주 적극적' (40.5%)이었으며 중재결과 수용에 있어서도 '매우 협조적' (11.2%), '협조적' (30.2%)이라는 평가가 많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중재심리에 '아주 소극적(36.5%)'이었으며 중재결과 수용에도 '매우 비협조적(29.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서 언론의 중재심리 참석 태도에 대해 많은 불만을 나타냈다.

〈표 7〉 중재결과에 대한 상대방의 수용태도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비협조적	53	29.8	6	5.2
비협조적	35	19.7	23	19.8
보통	37	20.8	39	33.6
협조적	30	16.9	35	30.2
매우 협조적	23	12.8	13	11.2
무응답	58	-	11	-
총계	236	100.0	127	100.0

언론의 중재합의 결과이행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재결과가 합의에 이른 신청인의 97.9%는 언론사가 중재결과에 의한 반론, 정정보도를 게재했다고 응답하였으며 피신청인의 경우도 92.5%의 응답자가 중재결과를 이행했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실제적인 합의사항이행이라고 할 수 있는 '합의내용 전문 그대로 보도'의 비율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전체의 54.1%만이 합의내용 전문을 게재했다고 응답했으며 피신청인도 63.3%의 응답자만이 합의내용을 그대로 게재하였다고 응답해서 중재합의결과의 상당부분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합의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게재된 경우도 각각 신청인은 40.4%라고 응답한데 반해 피신청인은 16.5%만이 합의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게재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중재합의 내용게재에 관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평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중재합의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신청인 2.1%, 피신청인 7.5%나 있었다.

중재신청처리기간의 적합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신청인의 64.7%와 피신청인의 69.8%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재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의 중재기간을 '적당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처리기간의 연장과 축소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견이 있었는데 신청인의 경우 29.7%가 '너무 긴 편으로 줄여야 한다' (1주일-10일 정도)라고 대답한 반면, 피신청인은 23.3%가 '너무 짧은 편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양측의 대답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신청인의 경우 반론보도가 늦어질수록 실질적인 피해구제효과가 줄어들어 그에 따른 반응으로 생각되며 피신청인이 중재처리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이유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출석 요구서를 받은 후 문제보도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준비할 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 5. 중재신청사건 관련 질문

### 1) 중재신청보도의 인권침해유형

중재신청의 계기가 된 언론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중복응답이 가능한 질문에서 신청인들은 '일방적인 주장만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편파보도' (56.1%)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기 위한 악의적 보도' (18.9%)와 '단순 흥미위주의 과장보도' (10.0%)를 피해가 가장 많은 보도의 유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 인권침해보도유형(중복응답)

	빈도	백분율
오자, 오식에 의한 보도	9	3.0
편파보도	169	56.1
악의적보도	57	18.9
과장보도	30	10.0
왜곡보도	24	8.0
기 타	12	4.0
총 계	301	100.0

다음으로 이런 보도에 의한 인권 침해유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67.8%가 '명예훼손'을 가장 큰 인권 침해유형으로 꼽았으며 '신용(재산)피해' (14.8%), '사생활 침해' (7.1%)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 2) 중재신청 전 조치유형

문제의 보도가 나간 후 신청인들이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처하여 가장 먼저 취한 조치유

형에 대한 질문에서 신청인들은 가장 먼저 '언론사에 접촉하여 항의하거나 반론보도를 요구했다(60.1%)'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상담을 의뢰'(34.9%)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아 신청인들은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언론사에 직접 항의하며, 적극적으로 구제방안을 찾으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 언론사에 대한 항의수단

전체 신청자 중 항의를 목적으로 언론사에 접촉한 신청자는 74.8%였으며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신청자는 25.2%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언론사에 접촉을 시도했던 신청인들을 상대로 잘못된 보도에 대한 항의수단을 묻는 질문을 한 후, 복수응답이 가능하게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중재신청 전에 언론사와의 접촉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신청자들은 전화(59.0%), 직접방문(16.4%), 서면·FAX(17.7%)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잘못된 보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언론사에 나타낸 것으로 응답했다. 또 응답항목 중의 하나인 '인터넷이나 게시판 등을 이용한 항의'에 대해서는 전체의 5.6%의 응답자만이 항의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대답하여 인터넷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보도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답변이나 개선방안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인터넷이나 게시판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수단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피신청인 측의 대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피신청인의 경우 41.3%가 '전화항의'를 받았으며 '서면(19.6%)'을 통해 항의를 받은 경우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신청인들의 응답과는 다르게 직접방문보다

는 인터넷에 의한 항의접수가 15.3%로 나타났다.

### 4) 항의 접수한 언론인의 신분

잘못된 보도로 인해 언론사에 항의를 위해 접촉을 했을 때 신청인의 항의에 직접적으로 대응한 언론관계자의 신분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5.1%가 기사, 혹은 보도를 담당하는 담당기자나 PD와 접촉할 수 있었다고 대답했으며 해당언론사의 데스크나 부장 등 간부와 접촉하여 항의할 수 있었다는 대답도 26.7%로 조사되어 신청인들이 항의를 위해 언론사에 접촉했을 때, 대부분은 해당 보도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인물들과 접촉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1996년의 조사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데 96년의 조사에서는 신청인들이 잘못된 보도에 대한 항의를 목적으로 '언론사 간부(29.7%)', '발행인·편집인'(39.7%) 등에게 주로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보도의 작성기자나 PD에 대한 접촉은 24.0%로 2003년의 조사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5) 잘못된 보도에 대한 요구사항

잘못 보도된 기사에 대해 신청인들이 언론사에 요구한 사항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즉각적인 정정기사요구'(49.2%)와 '사과, 반론문 게재요구'(42.0%)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청인들의 요구에 대해 언론사측의 답변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49.1%)하거나 '잘못은 인정하지만 반론보도는 거부'(17.0%)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응답도 전체의 1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도 일부 언론은 일반인들의 보도내용에 대한 항의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유사한 질문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응답은 신청인들의 응답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청인들의 항의에 대한 조치유형'을 묻는 질문에 대해 피신청인의 41.8%는 '오류를 인정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응답했으며 32.0%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중재신청을 제의했다'라고 대답해서 전체의 73.8%가 비교적 우호적이고 협조적으로 사전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항의에 대한 조치방법'에 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잘못된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신청인들의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과 언론사 특유의 방어 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피신청인이 응답한 '언론중재제도 이용권유'나 '민원상담부서로 유도'라는 반응에 대해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중재권유'를 언론인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중재제도로 책임을 가려보자라고 받아들인다거나 '민원부서로 유도'를 피해자의 항의에 대해 독자의 일반적인 불만사항 처리정도로 취급하려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9〉 언론에 항의포기 이유(중복응답)

	빈도	백분율
효과 없을 것이라 판단	42	60.9
책임소재 불분명	2	2.9
언론사에 대한 두려움	4	5.8
중재위를 이용하려고	16	23.2
접촉 시도 했으나 실패	4	5.8
기 타	1	1.4
총 계	69	100.0

잘못된 보도와 관련 언론사에 연락을 취하지 않은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조사대상 신청인 중 60.9%가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23.2%가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점은 언론사에 대한 항의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식적인 구제절차를 택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 6) 중재신청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연락

중재신청 후 언론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신청인의 60.1%가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언론사로부터의 연락내용은 '호의적인 기사 게재를 조건으로 중재신청을 취하하라는 요구'(53.8%)가 가장 많았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취하요구'(11%)나 '위협적인 내용'(11%)의 통화도 있었다는 응답도 나타났다.

〈표 10〉 중재신청 후 언론사로부터의 연락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받은 적 있다(취한 적 있다)	98	60.1	51	49.1
받은 적 없다(취한 적 없다)	65	39.9	53	50.9
무응답	73	-	23	-
총 계	236	100.0	127	100.0

피신청인도 49.1%의 응답자가 언론중재가 신청된 것을 안 후 '신청인에게 연락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지만 신청인에게 연락을 취한 의도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요구와 의도를

알기 위해서'(62.7%)와 '기사작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21.6%)라고 응답이 나와 신청인들의 설문결과와는 내용에서 대조를 보였다.

〈표 11〉 언론사로부터의 연락내용

	빈도	백분율
호의기사게재, 취하요구	49	53.8
무조건취하 강요	10	11.0
위협적인 내용	10	11.0
기 타	22	24.2
무 응 답	7	-
총 계	98	100.0

피신청인의 응답결과를 종합해보면, 전체의 절반인 50.9%정도가 중재심리 출석 요구서를 받은 다음에도 신청인의 불만사항을 파악하거나 사전해결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않고 있지만 신청인과의 접촉을 시도한 경우에는 사전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신청인에게 기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지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신청인에게 접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2〉 피신청인의 연락내용

	빈도	백분율
호의적기사, 후속보도의 제인을 위해	7	13.7
신청인의 요구와 의도를 알기위해	32	62.7
기사작성절차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11	21.6
기 타	1	2.0
무 응 답	0	-
총 계	51	100.0

## 7) 중재심리에 대한 권한

피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중재대리인 신분으로 중재심리에 참석한 경우 중재결과와 수용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결정권을 가지느냐는 질

문에 대해 49.1%가 '언론사의 동의에 의해 결정권을 가진다'고 답했으며 42.2%가 '의사 결정에 대한 전권을 가진다'고 답해 중재심리 중 의사결정권을 대부분 가지고 중재심리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6. 언론중재위원회의 이용

### 1) 중재신청 동기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5.6%가 '개인적 항의보다 중재제도를 통해 확실한 피해구제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24.5%는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반론보도 등을 통한 정신적인 보상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답해서 많은 신청인들이 언론중재제도를 통해 잘못된 보도에 대한 반론을 게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기를 기대하며 중재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상담경험 및 만족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 신청인의 81.1%가 '중재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상담횟수는 1회가 가장 많았고(55.4%), 2회 및 3회의 상담경험을 가진 신청자도 전체의 4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위원회의 중재상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 중 48.7%의 신청인들이 중재상담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23.0%의 신청인들은 상담결과에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하였다.

〈표 13〉 중재상담 만족도

	빈도	백분율
매우 불만족	6	3.2
대체로 불만족	18	9.6
보통	29	15.5
대체로 만족	91	48.7
매우 만족	43	23.0
무응답	0	-
총계	187	100.0

다음으로 중재상담 시 불편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해 중재상담 개선요망 사항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무응답을 제외한 122명 신청인 의 응답 중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50.0%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핵심적인 불만사항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 '복잡한 서류절차' (15.2%), '상담시 간의 지체' (8.3%), '상담자의 불친절' (2.3%) 등은 전체의 25.8%에 불과해서 언론중재상담 의 절차상의 측면에 대한 불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류의 복잡 성과 상담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 려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재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42%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체로 복잡하다'는 의견이 21.2%, '대체로 간단하 다'는 의견이 30.4%로 조사되었다. 서류불편 개선사항으로 가장 많이 제기된 것이 오보에 대한 증빙자료준비와 제출이 어렵다는 점이며 유형별 중재신청서 예문을 비치하거나 상담원 을 원하는 의견도 많았다.

### 3) 중재처리결과

자신이 경험했던 중재처리결과에 대한 만 족도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 중재심리를 통해 언론사와 합의에 이른 경우는 152건이었으며

중재불성립이 43건 소송취하 42건, 기각 13 건, 각하 9건이었다. 이에 대한 중재심리결과 만족도를 5점 척도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 다.

〈표 14〉 신청인의 중재처리결과 만족도(중복응답)

	개체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Mean)	표준편차
중재합의	152	1	5	3.17	.89
중재불성립	43	1	5	1.83	.95
중재취하	42	1	5	2.63	1.09
중재기각	13	1	5	1.67	.89
중재각하	9	1	5	1.75	.89
총계	259	-	-	-	-

신청인의 중재처리결과 만족도는 5점 척 도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만족도를 통계 처 리한 것으로 3점을 중간 값으로 하여 1점 (매우 불만족) - 5점(매우 만족)으로 나타 낸 값이다.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중 재결과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대체로 불만족스럽다'는 평 가를 내리고 있다. 이 결과는 중재합의를 제 외하고는 신청인 자신이 의도했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로 보 이며 중재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중재합의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는 2%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결과가 언론중재제도나 중재심리 자체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 다는 단지 언론과의 중재과정에서 흡족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중재심리결과에 대한 피신청 인의 만족도는 신청인들의 결과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피신청인의 경우 '중 재불성립'을 제외한 모든 결과에 대해 '보 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의 응답을 하였 다.

〈표 15〉 피신청인의 중재처리결과 만족도(중복응답)

	개체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Mean)	표준편차
중재합의	81	1	5	3.25	1.03
중재불성립	35	1	5	2.54	1.31
중재취하	9	1	5	3.89	1.05
중재기각	5	1	5	3.00	1.22
중재각하	2	1	5	3.50	2.12
총 계	132	-	-	-	-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보건데 피신청인의 경우 중재결과의 불성립을 제외하고는 문제가 된 보도에 대한 중재심리결과에 대체로 만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중재불성립이유

신청인·피신청인 모두가 중재불성립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이 '언론사 측의 과실 부인'과 '언론사가 반론문 수용을 거부함'이었다. '중재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신청인들은 중재불성립의 이유로 '언론사측의 과실 부인'(48.8%), '언론사가 반론문 수용을 거부'(31.9%)를 들었고, 피신청인은 '잘못을 인정할 수 없음'(51.4%), 과 '반론문 수용 거부'(31.4) 등을 이유로 들었다.

#### 5) 중재신청 취하이유

신청인이 중재심리가 열리기 전 중재신청을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3%가 '언론사의 후속보도형태의 반론보도 게재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언론사의 사과로 만족'이라는 의견도 1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법원 소송여부

중재심리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잘못된 보도에 대한 시정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심리 불성립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40명 중 32.5%만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67.5%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송·재판 절차의 까다로움'과 '소송에 따른 실제적 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가 전체의 58.7%를 차지해 절차의 문제에서나 실제적 피해구제이익의 측면에서 언론중재제도에 비해 소송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법원소송포기 이유

	빈도	백분율
소송절차를 모름	1	3.4
소송재판절차의 번거로움	12	41.5
소송에 따른 이익 없음	5	17.2
민.형사소송 제기를 위해	3	10.3
언론사의 입력때문	1	3.4
기 타	7	24.2
총 계	29	100.0

#### 7) 직접소송 가능시의 중재심리 이용의향

신청인들에게 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적인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하다고 해도 중재위원회의 중재제도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신청인의 76.3%가 법원에 직접적인 청구가능여부와 상관없이 중재제도를 이용하였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시간절약'(43.9%), '중재절차 자체가 필요'(18.9%), '비용부담이 없다'(15.2%) 등을 꼽아서 언론중재제도가 반론보도청구를 위한

간편하고 저렴한 사법적 전치제도로서 확실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중재제도 이용 이유

	빈도	백분율
법을 잘 몰라서	5	3.8
중재절차 자체가 필요	25	18.9
비용부담이 없다	20	15.2
소송제기 전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	17	12.9
시간절약	58	43.9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	5.3
무응답	32	-
총계	164	100.0

#### 8) 차후 중재제도 재이용 의향

‘앞으로 다시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대응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9.5%가 ‘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겠다’고 응답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로 언론중재제도를 재이용할 의사를 밝힘으로써 피해구제효과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변에서 비슷한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중재제도를 권유 하겠다’는 대답이 65.9%로 나타났으며 ‘법적 소송을 권유’하거나 ‘중재제도를 권유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7.5%로 나타나 언론중재제도가 일반인들에게는 언론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정 내용 인지도

최근 개정이 논의 되고 있는 정간법 중 언

론중재제도와 관련된 항목들에 관한 몇 가지 중요사항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과반수 이상이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1996년의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데 1996년의 조사에서는 신청인의 경우 개정된 정기간행물법상의 언론중재제도 부분 내용을 알고 있었던 신청인의 비율이 35% 이하로 비교적 낮은 인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신청인의 56.4% 이상, 피신청인의 66.1% 이상이 논의되고 있는 개정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차이’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79.5%와 피신청인의 91.1%가 ‘알고 있다’고 대답하여 1996년 조사당시와 비교했을 때 일반인들의 개인의 명예에 관한 관심과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 1)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차이의 인지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피해구제를 원하는 자가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며 정정보도청구권은 허위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자가 해당매체에 정정 기사를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정간물법 개정시에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의 용어정리가 이루어졌으나 형식적 유사성에 의해 일반인들에게 종종 혼용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차이를 인지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신청인은 79.5%가 ‘차이를 안다’고 응답했으며 피신청

인은 91.1%가 차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996년 정간법개정 후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차이에 관한 홍보가 일반인들에게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1996의 이용만족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알 수 있다.

〈표 18〉 반론보도, 정정보도 차이 인지

	신 청 인		피신청인	
	알고 있다	알지 못한다	알고 있다	알지 못한다
1996	34.2	58.4	83.5	15.5
2003	79.5	20.5	91.1	8.9

반론보도청구는 정정보도청구와는 달리 반드시 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쳐야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필요적 전치주의).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신청인의 56.4%와 피신청인의 66.1%가 알고 있다고 답해서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차이 인지여부에 대한 물음보다 상대적으로 인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1996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피신청인의 경우 인지율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없었지만 반론보도청구권의 특성에 대한 신청인의 인지율은 1996년에 20%에 못 미치던 것이 2003년에는 56.4%로 증가해서 역시 일반인의 중재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반론보도청구권 특성인지

	신 청 인		피신청인	
	알고 있다	알지 못한다	알고 있다	알지 못한다
1996	19.6	75.7	66.1	32.0
2003	56.4	43.6	66.1	33.9

문제의 보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사실보도가 있는 후 6개월 이내)에 반론보도 청구를 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나면 반론보도의 효력을 잃는 현재의 반론보도청구권 기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20% 이상은 반론보도청구권기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신청인의 21.8%는 현재의 청구가능기간이 절차상 '너무 짧게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위주로 '너무 길게 규정되어 있다'(25.9%)고 생각하여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언론중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개인의 명예권 함양을 위해 중재위원수를 증원하고(현행 '40인 이상 80인 이내'를 '60인 이상 110인 이내'로) 중재위원의 일정 인원에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신청인은 71.6%가 시민단체 위촉위원 포함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반면 피신청인은 62.4%가 '반대' 입장을 밝혀 서로 대비되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시민단체에서 위촉된 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시민 의사 관철에 도움(신청인 대변)', '공정성 및 객관성 강화'를 위해서라고 대답한 경우가 각각 36.0%, 45.2%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위촉위원의 포함을 반대하는 피신청인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전문지식의 부족'(23.0%), '여론 편승우려(공정성 왜곡)'(21.2%)로 나타나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시민단체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상근위원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업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요구에 따라 현재의 비상근직 중재위원으로는 증가하는 중재심리에서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주기 힘들다는 취지에서 상임 중재위원 임명에 대한 내용이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중재제도를 이용한 신청인, 피신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20〉 상임 중재위원 임명

	신 청 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임명해야 한다	141	69.8	82	69.7
임명에 반대한다	61	30.2	36	30.3
무 응 답	34	-	9	-
총 계	236	100.0	127	100.0

상임 중재위원위촉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을 때 신청인의 69.8%, 피신청인의 69.7%가 상임 중재위원 위촉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양측 모두 상임 중재위원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 이유로 신청인들은 '전문적, 지속적 중재 업무수행이 가능'(49.7%), '공정성을 위해'(28.7%)의 순서로 응답했으며, 피신청인들은 '강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47.7%),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24.4%)로 대답해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현재보다 더욱 효율적인 중재제도의 모색을 위해 전문적이고 강력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상임 중재위원의 임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중재권한 강화에 대한 의견

현재의 중재제도는 중재심리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위원회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 결정을 쌍방이 따르도록 하는 직권중재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직권중재권에 대한 신청인, 피신청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21〉 직권중재권한

	신 청 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지나치게 확대되어있다.	8	3.6	20	17.9
현재상태가 적당하다	88	39.6	69	61.5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117	52.7	21	18.8
기 타	9	4.1	2	1.8
무 응 답	14	-	15	-
총 계	236	100.0	127	100.0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권에 대해 피신청인은 현재의 중재결정권이 '적당하다'(61.5%)라는 대답이 가장 많은 반면, 신청인은 '적당하다'(39.6%)라는 의견보다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52.7%)는 의견이 더 많고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다'는 의견은 3.6%에 불과하여 신청인은 대체로 중재위원회의 직권중재권한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재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에 대해 한쪽이 이의를 제기 했을 때 중재효력이 없어지는 점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결과에서도 신청인의 56.3%는 '직권중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 피신청인은 많은 사람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서 현재의 직권중재권이 '적당한 수준'(72.3%)이라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특기할 만한 사실은 신청인 중 과반수이상 이 직권중재권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 간법상의 '이의신청 항목을 없애야 하는가'라

는 질문에 대해서는 6.8% 만이 찬성하여 중재심리를 통한 조속한 피해구제를 바라기는 하지만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는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재권한 강화에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권한을 '언론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에까지 확장하자는 의견에 대해 신청인들의 58.7%는 '분쟁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고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0.9% 만이 '중재제도의 취지에 비춰 무리한 발상이다'라고 대답해 언론피해에 있어 신속하고 현실적인 피해구제를 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22〉 손해배상포함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경제적이며 바람직하다	132	58.7	17	15.2
효용성은 있으나 시기상조이다	29	12.9	27	24.1
법적문제의 소지로 인해 불필요하다	16	7.1	35	31.2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발상이다	47	20.9	33	29.5
기타	1	0.4	-	-
무응답	11	-	15	-
총계	236	100.0	127	100.0

그러나 동일한 질문에 대한 피신청인의 응답은 '법적인 문제가 파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다'라는 의견이 3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발상이다' (29.5%), '시기상조이다' (24.1%)라는 응답을 보여 신청인들보다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인터넷 언론에 대한 의견

매체의 기술적 발전에 의해 인터넷 언론이 새로운 언론의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범위'를 인

터넷 언론으로까지 확대시켜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논의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신청인의 86.7%, 피신청인의 91.0%가 '언론보도피해의 범위를 인터넷 언론까지 확대 적용해야한다'라고 대답해 양측 모두가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과 그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잘못된 기사의 보도에 있어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범위와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3〉 인터넷 언론의 반론보도권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확대적용해야 한다	189	86.7	101	91.0
시기상조이다	29	13.3	10	9.0
무응답	18	-	16	-
총계	236	100.0	127	100.0

언론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에 인터넷 언론을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신청인은 '인터넷도 하나의 언론매체이다' (39.6%), '타 매체에 비해 피해규모가 크다' (22.5%)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피신청인도 '피해사태 급증' (40.6%), '타 매체에 비해 피해규모가 크다' (29.7%)는 의견이 가장 많아 인터넷언론에 대해 신청인과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사실, 의견기사의 반론보도대상 포함여부

정간법 개정안과 관련한 마지막 질문으로 '사실이나 의견 기사를 반론보도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흥미롭게도 신청인의 73.6%, 피신청인의 53.7%가 '사실이

나 의견기사도 반론보도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대답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측 모두 사실이나 의견기사의 반론보도대상 포함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4〉 의견기사의 반론권 문제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적용되어야 한다	145	73.6	48	53.7
적용되는 안된다	51	25.9	41	46.1
기 타	1	0.5	2	0.2
무응답	39	-	36	-
총 계	236	100.0	127	100.0

사실이나 의견기사를 반론보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청인의 경우 '사실, 비평에 의한 왜곡이 많기 때문' (28.1%)이라고 대답했으며 '주관적 판단에 의한 오보를 줄이기 위해'라고 대답한 경우도 전체의 23.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신청인들은 '악의적 비평을 막기 위해', '의견기사의 사실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 '의견기사도 사실로 보는 분위기 변화' 등의 이유로 의견기사도 반론보도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와는 달리 의견기사를 반론보도 청구대상 포함에 반대하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반대의 주된 이유로 '주관적인 논조 필요', '언론의 기능 위축', '오피니언 기능 상실' 등을 들고 있다.

#### 8.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중재심리 만족도 분석

여기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설문지의

각 문항에 나타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상관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많이 눈에 띄지 않았다. 즉,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언론사의 특성별 그리고 신청인, 피신청인, 중재부별로 SPSS 통계패키지를 통해서 교차분석 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성별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의 94.8%가 남자로 나타나 그 차이의 분석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연령대별 특성, 중재부별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특성의 경우 흥미롭게도 연령이 높을수록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중재위원들이 사안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높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청인이든 피신청인이든 연령이 높은 경우 삶의 경험이 더 풍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아닌가 한다.

신청인의 직업변인과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언론의 자유정도'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의 정도'에 있어서 직업별로 약간의 차이 있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공무원, 교육종사자인 경우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직 종사자나 일반 단체 소속 신청인들은 그 반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언론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교육종사자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반면 언론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두 변인이외의 여타 만족도 변인들과의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언론사별 특성에 따른 피신청인들의 만족도 변인들과의 분석은 별다른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언론의 성격이 어떠한가 그리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의 문제는 만족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부별로 특성을 살펴보면 신청인들의 경우 지방에 위치한 중재부의 중재심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서울에 위치한 중재부의 중재심리를 경험한 사람들보다 '중재위원의 중재심리에 임하는 태도'의 평가에 있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청인의 경우 지방중재부의 중재심리에 대한 만족도가 서울중재부의 만족도보다 약간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전체적인 만족도 인식의 차이조사에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재위원의 사안이해 정도', '상대방의 심리에 임하는 태도', '상대방의 결과 수용 태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피신청인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언론은 잘 이행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경향이 큰 반면, 신청인은 이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중재위원의 사안이해 정도에 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보다 중재위원들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응답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보다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경향이 높고, 결과 수용태도에 있어서도 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IV. 결 론

### 1. 연구의 함의

앞에서 여섯 영역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통해 「2003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조사」의 함의를 좀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면 다음의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언론중재제도의 취지와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강력한 중재제도에 대한 동의이다. 현재의 중재제도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최상의 결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하지만, 양측 모두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언론에 의한 피해를 입거나 혹은 피해당사자로부터 보도에 대한 항의를 접할 때 법원 소송에 앞서 언론중재제도를 거치는 것에 강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다. 또 이후에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같은 경우를 접하게 될 때 언론중재제도를 다시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위사람들에게도 소송에 의한 피해구제보다는 중재제도를 이용한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겠다는 응답결과는 23년 동안 개선과 발전을 거듭해온 우리나라의 언론중재 제도가 일반대중들에게나 언론인들에게 그 입지를 확실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중재심리결과를 토대로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중재제도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실제로 중재심리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중재제도 혹은 중재심리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커다란 시각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과연 중재제도가 어떻게 양측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단지 언론제도의 절차적, 혹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신청인과 합리적인 기사를 작성했다고 생각하는 언론인의 기본인식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문제인 것이다. 이렇

계 상대방의 의견을 배척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태도는 서로에게 불신만을 증가시키며 비록 제도적, 절차적으로 완전한 중재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양측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많은 제약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재위원회가 법적, 절차적으로 완벽한 중재제도를 확립하는 것과 더불어 중재심리 당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중재심리 분위기를 통해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가 상호 존중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한다. 또한 확실적인 규정과 제도의 적용보다는 개개의 중재사안에 알맞은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는 중재위원회의 경험이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다양한 중재제도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989년의 「언론중재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연구」와 1996년의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는 1989년의 「언론중재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연구」나 1996년의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의 후속연구는 아니지만 1996년 이후 중재제도이용에 관한 실제적인 연구가 없었음을 감안할 때 후속 연구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996년의 「이용만족도 연구」의 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일반적 평가나 중재제도의 필요성 그리고 잘못된 보도의 원인, 피해유형 등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더욱이 언론자유는 고양된 반면, 1996년의

조사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나라 언론환경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행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언론보도피해를 줄이기 위해 언론 스스로 실시했던 다양한 형태의 자율노력이 그다지 많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재처리과정과 중재위원들의 중재심리에 임하는 태도 등의 중재제도 운용과 관련된 세부항목에 있어서 현재의 조사와 유사한 결론들을 일부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96년의 「이용만족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일반적으로 느끼는 중재권한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96년의 조사결과에서는 중재위원들의 중재권한에 대한 물음에서 신청인의 47.6%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으며 피신청인도 41%의 응답자가 중재위원들의 중재권한에 대해 강력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직권중재제도가 정착된 현재에는 신청인의 43.6%, 피신청인의 42.3%가 중재위원의 직권중재권한이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또 1996년의 조사 당시와 비교하여 중재위원들의 중재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화했다는 평가도 언론중재제도의 변화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합의사안에 대한 불만족과 중재결과 이행태도에 대한 불만, 그리고 실질적 피해구제효과의 미약 등은 아직도 제도개선의 여지를 가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비점들은 1996년 이후 언론중재제도와 관련한 정기간행물법의 개정안이 논의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현재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이다.

1995년 정간법이 개정된 후 언론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장치로서 언론중재제도의 위상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본 「2003년 언론중재이용만족도 연구」는

1996년의 이용만족도 연구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확대를 통해 좀더 실제적인 의견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2003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연구」는 1996년의 이용만족도 조사에 비해 신청인 75명, 피신청인 16명이 조사대상인원에 추가되었으며 특히 언론에 의한 피해로 인해 중재제도나 우리나라 언론환경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신청인 응답자의 비율이 1996년의 「이용만족도 연구」에 비해 46.6% 증가함으로써 응답의 다양성과 신뢰성을 향상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수의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면대면 면접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피신청인의 의견을 집중 조사할 수 있었다.

둘째, 개량화 할 수 있는 형태의 설문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가능한 형태의 설문들을 배치하여 자칫 연구자의 의도대로 유도될 수 있는 질문의 형태를 줄였으며 개정논의중인 정간법개정안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는 간략한 설명을 설문 서두에 제시하여 응답자가 개정내용의 본질과 영향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중재제도 전반에 관한 평가와 함께 각 응답자의 차별적인 의견을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또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 언론중재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셋째, 1996년의 이용만족도 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중재제도에 대한 평가의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언론환경, 중재제도에 대한 평가, 개정된 정간법 관련 사안 등 연구의 각 분야에 대해 1996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고,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교평가를 통해 기술함으로써 1995년 이후 개정된 중재

제도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와 인식의 변화 등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절차상의 표본 집단선정과 접근의 어려움에 의한 표본수의 제약과 설문회수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조사대상이었던 2000년-2003년의 중재제도 이용자들 중에서 이직이나 퇴사 또는 거주지 이전 등으로 주소와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우편설문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런 이유로 실제적인 연구는 중재제도를 이용했던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중에서 주소와 연락처가 확실하고 설문에 강한 의지를 보인 572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 주소가 확인된 경우라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전체 설문의 20% 정도를 차지해서 연구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 언론중재심리에서 합의를 이룬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신청인, 피신청인별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얻어내지 못했다.

### 3. 제 언

결과적으로, 위에서 밝힌 대로 언론에 피해를 입은 일반인과 언론 사이에는 한국 언론문제인식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들은 한국 언론의 문제점이자 개선점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각각의 문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언론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한국 언론의 위상을 재정립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이 조사결과를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대부분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언론중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수의 신청인, 피신청인들이 언론중재제도가 불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언론중재제도 자체의 유용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구제로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언론의 통제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좀더 효과적인 피해구제수단으로서의 중재제도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중재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본 연구에서 얻어진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반론보도청구권의 효력강화

1995년 개정된 정간법에서 반론보도권과 정정보도권의 용어정리가 이루어진 이후 현재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반론보도권과 정정보도권의 차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의 반론보도권에 대해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하지만 반론보도의 성격이 단지 당사자의 반론을 게재하는 것에 불과해서 실제적인 피해구제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이 항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반론보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중재해결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새로운 중재결정유형이 이전의 정정보도와 같은 정도의 시정조치를 요구하게 될 경우, 이 조치에 대해 언론은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 오히려 피해구제 효과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언론의 중재결정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피해구제효과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중재해결유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 2) 중재신청제도의 간소화

다음으로 중재제도가 효과적인 피해구제수

단이 되기 위해서는 언론피해 당사자가 언론중재위원회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재제도 이용자들이 언론중재위원회와 관련하여 개선을 희망하는 가장 큰 부분은 중재신청서 작성의 어려움이었다. 신청인들의 지적사항은 크게 중재신청서 양식기입의 어려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재신청서 요구되는 증빙자료(보도본문)에 관한 것들이었다. 먼저 중재신청서 작성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일반인은 익숙하지 않은 형식의 중재신청서 작성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재신청인의 중재제도의 이용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중재신청 작성에 필요한 예문이나 사례표본을 비치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재신청과 관련된 다른 하나의 불편은 중재신청서 작성시 첨부되어야 하는 증빙자료를 중재신청자가 준비하도록 하는 현 제도에 관련된 것으로서 특히 인쇄매체가 아닌 방송매체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자료의 복사본 제출을 중재신청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피해당사자의 중재제도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물론 중재심리를 위해서는 실제적인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중재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언론을 상대로 피해증거를 수집하게 하기 보다는 언론피해자의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언론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 3)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강화

올해로 설립 23제를 맞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역할과 필요성으로 인해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기구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와는 별도로 중재제도를 이용했던 경험자들은 언론중재위원회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상임 중재위원의 필요성이다.

현재의 중재위원들은 중재심리가 있을 경우에만 심리에 참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중재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 일부 중재위원들의 사안 미숙지로 인해 중재가 불성립되었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감안할 때 전문성을 가진 상임 중재위원이 지속적으로 중재심리를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인 중재제도의 운영과 중재제도의 위상확립을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신청인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주변사람들'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는 1996년의 이용만족도 조사결과와 대비되는데 1996년의 조사에서는 TV광고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를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런 결과 차이는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의 홍보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중재제도의 개선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홍보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인지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의 특성은 과급속도나 과장이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비해 크며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매체접근권이 제한된 일반인이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구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재제도를 이용한다고 해도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가 완전히 구제되는 것은 아닌 만큼 피해당사자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언론도 자신들의 보도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시간적,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런 양측의 불편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 문제보도에 대한 신청인의 항의접촉 때나 중재신청 후 신청인과의 접촉을 통해 언론사가 신청인의 요구에 대한 수용 입장을 보인다면 중재심리나 소송에 의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사전에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

# 언론피해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

윤 경  
춘천지법 부장판사

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대국민홍보를 목적으로 지난 11월 14일 강원 춘천에서 지역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의 인사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춘천 베어스타운호텔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윤경 위원의 주제발표와 이관열 위원(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주제발표논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주

언론매체의 취재·보도 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당하였거나 당할 염려가 있는 피해자가 언론매체(및 그 종사원)를 상대로 민사상의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통칭하여 언론소송이라 한다.

통신 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언론매체는 거대화, 광역화되어 가면서 잘못된 언론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은 그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는 매우 빠르고 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피해의 신속성·광범성·치명성).

표현의 자유는 자기의 사상을 제한 없이 세상에 드러내고 그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들과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개인의 지고한 인격과 가치를 사회 속에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고, 또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로 인하여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그로 인하여 희생당

할 수 있는 인격권 등 개인적 권리의 보호, 그 양자간의 조화점을 찾는 일이 언론소송의 핵심이다.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衡量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88. 10. 11. 85다카29 판결).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 등 원상회복청구, 법규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지청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방송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 등이 있다.

프라이버시침해와 초상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학설·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지청구 등이 있다.

언론소송에서의 주된 청구원인은 피해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취재 기자 등의 고의나 과실로 이루어졌다는 것, 언론보도가 위법이라

는 것, 언론보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언론보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엔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된 항변은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다는 것이고,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본안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 인용 주문은 보통 금원지급 부분(위자료, 재산상 손해)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 그리고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밖에 금지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이 있을 수 있다.

○본안소송에서의 구제수단 [손해배상 +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정정보도)]

언론 사건에서도 재산상 손해는 일반 민사 사건에서와 같이 언론 보도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범위의 손해에 한정된다.

민법 제751조는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 동안의 실무와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언론 사건에서 손해액의 증점은 위자료에 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법 제764조).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및 금전적 평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고 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불충분, 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결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상회복 처분을 명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형식의 원상회복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정정보도'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보도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허위사실의 보도)이 있었음을 알리고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를 같은 보도매체 혹은 다른 언론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알리고 이로써 명예 회복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무에서는 정정보도문 가운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판결의 요지까지 아울러 게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정정보도문의 게재의무는 원칙으로 출판물 등의 발행인과 방송사업자만이 부담한다. 취재기자나 편집인 등은 이러한 의무가 없다.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할 때에는 그 시기를 정해야 하는데, 명예회복을 구하는 경우 실무례는 대체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에 게재하도록 명한다.

정정보도문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도 매체를 통하여 게재하거나 방송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목, 본문의 활자체와 활자의 크기, 게재할 면과 위치, 방송할 시간대와 위치도 특정해 주어야 하는데, 반드시 원래 보도위치나 게재 면 등에 구속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원칙상 법원은 정정보도문의 내용이나 게재 위치, 방송 시간대 등을 청구한 것보다 무겁게 변경할 수는 없다.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하는 것은 부대체적 작위 의무를 명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 의무 이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해 놓은 방법이 간접강제이다(민사집행법 제261조). 다만 간접강제는 실제로는 강제집행이기 때문에 그 실행을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판결확정 후에 정정보도를 명할 경우에만 간접강제 주문을 붙일 수 있다.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권은 통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행사될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발생 또는 확대의 사전예방이라는 청구권의 성격상 오히려 가처분절차에 의함이 일반적이다.

민법 제764조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은 독자적으로 혹은 손해배상과 함께 명하여질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피해자 구제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정정보도청구 등)을 배합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신청사건에서의 구제수단 (=금지청구)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권은 통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행사될 수도 있으나, 피해발생 또는 확대의 사전예방이라는 청구권의 성격상 오히려 가처분 절차에 의함이 일반적이다.

명예 기타 인격권들은 한번 침해되고 나면 완전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 구제보다는 그 침해의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과거 침해행위가 있었고 앞으로 그 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 역시 금지하는 것이 권리구제의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다. 반면, 언론보도나 출판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금지청구를 전반적으로 인정해 버린다면 이는 사전 억제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언론, 출판의 자유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고 위헌 시비가 일 수 있다. 특히 방영금지가처분의 경우 현재 헌법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언론의 사전검열금지와 관련하여 그 위헌성 여부가 실무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학설과 실무에서는 대체로 합헌이라고 보는 것 같다(헌법재판소 1999. 9. 16.자 99헌가1 결정, 1998. 12. 24.자 96헌가23결정 등 참조).

이러한 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데다가, 금지청구에 대한 헌법상의 사전억제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신중하게 심리, 판단되어야 한다.

○특별법에 의한 구제수단 (반론보도심판청구, 추후보도심판청구)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에 관하여는 필요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하며, 가처분 사건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를 본안으로 삼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사건은 신청사건에 준하여 처리된다.

반론보도청구권은 법이 규정한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언론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을 가지는 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반론보도 의무자에게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요청함으로써 족하고 당해 언론사는 원문보도의 진위 여부나 청구자의 구체적인 손해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응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나 법원의 심판절차에서도 이러한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이 심리의 대상이 될 뿐이다.

정간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협의를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방송법은 이 규정을 각 준용하고 있다(방송법 제91조 제8항).

추후보도청구권은 언론의 범죄 피의사실 보도로 인하여 침해된 피의자의 인격권을 구제한다는 목적 아래 인정되는 특수한 유형의 반론권으로 이해되며, 이와 유사한 절차로서 형사보상법에서도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미결구금에 대하여 금전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외에 그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신청에 의하여 신청인이 선택하는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1회씩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결정의 공시제도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자신에 관한 기사가 실렸던 모든 매체에 대하여 기사로서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음을 공표하여 줄 것을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과는 그 게재방법과 효과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

# 토 론

사회이 관 열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회자 :** 언론소송 전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 유용한 판례까지 소개해 주신 윤경 발표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참석자 여러분들께서 토론주제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제도 전반에 대해 기탄 없이 의견이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용(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최근 공인에 의한 언론소송의 증가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만일 공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용한다면 이는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의 입장에서 대단히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발표자 :** 주제발표에 언급된 언론소송의 요건 사실들은 공·사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는 '현실적 악의의 법리'가 발달하여 공인이나 사인이냐에 따라 요건사실과 입증책임소재를 달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사인이 아닌 공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보호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간의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보다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미국에서와 같이 공인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수준의 것은 아니더라도 공인의 소송사건과 사인의 소송사건, 그리고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각각 다르게 취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태도가 질문

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흥성(GTB 보도국장) :** 중앙 언론사는 재정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거나 법무보험에 가입하는 등 여러 가지 소송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지역언론의 경우는 이 같은 예방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데스크가 법률적인 게이트키퍼까지 담당해야 하는데 데스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열악한 지역언론의 처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발표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방송과 관련된 인격권 침해 중 음성권이 방송현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큰 문제 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사안에 대해 보도하면서 취재기자가 반론기회를 주기 위해 당사자에게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상대가 이를 거부한 경우, 방송사는 부득이하게 음성을 몰래 녹음해 내보내기도 합니다. 이 때 상대가 음성권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올 경우 공익적 목적의 보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발표자 :**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의 말을 비밀 녹음하거나, 이를 언론매체에 공개하는 행위는 일단 위법성을 추정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단속장면을 보도하면서 당사자가 취재거부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음성변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낸 경우 음성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몰래 녹음' 관행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특징이 중요합니다.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화면상 당사자를 철저히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변조를

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정원(원주MBC 방송제작국장) :** 원주 MBC에서는 얼마 전 자체 뉴스프로그램에서 도로상의 건물들이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배경화면에 나온 여러 건물들 중 한 건물의 임대업자가 이 보도로 인해 분양이 더 안 된다며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로를 지나는 다중을 촬영해 보도한 것에 대해 그들 중 한 사람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의 사례에 있어 민원인의 법익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발표자 :** 초상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정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개괄적으로 비춘 정도를 넘어 그를 부각시키면서 부정적인 기사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내용으로만 판단컨대, 민원인의 경우, 분양이 되지 않아 입게 된 손해가 그 보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도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영(강원일보 기자) :** 피해자 특정의 문제에 있어서 판례는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 알아차릴 수 있는 주체가 피해자 주변의 특정 집단에 한정된 경우에도 '피해자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표자 :**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다수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으며 다수인이면 불특정인인건 특정인인건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해

자 주변의 특정집단이라 하더라도 그 특정집단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갖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영식(강릉MBC 보도부장) :** 강릉MBC는 자체 뉴스 시간에 불량 하수관 납품 업체에 대해 보도하면서 업체의 잘못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조달청을 묶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달청이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조달청 측의 인터뷰를 추후보도 형식으로 게재했습니다. 언론사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이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남용하는 경우, 공적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할 언론사로서는 위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발표자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발표자 :** 언론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담당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양자간의 조화는 법원이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법원의 입장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취재와 보도를 함에 있어 자기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자율적인 정화기능을 다한다면 법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주제발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법원은 공적인 존재 혹은 공공적 성격을 띠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에게 위법성 조각사유를 보다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판결 흐름도 최근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편으로 볼 때, 법원이 향후 언론 관련 소송에서 어떠한 판례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언론사의 노력 여하에 달린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명균(강원도민일보 편집국장) :** 최근 들어 법원의 판례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을 들으니 언론 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밝혔

듯이 지역언론의 경우, 보도내용의 인격권 침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언론은 이에 대해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일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일단 중재를 거치도록 한다면 지역언론으로서는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발표자** : 언론분쟁과 관련하여 법원에 일단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양측이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소송결과, 어느 쪽이 이기게 되든 상당한 피해를 입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소송전치절차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언론분쟁을 일괄적으로 관할하게 된다면 그 완충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입법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흥성(GTB 보도국장)** : 앞서 논의된 것과 같이 지역언론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법률적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서 앞으로 중재위원회가 신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언론피해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알 권리와 개인법익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정규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사무총장** : 이미 위원회는 개별 언론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종 특강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위원회는 오래 전부터 언론피해와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상담기능을 갖춘 언론피해상담센터를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예방교육을 그 주요한 기능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바에 의하면 센터에서는 신입이나 경력기자뿐만 아니라 데스크를 상대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사건을 사례별로 소개하고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처방안에 대해 교육할 예정입니다. 향후 위원회는 센터 관련 예산이 확정된다면 지방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언론인 교육을 보다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자** : 열띤 토론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고 끝으로 위원장의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어렵게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또 우리나라 판례와 미국의 판례를 상세히 비교해 가면서 언론소송의 전반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해주신 발표자와 활발하고도 열띤 토론을 이끌어 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사회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 중 질의에 대해서는 발표자가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셨기에 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첨언하는 것으로 제 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현행 정간법상 반론보도청구는 중재위원회를 필요적 전치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정보도청구의 경우는 임의적 전치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임의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위원회를 대부분 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는 위원회가 관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곧바로 법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이미 1998년부터 학계와 언론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위원회의 중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소관 부처 및 입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정간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정간법 개정안이 '편집권의 독립',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와 같이 여·야간 입장을 달리하는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장시간 심도 깊은 토론을 이끌어 주신 발표자님과 사회자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 해외시찰 보고서

- 미국·일본 신문사의 옴부즈맨제도를 중심으로 -

권 오 근  
심의2팀 차장

## I. 들어가는 말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내 언론사의 양적 팽창은 언론사간의 치열한 생존경쟁을 가져왔고, 이러한 경쟁 속에서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자 또한 자연스레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언론소송 또한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민사부는 기존의 민사 25부외에도 추가로 언론전담재판부(민사 26부)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언론소송의 증가현상의 원인으로서는 첫째, 우리나라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오면서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법의식이 크게 신장되어 국민 스스로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둘째,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 못지 않게 언론의 책임도 증시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각급 법원들은 최근 들어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피고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고액화 하는 추세에 있다. 소송의 증가 및 손해배상액의 고액화 현상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언론사의 명예실

추 또한 두말할 나위 없이 막대하다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최근의 경향들은 언론현업에 종사하는 기자들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가져와 취재·보도과정에 있어 심각한 위축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금번 해외시찰 중 접견한 미국 MLRC(Media Law Resource Center)<sup>1)</sup>의 데이빗 헤러(David Heller) 상근 변호사는 “명예훼손소송의 70%가 매스미디어와 관련된 것이며, 이 가운데 최소 3분의 2가 신문사와 관련된 것이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문제들이 언론인의 가장 큰 고민이고 관심사항”이며 “명예훼손소송으로 인한 미국 언론의 위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으로서 미국의 신문, 방송, 잡지 등 미디어 전반에는 이른바 ‘방어 저널리즘(defensive journalism)’이 정착돼 가고 있다”고 미국 언론소송의 현실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언론소송의 위축효과는 우리와 유사한 명예훼손 법체계를 갖춘 일본은 물론이고, 언론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이번 해외시찰은 불필요한 소송을 사전 예방하고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1) 1980년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ABC, NBC, AP 등 미국 굴지의 언론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비영리 자료센터로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그리고 관련 법률분야에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신장하고 그 전개상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언론사들에 의해 조직된 일종의 정보교환소(Information Clearinghouse).



해 외국의 언론사의 경우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었다. 심도 있는 조사를 토대로 한 실질적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외국의 언론사 방문 및 조사가 이뤄져야 했으나 짧은 시찰 일정으로 인해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와 일본의 아사히신문, 두 일간지만을 탐방할 수밖에 없었기에 이번 시찰보고서는 미국, 일본의 유력 일간지 및 한국의 일부 언론사에서 시행 중인 자체 '옴부즈맨제도'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각 국 언론사의 옴부즈맨 운용실태에 대한 비교분석은 사실상 어려웠기에 두 일간지의 기타 언론사에 대해서는 단순소개에 그쳤다는 점을 밝혀둔다.

## II. 언론옴부즈맨제도의 개념과 기능

'옴부즈맨'(Ombudsman)이란 용어는 본래 스웨덴에서 '대리자'(Representative)라는 행정상의 개념으로 시작되었다. 의회 옴부즈맨제도의 목적은 부당한 행정권이나 행정권남용에서 비롯된 국민의 불평, 불만의 처리와 구제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스웨덴의 의회 옴부즈맨제도는 미국의 언론분야에 처음으로 수용되어, 언론활동을 감시하고 수용자의 불만과 의견을 접수하여 그 결과를 언론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발전하게 되었다.<sup>2)</sup> 이후 세계 각 국의 우수 권위자들이 이 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언론제도가 각 국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역사적·문화적 영향력을 받는 것처럼 언론 옴부즈맨제도 또한 세계적인 전형이나 기준은 없고 각 국의 실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

기는 하지만 언론 옴부즈맨제도의 형태를 나누어 본다면 언론사 외부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옴부즈맨이 시민과 언론사 사이를 조정해 주는 외부형과 언론사 사장이나 편집책임자에 의해 임명된 옴부즈맨이 시민의 불만과 고충을 처리해 주는 내부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 III. 미국의 현황

1960년대 미국 언론계는 신문사간 과열경쟁에 의한 무책임한 기사의 남발과 월남전쟁, 반전운동, 인권문제 등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 태도 등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감이 고조된 때였다. 이에 미국 신문사들은 독자들의 불만해소와 피해구제의 수단으로 스웨덴의 의회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의 신문 옴부즈맨제도는 스웨덴의 신문 옴부즈맨제도보다 2년 앞선 1967년에 루이빌에 있는 쿠리어 저널(Courier-Journal)이 최초로 신문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후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 LA 타임스, 시카고 트리뷴, 밀워키 저널, 애리조나 스타 등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동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재 미국 내 30여 개 언론사들이 언론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자담당제나 독자대표제로 불리는 언론 옴부즈맨 제도는 독자들을 위한 의견의 출구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자들의 직무방식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신문사 중에서 발행부수가 5만여 부 미만인 84%에 해당하는 신문사들 대부분은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대형 신문사의 절반 정도만이 이 제도를 운영하

2) 강상현, "언론 옴부즈맨제도 도입", 『신문과 방송』, 1993년 12월호, 19면.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로는 대다수의 신문사들이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는 것보다 신규 기자를 충원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가지 예로 160만 부의 발행부수를 가진 USA 투데이는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데, 이는 USA 투데이가 이러한 옴부즈맨 제도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신문의 특성상 기자 충원에 더 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여유 있는 재정 확보와 경영진 혹은 편집고위층의 이해 없이는 옴부즈맨채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sup>3)</sup>

미국의 옴부즈맨들은 대부분 실무경험이 풍부한 언론계 출신이며 자사출신뿐 아니라 다른 언론사 출신을 기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옴부즈맨의 임명권은 발행인 임명이 40%, 편집책임자 임명이 60%정도이다.

언론 옴부즈맨제도에 관한 최초의 연구자라 할 수 있는 바네트(W. L. Barnett)는 옴부즈맨제도의 본질과 영역에 대해 “옴부즈맨은 언론에 대한 독자불만의 통로이고, 독자불평의 수렴자 또는 조사자이며, 자율적인 내부 비평가”라고 정의 내린 바 있다.

미국에서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들은 이러한 지향점을 벗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개별 신문사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 1. 큐리어 저널(Courier-Journal)의 옴부즈맨

세계에서 언론 옴부즈맨제도를 가장 먼저 실

시한 큐리어 저널사의 옴부즈맨은 자사의 오보 또는 독자의 불만 등에 대한 처리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①독자로부터 신문에 대한 불평불만을 듣고 이에 대한 해명 또는 설명, ②오보 또는 보도윤리에 벗어났다고 인정될 경우, 자사의 과오를 시인하고 그에 대한 정정문 또는 사과문 게재, ③독자들로부터 접수된 사항들의 처리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한편, 편집국에 게시, ④기자 개개인의 오류를 조사하여 통계적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인사과에 반영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워싱턴 포스트의 옴부즈맨

1970년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워싱턴 포스트가 옴부즈맨 제도를 채택하였다. 워싱턴 포스트의 옴부즈맨은 신문의 공적 임무수행을 위한 내부비평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내부비평 기능과 관련한 대표적인 예로는 워싱턴 포스트의 ‘지미의 세계’(Jimmy’s World)라는 기사날조 사건<sup>4)</sup>을 들 수 있다.

당시 이 신문의 옴부즈맨이었던 빌 그린(Bill Green)은 이 기사가 너무 상세하고 실감나게 묘사된 점을 이상하게 여겨, 사내 기자와 간부 등 47명을 끈질기게 조사한 결과, 날조기 사임을 밝혀냈다. 이후 워싱턴 포스트는 빌 그린의 내부 비평보고서를 토대로 1981년 4월 19일자에 ‘자네트의 세계’(Janet’s World)라는 대대적인 정정 기사를 게재했다.

지금까지 옴부즈맨으로는 벤 바그디키안(Ben Bagdikian), 리처드 하우드(Richard

3) 안광식, “옴부즈맨제도의 기능과 역할”, 『언론중재』 1999년 봄호, 21면.

4) 워싱턴 포스트는 1980년 9월 28일 자네트 쿡(Janet Cooke)기자의 ‘지미의 세계’라는 기획 기사를 5개 면에 걸쳐 게재하였다. 이 기사는 지미라는 8세 소년이 코카인에 중독되어 가는 과정을 묘사한 기획물이었다.



Harwood), 제네바 오버홀저(Geneva Overholser), 빌 그린(Bill Green), 마이클 게틀러(Michael Getler)와 같은 저명한 인물들이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현재 워싱턴 포스트의 옴부즈맨은 독자들로부터 하루 평균 전화로 100여 건, 전자우편으로 수십건 정도의 불평불만을 접수한다. 이러한 접수결과를 근거로 옴부즈맨은 매일매일 내부 메모를 작성한 후, 사내 회람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와 정정기사의 게재를 제안하며, 내부 비평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정 칼럼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발표한다. 이 경우 신문사는 옴부즈맨 견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 옴부즈맨은 신문기사에 등장한 인물들에게 해당기사의 사본을 보내 기사의 정확성, 균형성, 공정성 등에 관해 직접 의견을 묻기도 하여, 신문사측의 윤리성을 높이기도 하며 독자들이 보내 오는 비판이나 불평을 독자의 양해를 얻어 칼럼에 취급하기도 한다.

금번 시찰에서 만나본 현재의 옴부즈맨 게틀러 씨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26년 간 근무했으며, 4년 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의 편집국장을 지낸 뒤, 워싱턴 포스트의 12번째 옴부즈맨으로 복귀했다. 65세를 맞아 공식적으로 은퇴한 그는 2년 계약으로 옴부즈맨을 계속하고 있다.

게틀러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가장 엄격한 옴부즈맨으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에는 금요일마다 '옴부즈맨 메모'가 전달된다. 마이클 게틀러가 지적한 기자들의 잘못과 성과를 평가한 것이다.

게틀러는 "옴부즈맨은 신문을 정독한 후 편집자나 기자와 토론을 하고 관련 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오류와 문제점을 모아 정기적인 메모형식으로 신문사 경영진과 기자에게 공지하고, 일반적으로 공중의 관심이 높은 주제나 전화가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일요일 자 사설면 칼럼에 게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독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맨의 자율성 내지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이러한 자율적인 옴부즈맨의 전형이다"라며 "옴부즈맨은 고용인으로서가 아니라 2년 계약에 의한 독립인으로 활동하며, 소유주나 경영진으로부터 어떠한 요구나 피드백도 받지 않으며 옴부즈맨의 기사가 지면에 게재되기 전에 사전 검열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옴부즈맨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또한 "옴부즈맨은 오보로 인한 법적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문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를 높이며, 보도에 신중을 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많은 신문사들이 옴부즈맨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취재에도 부족한 예산을 옴부즈맨 운영에 쓸 수 없으며, 편집자가 옴부즈맨의 역할을 수행하고, 신문사의 봉급을 받는 옴부즈맨의 공정한 역할 수행에 의문을 품는데 그 원인이 있었지만 지난 7월 뉴욕타임즈의 기사 표절·조작사건<sup>5)</sup>으로 점차 옴부즈맨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기자·편집자들이 독자의 불만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찾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데 옴부즈맨의 절대적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역설했다.

5) 제이슨 블래어 기자가 최소한 36건의 기사에서 취재원의 말을 꾸며내거나 다른 신문기사를 표절하는등의 행위로 독자들을 기만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뉴욕타임즈의 편집인과 편집국장이 모두 사임했다.

### 3. 시카고 트리뷴의 공익편집인제도

시카고 트리뷴은 공익편집인(Public Edito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편집인은 기사정정 요청을 다루거나 편집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신문 제작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다양한 실수들을 줄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독자들의 불만사항을 중재하거나 독자와 관련된 신문사의 기본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 4. 애리조나 리퍼블릭의 독자담당제도

애리조나 리퍼블릭은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독자 담당제도를 운영한다. 독자 담당자는 신문사 내부의 비판자로서의 역할보다 지역 사회와 편집국을 연결하는 매개자로 활동한다.

그 밖의 대부분의 신문에서 채택하고 있는 옴부즈맨제도도 앞에서 언급한 몇몇 언론사들의 옴부즈맨제도와 그 기능이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결국 미국신문에서 옴부즈맨의 역할은 독자들의 불만을 접수하여 편지나 전화 또는 지면을 통해 응답해 주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독자들의 불만을 신문사 경영진이나 편집진에게 전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신문내용에 대한 비판을 고정칼럼을 통해 독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미국 옴부즈맨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편집진에서 옴부즈맨의 비판에 상당히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취한다는데 있다. 톰 윌킨슨(Tom Wilkinson)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장의 “옴부즈맨의 활동은 가치 있다고 본다.

독자들의 지적은 신문사에 있어 유용한 정보다. 신랄한 비판과 건설적 비판은 신문사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는 견해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IV. 일본의 현황

일본의 경우, 1922년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이 독자의 고충이나 항의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목적으로 ‘기사심사부’라는 최초의 지면심사기구를 설치하면서 실질적인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옴부즈맨 제도로 평가받는 기구는 1989년 초 ‘산호초 허위보도 사건<sup>6)</sup>’을 계기로 설치된 아사히신문의 ‘지면심사위원회’라 할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의 경우에도 사장직속기관으로 ‘신문감사위원회’를 두어 신문내용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제시하고 독자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옴부즈맨 제도의 조기 도입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 아직까지는 신문과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지 못하고, 실제 심사가 이뤄지는 건수도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심사된 내용의 불충분한 지면공개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어 제도의 정착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1. 아사히 ‘지면심사위원회’

‘지면심사위원회’는 ‘산호초 사진 날조사건’ 이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면심사위는 대라다 전 최고재정장관, 하시

6) 아사히신문 소속의 한 카메라기자가 바다속의 산호초에 자신이 직접 ‘K.Y.’라는 두 글자를 크게 새겨 놓고 이것이 마치 부도덕한 사람들에 의한 자연훼손인 양 조작, 이를 촬영·보도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



모토 공동통신사 상무이사, 그리고 모르즈미 전원개발회사 총재 등 4인의 사외인사로 구성되어 한 달에 한 번 심의한다.

시찰단이 만나본 쓰야마 쇼에이(津山昭英) 사무국장은 “지면심사위는 기사의 허위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기사의 내용이나 표제 등을 포함한 지면편집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연구·검토하고, 기사가 어느 한 방향으로 편중되었다든지, 너무 잔인하다든지, 정보가 빈약하다든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전반적인 보도방향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지면심사위원회’의 역할은 기사내용에 대한 독자들의 불평·불만을 접수하여 편집진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순수한 언론 옴부즈맨 제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제도로서 사외이사의 자율적 기사심의체제로 보인다.

## 2. 아사히 ‘보도와 인권위원회’

아사히신문은 2001년 1월, ‘보도와 인권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독자창구인 광보실<sup>7)</sup>의 고충처리와 대응 등의 절차와 더불어 사외위원의 눈으로 공정하게 판단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갖게 하는 것으로, 기사나 사진 등에 의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 등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 해결에 주안을 두고 있고, 보도와 인권을 둘러싼 현상과 과제에 관련해서도 폭넓게 논의한다.

인권침해구제 신청은 피해당사자라면 누구든 할 수 있지만, 정당인, 공무원 등 공인과 기업, 단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접수받지 않으며,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과 사법부에서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건에 대해서도 취급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독자들의 고충에 대한 아사히신문의 대응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기사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호소해오는 경우 수시로 소집되고, 2개월에 한번 정례회의를 통해 광보실과의 회의에서 해결한 케이스 등에 대해서도 보고 받는다.

쓰야마 사무국장에 따르면 “도쿄, 오사카 등 전국 4개의 본사에는 독자로부터 연간 20만 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의견과 고충에 대한 건수는 전체의 약 20%이며 이중 본격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소수에 그친다”고 한다. 그는 또 “독자의 고충처리는 기본적으로 광보실이 성실, 신속하게 대응하여 해결을 도모하고 광보실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편지 등의 서면으로 위원회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며 “3인의 위원 중 1인이더라도 ‘필요 있음’의 판단을 하면 조사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조사결과, 신문사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위원회는 해결책으로 「사과문」, 「정정문」, 「문제된 보도의 검증기사」 등을 전재해야 한다는 ‘견해’를 신문사측에 제시한다. 위원회의 판단은 다수결로 이뤄지고 소수의견도 지면에 게재한다. 신문사는 위원회의 ‘견해’를 가능한 한 존중하고 반론을 포함해서 신문사의 입장을 동시에 공표하기도 한다.

위원은 오노 마사오(大野政男) 전 최고재판소 판사, 하마다 준이치(浜田純一) 도쿄대학교수, 하라 도시오(原壽雄) 전 교도통신 편집주간 등 사외인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위원회에 대한 이들 위원의 입장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7) 동경, 오오사카, 큐슈, 나고야 등의 4개 본사와 홋카이도 지사에 있고, 직원은 약 50인 정도, 이들에게 고충을 호소하는 건은 연간 20만건에 이르고 있음.

오노 마사오(大野政男) 위원 : 언론은 권력 기관과 강자로부터 약자인 민중을 지켜주는 최대의 무기가 되는 한편, 민중에 대해서는 권력자가 되기도 한다. 정부가 숨기고 있는 정보를 폭로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공고히 해야 하는 동시에 보도로 인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배려도 필요하다. 언론인의 위대함에 대한 척도는 양자사이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있다.

위원회는 그 양면을 고려하면서 피해구제를 할 것이다. 이 제도의 장점은 사실관계를 간단히 조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진위여부를 파악하는데 있어 법원의 재판보다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마다 준이치(浜田純一) 위원 : 미디어의 인권침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전보다 매체수가 증가되고, 취재와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국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 최근 인권보호가 강조되고,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의견은 들리지 않고 있다. 미디어가 위축되고 본래 보도해야만 하는 것까지 억제되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언론사는 위원회와 같은 내부점검기관을 설치해서 전문가와 독자의 의견을 듣고, 각 사의 생각을 진술하며, 그러한 논의사항을 지면에 공개하는 노력 등을 통해 인권과 언론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 해야 한다. 인권침해문제 해결을 위해 권위 있는 제3자 기관이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사법부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문제를 일률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보도로 인한 다툼은 자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언론사가 자신의 기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추가 기사를 게재할 경우, 피해구제가 이뤄지게 되고 독자의 알권리충족에도 부응한다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피해자

의 인권구제와 언론의 자유는 둘 다 소중한 가치가 있기에 대립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하라 도시오(原壽雄)위원 : 전후 50여 년 간, 언론이 인권옹호에 노력해 온 공적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지만 유감스럽게도 언론의 뿌리 깊은 선정적 보도경쟁으로 피의자, 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는 심각해지고 있다. 고베, 교토의 아동살해사건과 와카야마 카레 사건 등에서 보인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에 대해 사회적 비판은 신랄했고, 그러한 보도에 대한 취재방법에 대해서도 시민의 판단은 엄격했다. 아사히는 인권배려 면에 있어서 선두집단이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 옴부즈맨 같은 제3자에 의한 점검기관을 도입하거나 독자, 시민, 미디어가 공동 참여하는 보도평의회 같은 기관도 검토되어야 한다. '제4의 권력'이라고 불리는 언론과 약자인 개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의논이 돼야 한다.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그 균형점을 찾아나갈 것이다.

### 3. 아사히 '사건보도 소위원회'

인권을 최대한 배려한 보도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건보도 방법을 연구하는 사내조직이다. 89년 설립 이래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리포트를 정리하고 보고하고 있다. 지난 봄 사내 사건보도 지침인 '사건보도의 취급'을 3년 만에 전면 개정한 바 있다.

### 4. 마이니치 '열린신문위원회'

마이니치신문의 '열린신문위원회'는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 나카보 고헤이(中坊公



平), 텔레비전 프로듀서 요시나가 하루코(吉永春子), 논픽션 작가이자 평론가 야나기다 쿠니오(柳田邦男), 프리랜서 기자 다마키 아키라(玉木章), 조치(上智)대 교수 다지마 야스히코(田島泰彦) 등 5인으로 구성돼 있다.

마이니치신문 사무국은 한 달에 한 번씩 독자로부터의 고충이나 의견 그리고 신문사의 대응전반을 정리하여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위원들은 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의 고충이나 의견에 대한 신문사의 대응을 체크하여 의견을 진술, ②당사자의 고충 표명이 없는 경우라도 위원들이 지면에 문체에 있다고 생각되는 때는 의견을 제시, ③차후 신문의 바람직한 모습을 전망하여 더욱 양질의 보도를 위한 제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5. 도쿄신문의 '신문보도의 바람직한 상 위원회'

도쿄신문은 2001년 1월 '신문 보도의 바람직한 상 위원회'를 설치했다. 아오키 아키라(青木彰) 쓰쿠바대학 명예교수, 가와이 하야오(河合準雄)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소장, 저널리스트 노나카 토모요(野中ともよ), 변호사 다나카 사나에(田中早苗) 등 4명의 위원이 신문의 기사 외에 독자의 의견, 고충 및 그 대응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이를 지면에 소개한다.

### 6. 시모쓰케신문의 '시모쓰케 독자 간담회'

시모쓰케(下野)신문(도치기현 소재)이 2000년 11월 '시모쓰케신문 독자 간담회'를 창설했다. 이를 통해 현 내의 독자대표 5명과 편집간부가 연 3회 의견을 교환한다.

니가타(新潟)일보(니가타현 소재)도 2001년 1월, 현내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8인의 위원

으로 '독자·지면 위원회'를 설립하여, 연간 3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신문협회에 의하면 이 외에도 몇몇 지방지가 이와 같은 자율적인 기관의 창설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다음은 일본 신문사들의 자율규제 노력의 일환 중 하나인 일본신문협회의 '일본신문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국내 신문사들의 자체 '신문윤리강령' 및 한국신문협회 등의 신문윤리강령 등의 비교·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신문윤리강령◇ - 2000년 6월 21일 -

-자유와 책임 :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신문은 보도·논평의 완전한 자유를 갖는다. 그 만큼 이를 행사하는데 있어 무거운 책임을 자각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해야만 한다.

-정확과 공정 : 신문은 역사의 기록자이며 기자의 임무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다. 보도는 정확하고 공정해야 하며 기자 개인의 입장과 신조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논평은 세상에 아첨하지 않고 소신으로 일관해야 한다.

-독립과 관용 : 신문은 공정한 언론을 위해 독립을 확보한다. 모든 세력으로부터 간섭을 배제하고 이용당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일깨워야 한다. 한편 신문은 자신과 다른 의견일지라도 정확,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기꺼이 지면을 할애한다.

-인권의 존중 : 신문은 인간의 존엄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개인의 명예를 소중히 하며 프라이버시를 배려한다. 오보를 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정정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인격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품격과 절도 : 공공적, 문화적 사명을 다해야 할 신문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기사나 광고에도 표현에는 품격의 유지가 필요하며 판매에 있어서는 절도와 양식을 갖고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

## V. 한국의 현황

19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의 언론환경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증면경쟁이었고, 증면에 따른 지면편집형태의 변화로 독자의 제작참여 폭을 넓혀 독자·여론관을 확대하거나 고정화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언론계는 점차 신문마다 '수용자 주권 제고 및 참여기회 확대'를 내세우면서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거나 독자모니터제 혹은 독자상담전화제 등을 경쟁적으로 실시, 운영하게 되었다.

조선일보가 1993년 3월 19일 '옴부즈맨 전화'를 설치, 운영하였고 이후 일부 언론사들이 '독자고충처리센터'와 같은 유사형태의 옴부즈맨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 1. 동아일보의 '독자인권위원회'

동아일보는 지난해 4월 '독자인권위원회'(Press Oversight Committee)를 발족시켰다.

'독자인권위원회'의 심의는 보도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사에 대해 독자가 보도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 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 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사외 각계인사 4인과 동아일보사

독자서비스센터장 등 5인으로 구성된다. 사외 인권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현재 이용훈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독자서비스센터장이 해당부서장에 통보해 해소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중재에 나설 수 있다. 그래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인권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된다.

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 관계 부서에 통보하고 처리결과를 해당 독자에게 알린다. 관계 부서는 편집권 보호의 가치와 상충되지 않는 한 이를 지면에 반영할 의무를 가진다. 피해구제 조치로는 정정보도 또는 사과문 등을 지면에 게재하는 것 등이 있다. 물질적 보상은 다루지 않는다.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부서장은 편집권 보호의 가치와 상충되지 않는 한 이를 반영한다.

### 2. 조선일보의 '독자권익보호위원회'와 '변호사 사전기사열람제'

조선일보는 과거 내부인사에 의한 옴부즈맨 제도에서 벗어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계, 학계 등의 사외인사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자권익보호위원회'를 지난 해 4월 발족했다.

동아일보의 '독자인권위원회'와 같이 운용규정이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는 상근 변호사 사전기사열람제를 실시하고 있다.

상근 변호사는 매일 오후 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로 출근해 기사를 사전에 열람하고 문제가 될 만한 기사에 대해 데스크 및 기자



들과 상의한다.

이밖에 중앙일보는 1996년부터 옴부즈맨칼럼(당시 필자·이규행, 현재 필자·성병욱)을 매주 게재하고 있다. 자사지에 대한 비판을 칼럼에 쓰고 있는데, 오보사례와 전체 지면에 대한 총괄적 비판의 경향을 보이고 있고, 변호사 사전기사심사제와 독자팀을 통해 독자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초기에 한국일보가 4명의 언론학자들(팽원순, 안광식, 서정우, 차배근 교수)로 하여금 주단위 교대로 그 신문의 지면에 관한 평가를 요청하여 고위 편집책임자들에게 회람, 참작토록 하는 외부평가인제를 한동안 두기도 했다.

기타 주요 일간지도 자체적으로 옴부즈맨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처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신문사들은 일반적인 독자의 의견을 접수하던 독자면을 확대하고 여기에 자사의 보도에 대한 비판을 수렴하여 그에 대한 해명이나 정정을 게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VI. 맺는 말

지금까지 독자들의 인권옹호와 언론소송 예방차원에서 상당한 일조를 하고 있는 옴부즈맨제도의 실태를 특히 미·일 중심으로 한국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해 보았다.

옴부즈맨제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본연의 역할과 사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음에도 필자가 소송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서술해나간 이유는 옴부즈맨 제도는 실질적인 언론사의 자율적 피해구제기구로서 독자

들의 불만을 법적 소송이 아닌 당사자간의 해결로 유도한다는 점에 있다.

언론관련 소송은 비단 언론사와 특정 당사자만의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소송의 만연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독자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 사회현상에 대한 공론의 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의 잘잘못을 따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되는 언론소송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소송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감안할 때 그 전 단계에서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이 다툼의 원인을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겠지만 보도의 구조적 체계상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언론사로서는 잘못된 보도라는 주장에 대해 무조건 방어적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문제된 보도가 있기 전에 자체적으로 어떠한 게이트키퍼과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독자들의 오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언론문화의 형성이 중요하다 하겠다.

결국 옴부즈맨 제도는 언론에게 스스로를 검열케 함으로서 내부 정화를 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언론수용자들의 고충을 처리한다는 면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보호와 독자의 인권보호라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소송예방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하겠다.

끝으로 우리 언론계 한가운데에 언론자유와 보호와 개인의 인격권의 조화점으로서 옴부즈맨이 있었다는 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대해 본다. □

## 신문광고 - 홍수, 가뭄

이 연 수

광주중재위원 · 전남과학대 방송영상과 교수

### ▼ 홍 수

우리는 각종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광고의 물결 속에 숨 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녁시간이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기 십상이고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신문을 찾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11월 중순 어느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방금 배달된 묵직한 A일보 뭉치를 들고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겼다. 하단광고야 당연한 것이겠지만 전면광고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새삼 눈이 피곤해졌다.

신문사 제호가 있는 뭉치 32면 가운데 전면광고가 무려 15면을 차지했고, 광고와 기사면이 대략 63:37 비율로 나타났다. 여기에 경제, 스포츠섹션 등 모두 68면이 배달된 신문은 광고 또 광고의 연속이었다. 광고도 정보라지만 그 날 아침 나에게 광고지면은 피곤함 그 자체였다.

흔히들 방송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신문은 독자가 골라 읽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첫장부터 끝장까지 빼먹지 않고 읽어 가는 습성이 있다.

광고수입과 구독료수입이 선진국은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경우 7: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광고는 구독자를 교묘하게 배신한 듯한 신문사측의 일방적 행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난 세월 어느 때 국민들로부터 백지광고를 받아 독재와 싸웠던 민주언론의 숭고한 뜻을 떠올리게 된다. 신문사의 기형적 수입구조가 기사작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또한 대선자금 수사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이때에 행여 광고업체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나 정치권에 칼날을 세우는 일은 없을까 하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

신문사와는 별개일지 몰라도 아침이면 신문과 함께 전단지까지 10여 장씩 배달돼 며칠이 지나면 거실 한쪽은 폐지로 넘쳐흐른다.

학생시절부터 오직 한 마음으로 구독해왔던 이 신문은 3~4년 남짓 끊었다가 2년 전 어느 날부터 구독하기 시작했다. 그 날 오전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한 청년이 '아버님'하고 몸부터 밀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무슨 선물보따리를 내밀며 한 부 구독해 달라는 것이다. 내가 차마 거절 못하고 멈칫거리고 있을 때 그 청년은 생면부지의 낯선 나에게 거둬 '아버님' 하며 애원하는 모습을 보이니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다. 구독강요와 광고홍수가 어찌면 맞아떨어진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었다.

▼ 가 목

광주, 전남지방의 대표적인 신문인 광주일보의 주인이 바뀌었다. 광주일보는 1954년 창간 때 50년의 역사 속에 정론임을 자임하면서 많은 훌륭한 언론인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광주일보는 건설회사 회장이 주인이 됐다. 광고부진, 결국 경영난으로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왔던 신문사의 사주가 바뀐 것이다. 인구 100만을 겨우 넘고 생산도시라기보다 소비도시에 가까운 광주에 일간지 신문이 무려 1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열악한 지역경제계에 광고를 기대한다는 것은 마른 나뭇가지에서 수액을 짜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구나 일부 광고물량은 중앙지로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다.

필자가 2~3년 전 한 호텔의 회장으로 있을 때 일이다. 호텔 오픈광고를 한 신문에 냈다가 여기저기서 밀려드는 광고 주문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어느 신문사 광고담당 책임자를 대표로 내세워 모든 지방지에 광고를 게재했던 경험이 있다.

취약한 광고시장, 신문사 난립이 최소한의 광고면도 채우지 못하고 광고가품을 흑독하게 겪고 있는 것이다.

▼ 지역신문이 아름답다

중앙지를 보면 정치권의 고주알 미주알로부터 강남아파트 값이며, 신도시개발 등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굵직한 소식들로 머리가 어지럽고 어찌면 속이 답답해지기까지 한다.

내가 사는 내 이웃들에 대한 소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지방신문을 보면 그동안 소식이 두절됐던 친구의 아들놈 장가소식, 문예회관의 공연소식, 전시회소식 등의 정다운 소식들을 접할 수 있어 좋다. 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 자치단체의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어 좋다.

참여정부 들어 광주가 문화수도가 된다. 지방분권이 강화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다는 등의 말로만 무성한 지역활성화 논란은 지방의 낙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더불어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지방의 현안은 지방신문의 활성화와 맥을 같이한다 할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언론에 대해 중앙정부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역신문 발전지원법안」과 「지방언론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지원대상과 조건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원대상과 조건을 놓고 옥석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러한 법안들이 행여 각 정당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각의 이해득실에 따라 통과가 지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방신문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요 토대다.

광고의 부익부, 빈익빈, 흥수와 가뭄으로 대비되는 상황 속에서 지방신문 구독캠페인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본다. □

## 뉴욕타임즈, 옴부즈맨 제도 창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뉴욕타임즈는 지난 10월 27일 일련의 기사날조, 도작(盜作) 사건으로 크게 손상된 자사의 신뢰회복을 위해 기사검증 등을 책임 질 옴부즈맨 제도를 창설하면서 초대 옴부즈맨에 잡지편집인 출신의 다니엘 오크랜트 씨(55)를 임명했다.

초대 옴부즈맨인 오크랜트 씨는 독자들로부터 제기된 불만 등을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해 몇 번이라도 지면을 통해 비평할 수 있다. 또한, AP통신에 의하면 오크랜트 씨는 독자의 자격으로 지면을 검증하기 때문에 자택에서 작업을 할 것이라고 한다.

오크랜트 씨는 92~96년 사이 명문사진잡지인 『라이프』의 편집장으로 재직했으며, 이후 집필활동을 계속해왔다.

뉴욕타임즈의 옴부즈맨 제도 도입은 제이슨 블레어 전 기자의 기사날조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설치된 조사위원회의 권유로 이루어졌다.

(『신문협회보』, 2003년 11월 4일자) □

## 동경고등법원, 신문사에 1,980만엔 지불 명령, 언론의 명예훼손 배상액으로는 최고액

-일본 동경고등법원 판결-

의료법인 林田會와 그 이사장이 사진주간지

『포커스』(2001년 휴간)의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발행원인 新潮社를 상대로 17,160만엔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 항고심에서 동경고등법원은 2003년 10월 30일, 문제가 된 12건의 기사 전부에 대해 1심판결의 배상액 보다 660만엔 증액한 1,980만엔(약 2억3천만원)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에서 언론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액으로서는 지금까지 최고액으로 보여진다.

문제가 된 기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사장의 부인을 포함하여 총 4명에게 거액의 보험금이 걸려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2000년 7월에서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 보도되었고, 이사장이 보험금을 노리고 개입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시사했다.

2003년 4월 15일 1심 재판부는 12건 중 8건의 기사에 대해서만 사회적 평가의 저하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가 통산 3개월에 걸쳐 게재되었을 뿐 아니라 얼굴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보』, 2003년 11월 4일자) □

## 일본 북해도신문, ‘원유누출사고’ 관련 오보에 편집국장 등 관리책임자 8명 징계

일본의 북해도신문은 지난 10월 27일 出光興産북해도제유소의 원유누출사고에 관한 오보 책임을 물어 관리책임자인 小田切良三 상무이사, 편집국장까지 포함한 8명을 징계처분 했다고 다음 날 28일자 조간에

보도했다.

징계내용으로는 편집국장에 대한 임원보수 감봉, 관리책임과 사죄게재 등의 대응이 지연된 책임을 물어 편집국 차장(편집부국장)과 해당지사 보도부장에 감봉, 취재를 지시한 지사 보도부 차장에 감봉, 취재 및 집필을 담당한 2명의 기자에 견책, 본사 편집국 정리위원과 보도본부차장에 계고(戒告=경고 또는 견책 등에 해당)처분 등이 내려졌다.

북해도신문은 지난 10월 6일자 조간에 “出光興産북해도제유소가 대량의 원유 누출을 숨기고 극비로 회수작업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으나, 그 이후의 취재에서 出光측이 소방본부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설명했음이 밝혀져 16일자 조간 1면에 정정 기사를 게재하는 한편 “독자에게 오해를 주어 出光興産을 위시하여 관계 각 방면에 커다란 폐를 끼쳤다”는 내용의 사죄 기사를 게재했다. 23일자 조간에서는 오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설명하는 검증 기사까지 게재한 바 있다.

\* 번역자 주 : 한국의 언론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마지못해 잘 보이지도 않는 지면 한쪽 구석에 정정 기사를 게재하는 무책임과 대비하면, 임원까지 포함하는 대폭적인 징계, 1면에 정정 기사를 게재하고도 두 번 세 번 정정 기사, 사과 기사, 오보 경위 조사 결과까지 게재하는 책임 언론의 참모습을 보는 것 같다.

(『신문협회보』, 2003년 11월 4일자) □

## 영국의 고등법원, 재판 중 18세가 된 소년에 대해 '실명보도'가 가능하다고 인정

지난 10월 6일자 영국 『가디언』지(온라인판)에 의하면 영국의 한 고등법원은 6일 재

판 중인 소년이 18세가 되면 언론은 소년에 대해 실명으로 보도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소년이 법정에서 나오는 경우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재판 중에 18세가 된 경우 실명보도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2002년 3월, 상해사건의 유죄가 인정되어 2003년 4월, 징역 4개월과 교정명령의 판결을 받은 '데이빗 리 토티' 씨는 사건 당시 17세였으나 재판 중 18세가 되었다. 이에 『샌더랜드 에코』와 『실즈 가젯트』의 편집장은 연명으로 '사우스스타인사이드' 소년법원에 토티 씨의 실명보도 허가를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서에서 두 편집장은 “사건의 중대성과 토티 씨의 범죄력(犯罪歴)으로 미루어 보아 공중은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 필요가 있고, 이번 사건에서 토티 씨에게는 1933년 아동-소년법 제49조의 '익명성의 보호'가 적용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년법원의 치안판사는 이 주장을 인정하였고, 이에 토티 씨는 고법에 항고(抗告)하였다.

재판을 담당한 불록, 서리반 두 판사는 이를 기각하면서 “보도기관이 '공중의 눈과 귀'로서 소년의 실명보도에 관해 보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변별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문협회보』, 10월 28일자) □

## 워싱턴 '스나이퍼 재판' 담당 판사 변호인단에 언론접촉 금지령

워싱턴포스트의 연쇄살해범(스나이퍼) 리

말보 편지 보도에 분노한 재판 담당 판사가 12월 4일 변호인들에게 언론접촉 금지령을 내렸다. 버지니아 주 체사피크 순회법원의 제인 로쉬 판사는 이 스나이퍼가 2002년 10월 행동을 개시하기 수 주 전 자기 조카에게 보낸 편지를 WP지가 보도하자 즉각 조치를 취했다.

18세인 말보는 워싱턴DC 지역에서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로쉬 판사는 피고인측 변호인들이 문제의 편지를 증거로 해달라는 요구를 단지 풍문에 불과하다며 거절해왔다. 변호사들은 이 편지를 정신착란 증세를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한편 WP지는 편지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말보는 이 편지에서 “나는 폭발을 기다리는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썼다. 로쉬 판사는 4일 법정에서 변호인단과 검사들에게 편지를 유출했는지 물었지만 이를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전해졌다.

로쉬 판사는 또 “재판에 계속 방해를 받기 때문에 보도금지령을 내고자 한다. 이런 기자회견은 배심원이나 그 가족들에 접근하려는 시도로 보여 진다.”고 하며 변호인단이 매일 하는 언론브리핑에 싫증을 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공판과정 중 변호인들에 내린 보도금지령은 상대적으로 흔한 일이다. 포틀랜드의 탐사보도 기자상 수상자인 존 스티븐스는 이런 명령이 재판 중 일어나는 소상한 이야기를 전하려는 언론에 어려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언론에 말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실제적이고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판사들은 반드시) 장기일이 있을 곳에 있도록

해야 한다.”

(www.rcpf.org 12월 5일) □

### 일본 최고재판소, TV에 의한 명예훼손 인정여부 처음으로 기준 제시

지난 2000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에 와서 경찰이 인권 배려를 이유로 사건, 사고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자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일본 언론계는 그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다.

“왜 피해자의 신원을 밝혔느냐는 항의에 대해 언론들은 흔히 경찰이 밝혔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니 경찰의 피해자 익명발표 방침도 무리가 아니다”. “경찰이 정보를 밝혔어도 보도에 관한 한 책임은 언론 측이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자성론이 있는가 하면 “익명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면 정확한 보도는 불가능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일본 대부분의 언론들은 피의자, 피해자에 대해 ‘실명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부 언론사에서는 실명보도의 원칙을 재검토하고 있다. 神戸신문은 “피해자는 익명원칙, 피의자는 미죄(微罪)인 경우 익명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실명으로 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내용을 ‘기자행동규범’ 속에 명문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썬텔레비도 “사건 직후의 피해자 취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건현장에 파견된 경찰들이 ‘피해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기자들을 피해자

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족들은 이러한 경찰의 대응을 일반적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많은 언론인들은 “매스컴은 원래 피해자나 그 유족 편에 서야만 한다. 그런데 오히려 경찰이 피해자 편에 서서 취재를 규제하고 있다. 언론계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문협회보』, 2003년 10월 14일) □

### 미주언론협회(IAPA), 베네수엘라 보도제한 조치에 항의

미주언론협회(IAPA)는 차베스 대통령 소환국 민투표 청원운동을 다루는 언론보도에 제약을 가하는 일련의 조치가 염려스럽다고 항의했다.

IAPA의 새 회장겸 트리뷴 출판 그룹 대표인 잭 풀러는 베네수엘라의 몇몇 언론사 사장들을 만나고 돌아온 뒤 “신문과 TV, 라디오가 사태의 다음 단계를 보도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사 사장들은 차베스 정부가 전국으로 방영된 회견을 통해 언론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데 대해 일제히 비난했다.

IAPA는 베네수엘라 뉴스매체들이 겪고 있는 박해를 지속적으로 비난해 왔는데, 정부의 제한 조치에는 24시간 TV뉴스 채널인 글로보비전에 대한 방송장비 압수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와 야당은 이번 정권청원 운동의 보도가 비평가들이 비판해 온 국영과 민영 매체의 편향된 보도관행을 개선했다는 데 동의했다.

관영뿐 아니라 민영 매체도 청원운동 기간 중 발생한 격렬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몇몇 민영 TV채널은 차베

스 대통령 지지자들이 기자들을 수시로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P통신 12월 3일) □

### 캘리포니아주 법원, 바버라 스트라이젠드 사생활침해 소송 기각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12월 3일 가수 바버라 스트라이젠드가 자신의 말리부 별장 사진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린 환경운동가에 대해 제기한 1천만 달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그녀는 지난 5월 사생활 침해, 공표권 남용 위반, 반파파라치 법(캘리포니아 주가 도청장비나 망원렌즈를 일정거리 외에서 사용하는 타블로이드 사진기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제정) 위반 등의 이유로 환경운동가인 케네스 아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퇴직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아델만은 ‘캘리포니아 해안 기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 해안의 환경파괴 현장을 모니터해 문서화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법원은 판결에서 그의 사진자료가 ‘거의 모든 캘리포니아 해안을 문서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트라이젠드의 별장을 담은 해안 사진은 그의 웹사이트에 올려진 12,000장의 사진 중 하나인데, 헬리콥터를 타고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으로서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법원은 사진의 공표로 인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며, 스트라이젠드는 과거 기자와 카메라맨들에게 자택을 개방해 왔다고 덧붙였다.

(www.rcpf.org 12월 4일) □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들이 언론  
기관과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이 외교통상부와 현지 공관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3서울중재377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외교통상부 (장관 운영 관)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3. 10. 4.

처리결과 : 합의

### 보도내용

조선일보 : (1)『중국서 한국인 3명 납치돼,  
국내 가족들이 신고하니 ... 외교  
부·경찰 관할 타령만』 제하의 기  
사 (2003년 9월 26일자 A8면)

내 용 : 한국인 사업가 일행이 중국에서  
조선족 폭력배에 납치당한 뒤 피해자 가족  
들이 외교통상부와 경찰청에 수사 및 신변  
보호 요청을 했으나 이들 기관으로부터 아  
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신고를 받은 기관

들은 '긴급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하급 기  
관이나 다른 기관에 공문만 보낸것으로 확  
인됐다. (중략)

서울에 있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돈을 보  
내달라고 연락했고 홍씨와 김씨는 서울의  
동료로부터 2,300만원을 송금받아 23일 풀려  
났다. 하지만 최씨가 납치된 사실을 전해들  
은 최씨 가족은 24일 외교통상부 산하 '재  
외국민보호센터'를 방문, 신고했다.

그러나 재외국민보호센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지 영사관에 공문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며 "정 급하면 경찰청 인터  
폴로 가보라"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다  
시 서울 지방경찰청 외사계를 방문, 인질금  
입금을 요구한 납치범들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며 신고했다. (후략)

(2)『"영사관원은 끝내 1명도 안 나타나"』  
제하의 기사 (2003년 9월 27일자 A8면)

(전략) 최씨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이러  
다. 최씨가 폭력배로부터 풀려난건 24일 밤  
11시.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센터, 중국 상  
하이 영사관, 서울시경 등에 수사 및 신변  
보호를 요청했던 가족들이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몸값 5,500만원을 내고 난 뒤

었다.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힌 최씨는 삼시 친구의 은신처에 피해있다 25일 오전 상하이 영사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너무 겁이 나고 부서우니 직원이나 공안 한 사람이라도 붙여달라”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그러나 상하이 영사관은 최씨에게 “당신이 풀려나 있는 저장성 이우시는 상하이에서 서남쪽으로 승용차로 4시간 거리로 너무 멀고 공안에 전화해 볼테니 직접 가보라”며 “당신 친구가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변보호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최씨는 자신의 친구와 직원의 도움을 청해 상하이 푸둥공항으로 향했다. (후략)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외교통상부로서 조선일보 9월 26일자 A8면 『중국서 한국인 3명 납치돼, 국내 가족들이 신고하니 ... 외교부·경찰 관할 타령만』 제하의 기사와 9월 27일자 A8면 『“영사관원은 끝내 1명도 안 나타나”』 제하의 기사에 대해 중재를 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상기 기사에서 최모 씨 등 3인의 피해자들이 납치·감금·석방되는 과정에서 외교통상부와 현지 공관으로부터 “아부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센터는 9월 24일 12:00경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고를 접수한 즉시 관할 공관(주상하이 총영사관)에 이를 송부하여 조치하도록 지시하였고, 현지 공관은 동일 15:30경 중국 공안당국(의오시 공안국)의 협조를 긴급히 요청함으로써 중국 공안이 현장에 출동하고 납치범들의 전

화를 감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변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9월 25일 피해자가 감금에서 풀려나 공항(상해시 푸둥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동일 09:00경 현지 공관을 중국 공안측(의오시 공안국)에 연락,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협조를 확보하였으나, 현장에서 교민 박○○(피해자의 지인으로 석방후 현지에서 피해자를 도움)이 공안국 에스코트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표명에 따라 통역자 외 신변보호인 2명이 피해자의 공항도착시까지 동행하였다. 또한 동일 15:00경 공관은 중국 공안측(상해시 공안국)과 접촉, 17:10경 상해시 공안국 포둥공항분국의 협조를 확보, 피해자가 사건신고 후 동일 내에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동 기사는 아래와 같이 사건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소홀히 함으로써 독자들을 오도하였고, 중재대상기사는 국민들의 외교통상부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였으므로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지난 17일 중국 저장(浙江)성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폭행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 9월 26일자 및 27일자 보도와 관련,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센터는 동건을 신고받은 즉시 현지공관(주상하이 총영사관)에 조치를 지시하고 현지공관은 중국 공안측에 긴급히 연락, 피해자들의 신변안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음을 밝힌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측의 일방적 보도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반론보도신청인 외교통상부 장관 윤영관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달 17일 중국 저장(浙江)성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폭행 사건과 관련. 본지 지난 9월 26일자 및 27일자 보도에 대해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센터는 동 건을 신고받은 즉시 현지공관(주상하이 총영사관)에 조치를 지시하고 현지공관은 중국 공안측에 긴급히 연락. 피해자들의 신변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003년 10월 15일까지 오피니언 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본문활자 크기는 동 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2003년 10월 14일자 A2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재정경제부가 단기외채 급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3서울중재385  
 청구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재정경제부 (장관 김진표)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재부 : 서울제3중재부  
 접수일 : 2003. 10. 9.  
 처리결과 : 합의

## 보도내용

문화일보 : 『재경부 “단기외채 우려 수준”』 제하의 기사 (2003년 10월 6일자 11면)  
 내 용 :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가 자체 보고서를 통해 올 상반기 단기외채가 급증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해 주목된다. 6일 ‘2003년 상반기 재정경제부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재경부는 올 상반기 북핵문제 등으로 중장기 차입여건이 악화돼 단기 외채가 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했다. (중략)  
 재경부는 “단기외채 증가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없도록 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는 한편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외환시장의 안정과 각종 대외 불안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략)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재정경제부로서 문화일보 2003년 10월 6일자 11면 『재경부 “단기외채 우려 수준”』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중재를 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정부(재정경제부)가 외채와 관련하여 “안정수준을 지속 유지”라고 평가한 것을 “단기외채 우려수준”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

이에 신청인은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문화일보 2003년 10월 6일자 11면 『재

경부 “단기외채 우려 수준” 제목의 기사에서 “2003년 상반기 재정경제부 주요업무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재경부는 올 상반기 북핵문제 등으로 중장기 차입여건이 악화돼 단기외채가 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재정경제부는 “외채 관리 지표는 안정수준을 지속 유지”로 평가한 것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 2003년 10월 6일자 11면 『재경부 “단기외채 우려 수준”』 기사와 관련, 재경부는 ‘2003년 상반기 재정경제부 주요업무 자체 평가 보고서’에 “단기외채 우려”라는 사실을 표시한 바 없고, 다만 중장기 차입여건 악화로 단기외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미흡한 점으로 평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경제면에 보도하되, 2003년 10월 25일 이전에 게재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일보 :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2003년 10월 25일자 1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피살된 신청인 부인이 가해자에게 폭언과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등 피살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3경기중재58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유 ○ ○

피신청인 : i T V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3. 10. 14.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i T V : 「실제상황 리얼스토리」 프로그램 (2003년 9월 23일 23:00)

내 용 : (전략)

▷진행자 : 형사들의 예측이 들어 맞았다. 용의자는 부평역 근처 숙박 업소에서 잠을 자다 검거된 것이었다.

▷박형석 : (이사할 당시 파손된) 유리하고 형광등 깨진 것. 치수 재다가 (피살자와) 말 다툼 때문에….

▷형사 : 뭐? 말 싸움 때문에….

▷형사 : 우리는 이미 이삿짐 센터에서 (피살자한테) 갔다 왔는데.

▷형사 : 그러니까 내가 (피살자) 집에 가게 된건 A/S 때문에 가게 된 거야?

▷박형석 : 베란다 형광등 A/S 때문에 계속 전화가 와서 가게 된 겁니다.

▷형사 : 그 과정에서 왜 그랬냐고?

▷박형석 : 약속 안 지키고 계속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A/S) 안해 주려고 그러하면서.

▷형사 : 여자 (피살자)가 따져서 살해 했다는 거야?

▷박형석 : 네.

▷진행자 : 김혜숙 문을 열어 준다.

▷박형석 : 안녕 하세요.

▷김혜숙 : 아니 지금 몇시예요? 오전에 온 다던 사람이 오후 2시가 돼서 나타나고….

난 어떡해요. 바쁘니까 빨리 좀 해 주세요.  
▷박형석 : (전등만지며) 그럼 여기 조명등만 저희가 바꿔 드리면 되겠죠.  
사이즈는 알았으니까 저희가 조만간 다시와서...

▷김혜숙 : 어머?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박형석 : 네?

▷김혜숙 : 이 아저씨 정말 안되겠네.

▷박형석 : 아니 무슨 말씀을...

▷김혜숙 : 아저씨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몇 일 동안 촛불 켜 놓고 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이사와서 집들이도 해야되는데 이러구 몇일 동안 기다리라고요?

▷박형석 : 아니 저희도 이걸 사러 가야되고.

▷김혜숙 : 물건이 파손되면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대로 해 주는게 맞죠? 아저씨 편리한 대로 막 하겠단 거예요 뭐예요 지금.

▷박형석 : 젊은 아줌마가 말 막하구 나오네.

▷김혜숙 : 뭐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어휴! 나 아저씨 하고 이야기 하기 싫으니까 사장한테 빨리 전화해요 지금요.

▷박형석 : 알겠습니다.

▷김혜숙 : 아유 재수가 없을라니까 별 거지 같은 꼴을 다 당하겠네.

▷박형석 : 뭐요 어휴! (때릴 듯이 손을 올린다) 정말.

▷김혜숙 : 어머 아저씨 지금 뭐하는 거예요. 정말 웃기네. 아저씨 나 신고할거예요.

전화가 들고 전화한다. 박형석이 뒤에서 목을 조른다. (후략)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중재대상보도에서 살

인피해자로 언급된 이○○의 남편으로서 iTV의 지난 9월 23일 23:00 「실제상황 리얼스토리」프로그램에 대해 중재를 신청한다.

피신청인은 범인 김○○의 치밀한 살인 강도 사건을 마치 우발적인 범행인 것처럼 묘사하였다. 또한 피해자 이○○(가명 김혜숙)이 몰상식하게 막말을 하여 범인 김○○이 범행을 작심하게 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보도로 인해 신청인과 고인의 유가족들은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경인방송은 2003년 9월 23일 23:00 「실제상황 리얼스토리」 프로그램 '마지막 이사' 라는 방송을 통해 이○○(가명 김혜숙)이 막말을 하고 몰상식한 행동을 보여 범인 김○○(가명 박형석)로 하여금 범행의 동기를 제공한 듯이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 합니다.

범인 김○○(가명 박형석)은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여 지문을 남기지 않고자 목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하여 지문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 이○○(가명 김혜숙)의 목을 졸라 알아낸 비밀번호를 카드회사에 전화까지 하여 확인까지 한 점, 너무도 태연하게 피해자 이○○의 열쇠로 대문까지 잠그고 처음 인터폰을 누를 때 남아 있던 지문까지 깨끗하게 지운 점, 처음부터 A/S를 해주러 온 사람이 아무 도구 없이 맨몸으로 왔다는 점 등으로 보면 A/S가 아닌 치밀한 범죄를 저지르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확

인된 일이며 범인 김○○(가명 박형석)도 시인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기와 같이 있던 이○○(가명 김혜숙)의 평소 성품으로 보아 범인 김○○(가명 박형석)에게 그렇게 막대할 사람이 아니며, 평소에 십자수를 즐겨 하며 벌레 한 마리 죽이지도 못하는 이○○이 어떻게 봄무게 100kg 정도 나가고 인상도 험악한 범인에게 그렇게 심한 막말을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아들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라면 험한 말로 싸울 이○○(가명 김혜숙)이 절대 아닙니다. 보도 내용 중 형사와 유○○(가명 김성훈)이 집 앞에서 나누었다는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일은 없었으며, 내용 중 이사한 다음날 사건이 일어난 것, 유○○(가명 김성훈)이 같이 이사를 한 것, 집을 사서 이사를 한 것, 이○○(가명 김혜숙)이 거실의 형광등을 파손한 이삿짐센터 직원과 싸운 것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사한 당일 유○○(가명 김성훈)은 출근을 하여 없었으며, 형인 유○○과 이○○(가명 김혜숙)이 같이 이사를 했으며, 집은 산 것이 아니라 전세로 들어 갔으며 거실의 형광등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베란다 전등이 파손된 것이며, 또한 이○○이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다그친게 아니고 파손된 물건이 많아 유○○과 이삿짐센터 직원간에 약간의 싸움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사한 다음날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사한 날은 4월 30일이며 사건 날짜는 5월 6일입니다. 범행시간도 오후가 아니라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까지이며, 유○○이 출근한 9시 40분 이후에는 이○○과 18개월된 아들 유○○이 함께 집에 있어 흉악한 범인 김○○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본 건 중재대상 보도에 대한 신청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리얼스토리」 프로그램 모두에 넣어 자막과 아나운서 멘트로 방영한다.

- 1) 제목은 <정정보도문>으로 한다.
- 2) 정정보도 내용은 본 건 중재대상보도에 대한 신청인의 의사가 명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신청인이 이를 확인한 후 방영한다.
- 3) 정정보도는 2003년 10월 28일 이내에 한다.
- 4) 인터넷 방송보도를 삭제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i T V : 「실제상황 리얼스토리」 프로그램 (2003년 10월 28일 23:00)

내 용 : 지난 9월 23일에 방송된 169회 “찰나의 살인” 제1화 ‘마지막 이사’의 내용 중 김혜숙(가명)이 박형석(가명)에게 막말을 하고 거친 항의를 하여 마치 범인 박형석(가명)으로 하여금 범행의 동기를 제공한 듯이 재연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또 범인 박형석(가명)이 순간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재연되었으나 이 사건은 9월 19일 법원에서 계획된 범행으로 확정판결이 있었기에 정정보도합니다.

본 방송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으신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신청인들이 채무자의 집에서 나체로 시위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3전북중재16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1. 우 ○ ○

2. 조 ○ ○

피신청인 : 전북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3. 10. 16.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전북일보 : 『“왜 돈을 안갚는거야” 나체 시위』  
제하의 기사 (2003년 10월 8일자  
14면)

내 용 : ◇...법원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새벽시간에 가정집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40대 여자 등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 (중략)

우씨 등은 지난 4월 새벽시간에 전주시 삼천동 A씨의 집에 들어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옷을 거의 벗은 상태에서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고 빚가 11만원 상당의 집기를 부순 혐의로 기소. (후략)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들은 전북일보 2003년 10월 8일자 14면 『“왜 돈을 안갚는거야” 나체 시위』 제하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2002. 12. 20.경 친구간인 최○○이 급하게 가게수표를 막아야 한다며 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동년 12. 31.한 톨립없이 갚겠다고 사정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그런데 최○○은 당초의 약속을 여기면서 수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조차도 없어 2003. 4. 10. 위 우○○와 조○○, 그리고 후배인 이○○와 함께 술을 마신후,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하다가 최○○이 친구로서의 배신감도 들고, 매우 괴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같은 날 03:00경에 최○○의 집을 찾아갔다. 이 때 최○○의 처인 이○○ 혼자 있어 모두 4명이서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언성이 약간 높아지자 약 20세 가량인 최○○의 아들이 방에서 나와 “나가라”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려 하여 우○○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우○○가 뒤로 타박상을 입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화가난 우○○는 원래 천식증세가 있는 터라 가슴이 답답하여 웃웃(티사스)과 치마를 벗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꽃병이 넘어져 깨진 것으로 사실 우○○는 당시 브레지어를 착용하고, 팬티는 입고 있었다. 따라서 신청인 우○○가 옷을 전부 벗은 채 나체시위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위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기에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는 지난 10월 8일자 14면 『“왜 돈을 안갚는거야” 나체 시위』 제하의 기사에서 우모씨(43) 등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에서 나체시위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나체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져 정정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10월 8일자 14면 『“왜 돈을 안 갚는거야” 나체 시위』 제하의 기사와 관련, 우모 씨(43)가 채무자의 집에서 옷을 벗었던 것은 천식에 의해 가슴이 막혀 그랬던 것이지 나체 시위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북일보 14면 2003년 10월 25일까지 게재 하되, 활자크기는 동 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북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3년 10월 25일자 1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집단감염이 신청인 회사의 혈우병 치료제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3서울중재419  
 청구명 : 반론보도청구  
 신청인 : 녹십자파디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 재 회)  
 피신청인 : KBS-2TV  
 중재부 : 서울제3중재부  
 접수일 : 2003. 10. 23.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KBS-2TV : 「추적 60분」 프로그램 (2003년 10월 4일 21:50)

내 용 : (전략)

▷프로듀서 :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들이 도대체 왜 갑자기 에이즈에 걸렸는지 그 가능성들을 추적해봤습니다.

▷사회자 : 이 엄청난 문제의 시작은 지난 9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91년 3명의 혈우병 환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되기 시작한 이후 해마다 3~4명씩 계속 감염되면서 그 수가 20여명에 달했습니다. 혈우병 환자들은 왜 이렇게 같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에이즈에 걸리게 된 것일까? 우리는 이들이 에이즈에 걸린 원인이 무엇인지 추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중략)

▷사회자 : 우리는 이런 내용의 논문을 썼다는 조영걸 교수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왜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 원인이 국산 혈우병 치료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논문을 발표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조 교수의 혈우병 에이즈 감염연구는 그가 국립보건원 의사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계속되어 왔고 지속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역학조사위원회에 조사위원으로 참여해 제출한 의견서에도 국산 혈우병치료제가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략)

▷조영걸 교수 : “본 사건과 관련된 공혈자 오모 씨 주변에 혈우병 환자 4명 정도가, 총 8명 정도가 분석이 됐는데, 4명이 가깝게 보시는 것처럼 위치해 있는 것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조영걸 교수 : “확실한 것은 들어간 두

사람 것(매혈자 혈액) 하고, 국내의 감염된 혈우병(에이즈 환자) 20명 중의 대부분하고 가장 가깝습니다.”(중략)

▷프로듀서 : “매혈자와 혈우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핵심 유전자를 뽑아내서 유전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오모 씨의 주변에 7명의 다른 혈우병 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중략)

▷프로듀서 : “환자들은 바로 이 치료제가 자신들의 에이즈 감염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녹십자 제품으로 화면 처리). 모 제약회사가 설립한 혈우재단에 등록된 이후 공통적으로 에이즈에 걸렸기 때문입니다.”(중략)

▷프로듀서 : “혈우재단에서 실시한 에이즈 검사결과를 보면 혈우병 환자들이 이 제약회사에서 만든 국산 치료제를 맞은 1991년 이후 집중적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납니다.”(중략)

▷프로듀서 : “조영걸 교수가 연구한 내용이 신뢰성이 있는지 미국의 이 분야 권위자에게 검증받아 보기로 하였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립대 어바인 캠퍼스의 ‘윌터 피치’ 교수는 미생물학의 권위자로 유전자 구조를 연구해 에이즈의 감염경로를 밝혀내는 학분을 개척한 연구자입니다.”(중략)

▷프로듀서 : “조 교수가 매혈자와 혈우병 환자들간의 유전자 구조를 분석한 것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요?”

▷피치 교수 : “매혈자와 혈우병 환자간에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이 사람이 혈액 제공자이군요. 그리고 혈우병 환자들의 감염원인인 것 같은데요. 이들의 염기서열이 거의 비슷해서 집단적으로 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중략)

▷프로듀서 : “에이즈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가 있는 미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브라이언 폴리’ 박사를 만나 보았습니다. ‘폴리’ 연구원은 조영걸 교수의 논문이 여러 편 실린 ‘레트로 바이러스’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폴리 박사 : “96%의 유사성을 띠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한국의) 매혈자들이 혈우병 환자들에게 에이즈를 감염시켰을 것이라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혈우병 환자들이 짧은 시기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수혈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단지 1~2년 사이에 모두 감염되었습니다. 공통의 감염원인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염기서열 자료와 에이즈 양성판정 날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매혈자의 혈액으로 만든 제약사의 혈액제제가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중략)

▷임윤희 변호사 : “오염된 혈액으로 만든 혈액제제를 추적, 폐기까지 수사확대를 주장했으나 북살당했다. 5년~10년 후 에이즈가 창궐하면 어떻게 책임질거냐는 말을 하고 사직했다.”(중략)

▷사회자 : “2003년 7월 8일 국립보건원 회의실. 보건원측이 환자들은 초청대상이 아니라며 제지했다.”(이어 환자 가족들의 울부짖는 모습 방송)(중략)

▷사회자 : “이번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프로듀서 : “아쉽게도 원인규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혈우병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의 원료인 혈액 또한 국민의 헌혈을 통해 공급받기 때문에 더더욱 혈우병 환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봉사를 해야하는 기업이나 만큼 원인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후략)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녹십자피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KBS-2TV에서 2003년 10월 4일 방영한 「추적60분」 ‘어느 에이즈 환자의 절규 - 누가 우리의 인생을 보살할 것인가’ 제하의 방송내용에 대해 중재신청을 한다.

피신청인의 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중재대상보도는 신청인 회사에 유·무형의 심각한 손해를 입혔으며, 일반 시청자들에게 커다란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 지난 10월 4일 방영한 ‘어느 에이즈 환자의 절규 - 누가 우리의 인생을 보살할 것인가’ 제하의 방송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에 해당 제약사에서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첫째, 본 방송에서 울산대 조영걸 교수 및 조 교수 논문의 공동저자인 월터피치 교수와 브라이언 폴리 박사의 인터뷰를 통해, “에이즈 감염자 오모 씨의 혈장이 국산 혈우병 B 치료제(핵나인)의 원료로 섞여 들어갔으며, 문제의 오모 씨와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바이러스 염기서열이 유사하게 나와 혈우병 B형 환자들이 에이즈에 집단 감염된 것은 국산 혈우병 치료제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제약사는 “문제의 오모 씨 혈장은 국산 혈우병 B 치료제가 본격 생산 공급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에는 핵나인을 비롯한 그 어떤 혈액제제 생산에도 사용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오모 씨와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바

이러스 염기서열이 유사하다는 점은 국산 혈우병 B 치료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혈우병 환자들이 1991~1992년 사이에 집단적으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방송내용에 대해 해당 제약사는 “혈우병 B형 환자들은 국산 혈우병 치료제가 공급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외국산 혈우병 치료제, 혈장 수혈 등 지금까지로는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경로(sources)에 위협하게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단순히 시점상의 우연성을 근거로 마치 집단감염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방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임운희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임운희 검사가 수사를 담당했던 1990년도 소위 ‘사기매혈’ 사건이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 사안의 발단이 되었으며, 외압에 의해 수사를 중단하고 사직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해당 제약사는 1990년 5월 임운희 당시 검사가 수사를 담당했던 ‘혈액관리법위반’ 사건은 이번에 추적60분에서 보도한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점상으로도 임운희 검사가 수사를 담당했던 사건은 1990년이고,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 관련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92년입니다.

넷째, “조영걸 교수와 브라이언 폴리 박사의 유전자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산 혈우병 B 치료제가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 원인”인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해당 제약사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DNA 분석방법을 통해 감염원인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실험방법 및 결과해석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

게 해당 제약사는 “국내외에 보다 객관적이고 권위있는 에이즈 전문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적60분에서는 조영걸 교수 논문의 공동저자 등 조 교수에 편향된 인물들을 인터뷰대상으로 선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마치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인 것처럼 소개함으로써 조영걸 교수 주장의 신뢰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섯째, 해당 제약사는 “추적60분 방송내용이 혈우병 환자가족, 조영걸 교수, 조 교수와 환자들의 소송대리인인 전현희 변호사, 조영걸 교수 논문의 국내외 공동저자 등 혈우병 환자측의 일방적 주장을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특히 “이번 방송의 주요 인터뷰 대상자인 조영걸 교수와 전현희 변호사는 해당 제약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소송 당사자들이므로 처음부터 객관적인 주장을 기대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섯째, “이번 사안의 원인규명과 관련하여 국산제제를 생산하고 있는 제약사측에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방송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제약사는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 생산시설과 공정을 공개하고, 회사의 모든 기록과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청자들의 오해소지 및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 해당 제약사의 반론을 밝힙니다.

· 반론방법 : 중앙 상단 화면에는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원 프로그램인 「추적60분」의 통상의 표제와 같은 크기로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위 반론보도문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원 프로그램의 자막과 같은 크기, 줄 간격, 글자 간격의 자막으로 천천

히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보다 빠르지 않은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도록 한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10월 4일 방영한 ‘어느 에이즈 환자의 절규’ 제목의 방송내용에 대해 해당 제약사에서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해당 제약사는 조영걸 교수가 주장한 문제의 오모 씨 혈장은 국산 혈우병B 치료제가 본격 생산 공급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혈우병 치료제를 비롯한 어떠한 혈액제제 생산에 결코 사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약사는 국내외에 보다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에이즈 전문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 교수 논문의 공동저자 등 조 교수측의 주장을 중심으로 보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원인규명과 관련하여 해당 제약사는 생산시설과 공정을 공개하고, 회사의 모든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는 등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2003년 11월 5일자 KBS-2TV 「추적60분」 프로그램 말미에 제목과 본문을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을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2TV : 「추적60분」 프로그램 (2003년 11월

5일 23: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 조선일보가 외신보도를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3서울중재429  
 청구명 : 반론보도청구  
 신청인 : (주)조선일보사 (대표이사 방 상 훈)  
 피신청인 : MBC-TV  
 중재부 : 서울제3중재부  
 접수일 : 2003. 10. 31.  
 처리결과 : 합의

### 보도내용

MBC-TV :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2003년 10월 17일 23:15)

내 용 : 조선, 동아, 중앙이 전하는 외신 기사들은 외신의 여기저기를 짜깁기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방향으로 너무나 심하게 왜곡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AP통신을 왜곡한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면 AP통신이 '노 대통령의 격식파괴와 일관성 부재 때문에 수개월 간 비판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지지도가 저하하고 혼란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기사를 쓴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AP통신 기사의 원문을 보면 노 대통령이 비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악의적인 비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한국의 일부 신문들의 비판이 악의적이었다'고 평가

했는데 이 말을 쏙 빼버린 것입니다. 조선이어서 '노 대통령의 잘못 때문에 정부의 혼란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한 것처럼 소재목으로까지 부각했는데 눈을 씻고 원문을 찾아보아도 이런 말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기사도 왜곡 인용했습니다. '조선은 요미우리가 정권 최대의 무기였던 청결 이미지에도 흠집이 감에 따라 이미 정권 말기에 들어섰다'고 보도한 것처럼 따옴표까지 써가며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인용했다는 12일자 요미우리 신문의 해당 기사는 조선이 표현한 청결 이미지나 흠집과 같은 단어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중략)

조선과 동아는 또 아사히 신문의 기사도 왜곡해 전달했습니다. 조선은 아사히가 '민의를 잘못 읽으면 해야할 수도 있다'고 쓴 부분만을 인용하면서 모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해야'라는 말은 분명히 아사히 신문의 해당 기사 말미에 써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사히 장문의 기사는 '노 대통령이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게 된 뜻에는 진정이 배어 있다'고 전제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대통령의 말을 비중있게 보도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 빼버린 것입니다. 동아도 아사히의 기사를 거두절미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아사히를 인용하면서 조선의 왜곡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기사도 왜곡 인용했습니다. 조선은 15일자에서 르몽드가 '한국사회 희망도 사라졌다'고 보도한 것처럼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 국민투표에 운명을 걸다'라는 제목의 르몽드지를 살살이 뒤져보았지만 '희망도 사라졌다'는 말

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사회’ 라는 뜻의 중간 제목은 있었지만 이 말은 ‘희망도 사라졌다’는 말과 많이 다른 말일 것입니다. (후략)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MBC-TV 지난 2003년 10월 17일 23:15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해도 너무한 ‘입맛 대로’ 외신” 제하의 보도에 대해 중재를 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를 통해 신청인을 포함한 일부 언론이 외신을 짜깁기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 기사화하는 등, 외신을 왜곡전달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피신청인의 위 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공신력이 훼손되었기에 다음과 같은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 MBC-TV는 지난 2003년 10월 17일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에 “해도 너무한 ‘입맛 대로’ 외신”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보도에서,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외신의 여기저기를 짜깁기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방향 대로 외신의 보도를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선일보사측의 반론 제기가 있어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MBC는 이날 「미디어비평」 보도에서 “AP통신 기사의 원문을 보면 ‘노 대통령이 한국의 일부 신문들로부터 악의적인 비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도 조선일보는 이 말을 속 빼버리고 보도했다”고 방송했다. 그러

나 MBC가 말한 “한국의 일부 신문들”이라는 표현은 AP통신 기사 원문에는 없는 MBC의 창작이며, 조선일보가 이를 일부러 속 빼고 보도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이 보도에서 문제삼은 조선일보 보도는 AP통신 기사의 원문보도 내용의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였을 뿐 사실을 왜곡한 일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다.

MBC는 이날 보도에서 조선일보가 요미우리 신문 기사를 왜곡 인용하면서 원문에도 없는 단어들을 인용했다고 방송하였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며 이 단어들은 요미우리 신문에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MBC는 조선일보가 인용했다는 요미우리가 12일자라고 보도했으나, 조선일보 기사는 해당 인용문이 12일자라고 명시한 바 없음이 확인되었다.

MBC는 조선일보가 프랑스 르몽드 기사를 인용 보도하면서 원문에도 없는 “희망도 사라져”라는 제목을 붙여 원문기사를 왜곡 인용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원문기사 중 “한국 사회는 미래에 대한 전망과 대안세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 내용을 압축 표현하여 제목을 붙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원문을 날조하거나 왜곡한 것이 아니다. 원문의 요지를 간추려 제목을 붙이는 것은 전세계 어느 언론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이를 두고 MBC가 원문보도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부당하다.

MBC는 조선일보가 아사히 신문 보도를 인용 소개하면서, 마치 특정 인용문을 일부러 생략해 전후 맥락을 왜곡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외신의 내용을 전부 인용하지 않는 이상 원문기사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을 인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사가치에 대한 평가의 문제일 뿐

이며,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아사히 신문 기사를 왜곡 보도했다고 한 MBC의 비판은 옳지 않다.

조선일보는 불편부당의 보도원칙을 준수하면서 올바른 기사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을 뿐, 근거 없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없는 말을 만들어서 왜곡보도한 사실이 없다.』

이상은 조선일보사의 반론 내용이었습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결정이 송달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23:15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순서로 청색 바탕의 화면 상단에 통상 뉴스보도 제목과 같은 크기의 흰색 글자로 “조선일보사의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통상 보도와 같은 크기의 흰색 글자로 시청자들이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 합의사항

· 제 목 : 조선일보의 반론보도문  
 · 내 용 : MBC-TV는 지난 2003년 10월 17일 「미디어비평」에 “해도 너무한 ‘입맛 대로’ 외신”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보도에서,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외신보도를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선일보사측의 반론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MBC는 AP통신은 노 대통령에 대한 한국의 일부 신문들의 비판이 악의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 조선일보는 이 말을 쏙 빼버리고 보도했다고 방송했다. 그러나 MBC가 말한

“한국의 일부 신문들”이라는 표현은 AP통신 기사 원문에 대한 MBC의 일방적인 해석이며, 조선일보가 이를 일부러 쏙 빼고 보도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조선일보는 AP통신 기사의 원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MBC는 조선일보가 요미우리 신문 기사를 왜곡 인용하면서 원문에도 없는 단어들을 인용했다고 방송하였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며 이 단어들은 요미우리 신문에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MBC는 조선일보가 아사히 신문 보도를 인용 소개하면서, 마치 특정 인용문을 일부러 생략해 전후 맥락을 왜곡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외신의 내용을 전부 인용하지 않는 이상 원문기사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을 인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사가 치에 대한 평가의 문제일 뿐이며, 이를 왜곡 보도라고 한 MBC의 비판은 잘못이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2003년 11월 21일 MBC-TV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프로그램 말미에 제목과 본문을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을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프로그램  
 (2003년 11월 21일 23:15)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교회 건물의 매각 및 이전을 임의로 결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3서울중재432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현교회  
(대표자 당회장 장 옥 기)  
2. 장 옥 기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3. 11. 5.

처리결과 : 함 의

###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3년 10월 26일 21:00)

내 용 : ▷앵커 : 성도들 사이에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가 교인 전체의 재산인 교회를 팔아버려서 예배할 곳이 없는 신도들이 교회를 돌려달라며 매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 일요일 11시 예배가 끝난 서울 강남의 한 교회. 신도들이 목사 앞으로 가 시위를 벌입니다.

▷기자 :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해보고 바지자락을 잡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목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기자 : 목사 친척들과 신도들 사이에 격한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기자 : 충돌이 빚어진 것은 목사가 강남에 있는 교회를 45억에 팔아버리고 인적이 드문 용인에 군사보호지역을 17여 억원에 사들여 교회를 옮기려하기 때문입니다.

▷기자 : 작년 8월 교회총회. 목사가 교회이전을 반대하는 신도들의 의견을 가로막습니다.

▷기자 : 교회이전여부를 투표로 결정하자 는 교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느닷없이 가부

를 묻습니다.

▷인터뷰 : 그때 분위기는 아 투표하자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일이...

▷기자 : 총회 참석인원도 민법상 의결 정족수 미만입니다. 전체 신도 165명 가운데 1/3도 안 되는 50명만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목사측은 전체 118명중 69명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기자 : 이 와중에 목사는 교회매각대금 중에 4억을 개인재산으로 돌리고 아파트 한 채도 챙길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기자 : 교회핵심 수뇌부가 목사의 친인척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자 : 교회에 헌신한 신도들은 분노합니다.

▷인터뷰 : 자기가 돈을 갖고와서 이렇게 지어 놓은 것도 아니고 헌당할 때 1억했고 5천만원을 다 집을 팔아 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헌당을 했는데,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는게 어디 목사예요.

▷기자 : 믿음과 사랑의 보금자리라는 교회가 신도들의 분노와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현교회와 동교회의 당회장 목사인 신청인 장옥기는 MBC-TV 지난 2003년 10월 26일 21:00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싸움판 교회' 제하의 보도에 대해 중재를 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중재대상보도에서 신청인 교회가 매일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고, 목사와 친인척이 교인들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기에 다음과 같은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MBC 문화방송이 지난 10월 26일 저녁 9시 「뉴스데스크」 시간에 '싸움판 교회' 라는 제목으로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서울강현교회에서 목사가 친인척과 결탁, 교인 전체의 재산인 교회를 제멋대로 팔아버려 예배 볼 곳이 없는 신도들이 교회를 돌려달라며 매주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위와 같은 교회 건물매각 및 이전 결정은 교단헌법과 교회의 정관에 의거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매수한 용인시 소재 토지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교회발전에 매우 유익하고, 이미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며, 목사가 임의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편 교회는 이전결정 직후인 지난 해 9월에 상급단체인 동서울노회의 권고결정에 따라 이전을 원치 않는 일부 교인을 위해 3억5천만원을 지급하여 예배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보도내용은 지난 해 반대파들의 고소내용과 같은 바,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그에 대해 수사한 후 2003. 5. 30.부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도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대체로 사실과 다르며, 그 대부분이 이미 해결되었음에도 이전을 반대하는 극소수의 인원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을 뿐인데, 그 부분도 지금까지 1년 이상 진행되어온 재판을 통하여 잘잘못이 모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반론보도신청인 서울강현교회  
당회장 장 옥 기 목사

### 합의사항

- 제 목 : 다음은 반론보도입니다.
- 내 용 : 지난 10월 26일 9시 「뉴스데스크」 시간에 '싸움판 교회' 제목으로 방송된 내용과 관련, 서울강현교회 측은 교회 건물매각 및 이전결정은 교단헌법에 의거,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용인시 소재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며 또한 교회 이전결정 직후인 지난 해 9월 상급단체인 동서울노회의 권고결정에 따라 이전을 원치 않는 교인을 위해 예배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MBC-TV 2003년 12월 6일까지 「TV속의 TV」 프로그램 말미에 아나운서 육성으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 신청인은 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

### 서울 서초구 원지동 주민들이 추모공원 부지에 화장로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3서울중재438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화장터반대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배 기 봉)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3. 11. 10.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동아일보 : 『원지동 주민 “의료원내 화장로 수용”』 제하의 기사 (2003년 10월 14일자 A25면)

내 용 :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 원지동 주민들이 국가중앙의료원이 함께 들어서는 것을 조건으로 추모공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중략)

화장장 설치 규모와 관련해 서울시는 11기를 고집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3~5기를 주장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성명은 원지동 주민들이 그동안 “단 1기의 화장로도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서울시가 제시한 국가중앙의료원 및 화장로 건립을 받아들일 것 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 주민들로 구성된 ‘화장터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대표자 위원장 배기봉)’로서 동아일보 2003년 10월 14일자 A25면 『원지동 주민 “의료원내 화장로 수용”』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원지동 주민들은 화장장 설치에 관련하여 국가중앙의료원이 들어선다고 할지라도 화장장 설치를 전면 반대하고 있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마치 수년 간 그 동안의 반대 노력의 정당성을 일시에 포기한 것과 같은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2003년 10월 14일자 A25면 『원지동 주민 “의료원내 화장로 수용”』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 원지동 주민들이 국가중앙의료원이 함께 들어서는 것을 조건으로 추모공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화장장 설치 규모와 관련해 서울시는 11기를 고집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3-5기를 주장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원지동 주민들은 위와 같이 국가중앙의료원이 함께 들어서는 것을 조건으로 추모공원이나 화장장 설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실은 시민운동본부의 김○○ 및 김○○가 독자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마치 원지동 주민들 전체의사인 것처럼 잘못 보도된 것임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신청인은 2003년 11월 24일까지 제1안 추가 보도로 화해하는 방법과 제2안 반론보도로 화해하는 방안 중 1개안을 선택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선택한 방안으로 2003년 12월 5일 이전에 Metro 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한다.

(제1안) 추가보도로 화해하는 방안 : 아래와 같은 내용의 취지를 포함한 보도를 게재한다.

‘청계산 지키기 시민운동본부’의 ‘화장로 수용’ 성명 발표 이후에 인근 마을이 중심이 된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신청인을 중심으로 원지동 화장터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명백히 한 점을 포함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분열되어 있다는 내용

(제2안) 반론보도로 화해하는 방안

가. 제 목 :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10월 14일자 A25면 『원지동 주민 “의료원내 화장로 수용”』 기사와 관련하여 화장터반대주민대책위(위원장 배기봉)는 “원지동 주민들이 국가중앙의료원이 함께 들어서는 것을 조건으로 추모공원을 받아들여기로 결정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원지동 주민 전체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니며 화장로 부지와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그와 같은 결정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3년 11월 25일자 A24면)

내 용 : <합의사항 중 제2안 참조> □

## 소년원법 개정안 중 문제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내용에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건번호 : 2003서울중재440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법무부 (장관 강 금 실)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3. 11. 11.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경향신문 : 『‘학생 삼청교육대’ 논란』 제하의 기사 (2003년 11월 5일자 1면)

내 용 : (전략) 정부가 4일 심의, 의결한 소년원법 개정안은 일반학교 문제학생과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을 전국 5개 소년분류심사원 및 4개 소년원에서 1~10일간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략)

하지만 이 교육은 학교에서의 문제학생 선정기준이 모호한 데다 교육과정도 강제성을 띠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학생들을 공교육 내에서 계도하지 못하고 사법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편의주의적 교육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교육 대상자는 해당 학교장들이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선교사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교육 내용도 문제가 있다. 소년범과는 분리된 장소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교육효과를 높인다는 명목 아래 소년원 등 교정시설 견학이 필수코스가 돼 있어 해당 학생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시설에서는 병영식 합숙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시설이 전국 9곳에 불과해 당사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합숙교육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준법정신 고취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며칠 간의 교육만으로는 교육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러다보니 외출과 면회를 제한하고 때론 충격요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후략)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법무부는 경향신문 2003년 11월 5일자 1면 『‘학생 삼청교육대’ 논란』 제

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을 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문제학생 선정기준이 모호한데다 교육과정도 강제성을 띠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선교사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중재대상 기사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하여 세계 제일의 우수한 교육·처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예와 사회적 위상을 실추시켰다.

이에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경향신문의 지난 2003년 11월 5일자 1면 『학생 삼청교육대 논란』 제하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분류심사, 심리치료,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비행청소년문제 진단 및 교육·처우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기관이며, 소년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특성화 교육과 개방적 인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을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5일자 경향신문 1면에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교육에 대하여 『문제학생 소년원 입소 군대식 특별교육, 학생 삼청교육대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문제학생 선정기준이 모호하며, 교사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편의주의적

교육행정이라는 주장과 함께 교육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특별교육은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건전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업중단청소년 종합대책’을 수립,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여 대안학교, 꽃동네 사랑의 교실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비행예방차원의 알찬 프로그램으로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수행의 결과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에 가림하여 학교의 장이 보호자 동의를 거쳐 ‘특별교육이수’를 명하고, 이들을 전문가와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것이며, 교육내용도 적성·성격검사, 상담, 심리치료, 봉사활동, 부모와의 영상편지 주고받기 등 인성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일 미만의 등·하교식 교육을 하고 있어 외출 및 면회의 필요성과 교육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며, 장거리 거주 등의 이유로 보호자 또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의 동의 하에 숙식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교육을 받은 학생, 보호자, 의뢰한 교사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는 등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특별교육이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론보도신청인 법무부장관 강금실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경향신문 11월 5일자 1면 『‘학생 삼청교육대’ 논란』 제하의 기사에 대해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은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건전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에 가름하여 학교의 장이 보호자 동의를 거쳐 ‘특별교육 이수’를 명하고, 이들은 전문가와 교육시설을 갖추고있는 소년분류심사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교육내용도 적성·성격검사, 상담, 심리치료, 봉사활동, 부모와의 영상편지 주고 받기 등 인성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육은 등학교식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외출 및 면회의 필요성과 교육에 대한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특별교육을 받은 학생 뿐만 아니라 보호자 및 의뢰한 교사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는 등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특별교육은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강 금 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2003. 11. 21.자 4면에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 활자 크기는 소제목 『문제 학생 소년원 입소 군대식 특별교육』의 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중재대상 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3년 11월 21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최근의 국내언론관계 판결

\* 편집자 조·사건판계인의 인격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 제3회 고위 법원의 경우 사건판계인의 이름, 소속 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이에 필요한 조소환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오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판결 1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3. 9. 2.자 판결(2002다63558)

#### 사실개요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003년 9월 2일 문화방송의 이른바 '대전 범조비리 사건' 보도 당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였던 신청인들이 문화방송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다고 밝히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전제한 후 "별지 2, 3 기재 방송만이 위법성이 인정되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나머지 각 방송은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방송 모두가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별지 2 기재 방송에는 '이종기 변호사가 검

사들에게 로비를 한 덕분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이는 대전 지역의 검사들이 이종기 변호사와 뒷거래를 하거나 전관예우를 하여 이종기 변호사가 요구하는 대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별지 3 기재 방송에는 뉴스 앵커의 설명을 통하여 '현직 검사까지도 업무상 알게 된 피의자들을 이종기 변호사에게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실질적인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방송은 1999년 1월 7일부터 2월 7일까지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역 검사들이 이종기 변호사의 불법로비와 부정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등의 보도를 하자 현직 검사인 원고들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판결문

사 건 : 2002다63558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1. ○ ○ ○  
2. ○ ○ ○  
3. ○ ○ ○  
4. ○ ○ ○  
변호사 강 우 식

피고, 상고인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김 중 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수

담당변호사 이 돈 명, 이 석 태,  
김 형 태, 이 정 회, 윤 영 환  
2. ○ ○ ○  
대전 중구 선화 1동 381-171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2. 10. 10. 선고  
2001나42662 판결

판 결 선 고 : 2003. 9. 2.

주 문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  
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  
은 다음과 같다.

####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 ○○○은 아래 (2)항 기재 방송 당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원고 ○○○, ○○○은 1998. 3.경까지 2년간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재직하다가 아래 (2)항 기재 방송 당시에는 각자 서울 지방검찰청 북부지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소속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한편, 아래 (2)항 기재 방송 시기에 가까운 1999. 6. 17. 무렵 전국의 검사 현 인원은 1,151명이었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의 현 인원은 25명,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현 인원은 6명이었다.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은 1999. 1. 7. 21:00경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대전 이종기 변호사 수임장부 폭로'를 처음 보도한 이래 같은 해 2. 7.경까지 매일 21:00경에 방송되는 같은 뉴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칭 '대전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도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원고들이 자신들의 명예

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 18차례의 방송이 포함되어 있고(그 내용은 원심판결의 별지 1. 내지 18.의 기재와 같다). 피고 ○○○은 소외 주식회사 대전문화방송 소속 기자로서 그 중 일부 내용(원심판결 별지 1. 4. 12. 방송의 일부이다)을 취재, 보도하였다.

#### 나. 피고들의 보도 경위

피고 ○○○은 이종기 변호사의 사무장이던 소외 ○○으로부터 이종기 변호사의 수임장부(컴퓨터 파일을 인쇄 또는 복사한 것)를 넘겨 받으면서 ○○의 설명을 듣고, 위 수임장부에 소개인으로 기재된 검찰, 법원 등 직원들의 실제 근무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 외에 취재원들 및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취재하였고, 소외 ○○○ 기자는 ○○의 사촌 형인 소외 ○○○ 등을 통하여 위 수임장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소외 ○○○ 기자는 제보를 해 온 취재원을 상대로 전화 인터뷰를 하였는데, 피고 문화방송은 위 기자들을 포함한 소속 기자들의 취재 및 자료,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근거로 하여 원심판결 별지 1. 내지 18.의 기재와 같은 방송을 보도하였다.

다만, 피고 ○○○이나 피고 문화방송의 기자들이 위 각 방송을 위하여 이종기 변호사 및 대전 지역 검사들을 상대로 취재한 적은 없었다.

#### 다. 수임장부의 내용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이종기 변호사의 수임장부는 피고들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632매와 이종기 변호사의 사무장이었던 ○○의 집에서 압수한 122매 등 총 754매(필사 메모지 1매 포함)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 '비용'과 '소개인' 항목이 기재된 문건은 100매이고, '소개인' 항목은 기재되어 있지만 '비용'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제사건현황표와 민사사건목록이 653매이었는데, '소개인' 항목에 표시된 인원과 사건수는 총 379명 1,137건이고 그 중 '비용' 항목에 표시된 인원과 사건수는 총 122명 279건이며 '비용' 항목에 기재된 금액의 총 합계액은 1억 6,630만원이었다.

한편, '소개인' 항목에 표시된 379명과 '비용' 항목에까지 표시된 122명의 직역은 다음 표와 같다(일반인 중에는 전직 검찰직원이 22명, 전직 법원직원이 4명, 전직 경찰관이 5명 포함되어 있다).

	소개인 항목 기재	비용 항목 기재
검 사 장	5명	·
검 사	23명	·
판 사	6명	·
검찰 일반직	71명	46명
법원 일반직	13명	11명
경 찰 관	30명	21명
교 도 관	5명	4명
변 호 사	11명	·
일 반 인	215명	40명

라. 검찰의 기자브리핑 자료와 수사결과 발표 내용

(1)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1999. 1. 10.자 기자브리핑 자료에는, 피고 문화방송 제출 장부와 추가 입수 장부의 분석 내용, ○○ 사무장의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 검찰에서 이종기 변호사를 소환조사한 결과 이종기 변호사는 검찰에서 피고 문화방송의 제출 장부는 대체로 자신이 컴퓨터로 작성하고 디스켓으로 관리해 오다가 오래 전에 파기하여 현재 보관된 것은 없고, 그 장부는 자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분량이 적고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장부 중 수임비 내역표로 보도된 자료는

자신이 미수금현황표로 작성, 관리해 오던 것이고, 미수금현황표 중 문제된 '비용' 항목은 ○○ 사무장에게 활동비를 매월 수 회에 걸쳐 지급하고, 사무장이 수입에 관여한 사건 실수령액의 15%~20%를 활동비로 인정하여 비용으로 기재한 것으로 자신은 소개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소개비를 직접 지급한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

(2) 검찰의 1999. 1. 11.자 기자브리핑 자료에는, 이종기 변호사에 대한 조사 결과 판·검사들의 경우 직접 전화로 의뢰인을 알려 주거나 의뢰인들이 판·검사들의 소개를 받았다고 하여 기재한 것이고,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검사들은 아는 사람이지만 돈을 준 적은 전혀 없으며, 일부 판사는 자신과 사적인 대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검찰의 1999. 1. 12.자 기자브리핑 자료에는, ○○ 사무장의 자수 및 철야 조사 내용과 이종기 변호사 재소환 철야 조사, 이종기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재압수수색, 압수컴퓨터의 삭제파일 복구 작업, 현 사무장 ○○○ 소환 조사, 소득세 신고자료 입수 분석, 이종기 변호사에 대한 예금계좌를 추적 중이라는 내용과 ○○ 사무장을 조사한 결과 공갈 혐의는 대체로 시인하고 변호사법위반 부분은 자수하면서 사전 대비한 듯 철저히 부인하였다는 내용, 그 날의 수사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검찰의 1999. 1. 13.자 기자브리핑 자료에는, 이종기 변호사가 1994. 1.부터 1997. 7.까지 검찰직원 등 107명으로부터 225회 사건을 알선받고 사건 소개비 1억 2,950만원을 교부하였고, 수사사건 취급 경찰관 31명으로부터 44회 사건을 알선받고 직무에 관하여 2,27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자백하여 그 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내용, ○○ 사무장도 폭력행위 및 업무상횡령의 점과 1994. 1.부터 1997. 7. 사이에 검찰직원 등 107명으로부터 225회 사건을 알선받고 사건 소개비 1억 2,950만원을 교부하였고, 수사사건 취급 경찰관 31명으로부터 44회 사건을 알선받고 직무에 관하여 2,27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자백하여 그 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내용, 압수 컴퓨터의 삭제 파일 복구 작업, 이 변호사와 가족, 사무원, ○○ 사무장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발부, 국제청세무조사 자료 입수, 분석 등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검찰의 1999. 1. 14.자 기자브리핑 자료에는, 이종기, ○○에 대한 구속집행 사실과 함께 압수 컴퓨터 4대의 삭제파일을 완전히 복구하여 분석한 결과 1993.~1997. 사건수입명세서(36매)에는 소득세신고를 위한 수입금액 내역이 적혀 있고 사건내역, 진행사항, 수입금액만 적혀 있을 뿐 문제 장부와 같이 '소개인'과 '비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복구된 파일은 모두 업무용 파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그 외에 관련자 본적 소환조사 준비, 그 날의 수사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검찰의 1999. 1. 16.자 기자브리핑 자료에는, 검찰직원 등 관련자 39명을 소환조사하였다는 등 전날의 수사상황과 아울러 그 날의 수사계획, 그 다음날의 수사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대검찰청의 1999. 2. 1.자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의 '판·검사의 사건소개 부분 수사결과' 항목에는 '판사, 검사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경우는 대부분 친·인척, 친지, 동향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소개해 준 것으로 밝혀졌음. 판사, 검사가 이종기 변호사에게 사건

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수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위 항목의 '소개 유형'란에는 '직부와 관련된 사건 소개 - 소개비를 받지 않았으나 자신의 직부와 관련 있는 사건을 소개한 경우 2명 - 검사장 1명, 고검검사 1명'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관·검사 금품수수사건 수사결과' 항목에는 '이종기 변호사가 개업한 1992. 8. 이후 발표 당시까지 대전 지역에서 근무하였던 검사 25명이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명절 떡값, 전별금, 휴가비, 회식비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된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된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된 수가 적거나 방송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원고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심판결 별지 1, 내지 18, 기재 방송 중 같은 별지 3, 4, 6, 내지 8, 11,

12, 기재 방송(이하 '이 사건 각 방송'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은 이 판결에 첨부하는 별지 1, 내지 7,의 기재와 같다. 한편 원심은 그 나머지 방송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따로 불복하지 않고 있다)은 직접적으로 '대전 지역 검사들'을 지칭하거나 이 사건 각 방송 이전에 이미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등의 방송에서 사용된 '대전', '이종기 변호사' 등의 표현과 '검사', '검찰', '검사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대전 지역 검사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구성된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고, 한 달 여에 걸친 집중적인 관련 방송 보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방송 당시 대전지방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던 검사인 원고 ○○○, ○○○과 이종기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된 수입장부를 작성한 시기로서 위 각 방송 무렵부터 10여개월 전까지 대전지방검찰청에 근무하였던 검사인 원고 ○○○, ○○○은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단표시에 의한 집단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방송을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그 방송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및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별지 1. 기재 방송은 대전 지역 검사들이 이종기 변호사의 불법 로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딱값명목으로 한번에 천만원이 건네졌다는 사실을, 별지 2. 기재 방송은 대전 지역 검사들이 이종기 변호사와 뒷거래를 한 후 불법 로비와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종기 변호사가 요구하는 대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별지 3. 기재 방송은 대전 지역 검사들이 담당 사건을 이종기 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음으로써 이종기 변호사의 브로커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별지 4. 기재 방송은 대전 지역 검사들이 사건을 부당하게 소개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중 일부 검사들이 자신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이종기 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준 후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별지 5. 기재 방송은 대전 지역 검사들이 이종기 변호사에 대하여 전관예우를 하거나 또는 학백 또는 돈을 통한 청탁을 받아 사건을 이종기 변호사가 원하는 대로 부당하게 처리해 주었다는 사실을, 별지 6. 기재 방송은 대전 지역 검사들이 이종기 변호사로 부터 매달 수천만원씩 받고 유명 화가의 미술 작품을 선불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7. 기재 방송은 대전 지역 검사들이 이종기 변호사로 부터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고 다른 변호사들과도 불법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각 적시하여 '대전 지역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는 결국 대전 지역 검사들에 포함되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

한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방송은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 데 대하여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옳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2002. 5. 10. 선고 2000다83306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적자라고 하여 위 진실성이나 상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이 진실하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의 입증책임이 피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각 방송 모두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법성조각 주장을 배척한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

.....

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2)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이 사건 각 방송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별지 1. 기재 방송은 비록 그 방송의 제목을 “한번 떡값 천만원”으로 하고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건넨 떡값의 규모로 보아 검찰 고위직 인사들에게 전달된 떡값의 규모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로 적시된 사실은 검찰과 교도소의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대검찰청의 1999. 2. 1.자 수사결과와 발표문에도 이종기 변호사가 개업한 1992. 8. 이후 그 발표 당시까지 대전 지역에서 근무하였던 검사 25명이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명절 떡값, 전별금, 휴가비, 회식비 등으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별지 1. 기재 방송 중 검찰고위직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별지 2. 기재 방송에는 이종기 변호사

가 검사들에게 로비를 한 덕분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는 대전 지역의 검사들이 이종기 변호사와 뒷거래를 하거나 전관예우를 하여 이종기 변호사가 원하는 대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대전 지역의 검사들이 뒷거래를 하여 이종기 변호사가 요구하는 대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내용은 대전 지역의 검사들이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기록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방송이 위법하지 않다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별지 3. 기재 방송은 뉴스 앵커의 설명을 통하여 현직 검사까지도 업무상 알게 된 피의자들을 이종기 변호사에게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실질적인 브로커 역할을 하여 왔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비록 대검찰청의 1999. 2. 1.자 수사결과 발표문에 이종기 변호사의 수임장부에 기재된 소개인 중에는 검사장 5명, 검사 23명이 포함되어 있고 소개비를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는 사건을 소개한 검사가 2명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검사가 사건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방송이 위법하지 않다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별지 4. 기재 방송은 이종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검사들 중에는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과연 그러한 경우에도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 내용인바, 대검찰청의 1999. 2. 1.자 수사결과 발표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종기 변호사에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는 사건을 소개한 검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방송에 적시된 사실은 그 주요 부분이 진실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방송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별지 5. 기재 방송은 이종기 변호사가 전관예우의 풍토에서 학맥을 동원하여 검찰을 상대로 집요하게 청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해 주었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이종기 변호사에 관한 보도이나 여기에는 대전 지역 검사들이 전관예우나 이종기 변호사의 청탁에 영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암시나 의혹의 제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직자의 업무처리의 공정성여부에 관한 국민과 언론의 감시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암시나 의혹의 제기는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역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바) 별지 6. 기재 방송은 이종기 변호사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매달 수천만원씩 인출하여 대전 지역의 현직 검사와 판사들 중 일부에게 송금하거나 떡값 명목으로 건네주고 수시로 향응을 베풀었다는 사실과 이종기 변호사가 대전 지역의 검사들에게 유명화가의 미술작품을 선물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바, 대검찰청 1999. 2. 1.자 수사결과 발표문에도 이종기 변호사가 1992. 8. 개업한 이후 수사결과 발표 당시까지 대전 지역에서 근무하였던 검사들 중 일부에게 명절떡값, 전별금, 휴가비, 회식비 등으로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방송에서 적시한 사실에 과장이 있기는 하지만 허구의 사실이라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언론의 감시 비판기능을 참작하면 위 방송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별지 7. 기재 방송은 대전법조비리 수사의 마무리에 즈음하여 검찰이 중하위직 공무원만 구속하고 판·검사는 한명도 사법처리하지 않은 채 징계조치만 내리기로 한 것은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 준다는 요지로서 이러한 평가적인 보도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방송 중에는 별지 2. 3 기재 방송만이 위법성이 인정되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나머지 각 방송은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방송 모두가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위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서성  
 주심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배기원



## 판결 2

‘범죄보도에 있어서의 익명보도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미 공적인물에 해당하므로  
이유 없다

서울지방법원 2003. 9. 3.자 판결 (2001가합66319)

###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임중윤 부장판사)는 여운환 씨가 주식회사 독립신문사의 3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 또는 전과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 사인에 관한 범죄보도에 있어서는 익명보도원칙이 요구된다.”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건대, 소위 이용호 게이트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 특히 원고의 경우는 원고의 전력을 이용해 정·관계 로비를 하지 않았는지 의혹을 사고 있었고, 그 가운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미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보도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보도내용 중 “주요한 부분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설사 이로 인해 일반독자들이 원고가 조직폭력배라는 인상을 갖게된다 할지라도 이는 원고가 수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시사저널 등 4개 주·월간 잡지가 2001년 9월과 11월에 걸쳐 “여운환 씨는 기업인을 가장한 두목급 조직폭력배로서 수명의 검사장급 고위 검찰간부와 총경급 이상의 고위 경찰간부들을 비호세력으로 두고 있고, 일명 ‘이용호 게이트’사건의 해결사 노릇을 해왔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여운환 씨는 경향신문 등 8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 판결문

사 건 : 2001가합66319 손해배상(기)  
원 고 : 여 운 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Ⅳ 고 : 1. 주식회사 독립신문사

서울 중구 충정로1가 58-1

대표이사 심 상 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이 지 은

2.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표이사 방 우 영,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루,

김 태 수

3.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위 피고들 주소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조 갑 제

4.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표이사 김 학 준, 김 재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중 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준 범

변 론 종 결 : 2003. 8. 20.

판 결 선 고 : 2003. 9. 3.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독립신문사는 금 5억원,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각 금 2억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1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다 제2 내지 6호증, 을라 제1호증의 1, 2, 을라 제9호증의 1, 을라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2. 9.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996. 5.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및 주식회사 정간건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3.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독립신문사(이하 '피고 독립신문사'라 한다)는 주간지 '시사저널',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사'라 한다)는 주간지인 '주간조선', 피고 주식회사 월간조선사(이하 '피고 월간조선사'라 한다)는 월간지인 '월간조선', 피고 동아일보사(이하 '피고 동아일보사'라 한다)는 월간지인 '신동아'를 각 발행하는 언론사들이다.

나. 이 사건 보도 전까지의 경과

(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1. 9. 4. 부실기업 구조조정자금 횡령과 주가조작 등을 통하여 6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조조정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지엔지(G&G) 대표이사 이용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위 이용호가 그동안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마구잡이' 식 기업사냥을 하여 왔고, 위 이용호의 사업에 조직폭력배의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단서를 확보, 이용호의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 이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1. 9. 12. 변호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원고를 긴급 체포하였고, 검사는 2001. 9. 30. 서울지방법원

에 원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다.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1) 피고 독립신문사는 2001년 10월 4/11일자(제623/624호, 추석합병호) 시사저널 표지에 “호남 주먹, 호남 검사, 검은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별지 기사 목록 1-1 기사를, 본문 26-32면에 “검사와 주먹의 검은 커넥션”이라는 제목과 “호남 지역 검찰-조폭 유착 뿌리 깊어 ... 여운환씨가 대표적 연결 고리 ... 정치인도 ‘비리 사슬’ 한 축 이뤄”, “핵심은 이용호 게이트가 아니라 여운환 게이트”, “호남 검사치고 여운환 신세 안진 사람 드물다”, “홍준표 검사가 수사하자 검·경 인사 5명 거론”, “이용호 두뇌 + 여운환 로비력으로 승승장구”, “여씨 구속 전 김홍일 의원 등 실세 정치인 몰래 만나” 등의 소제목 아래 주로 원고와 호남 검사들과의 친분관계와 원고의 로비활동을 암시하는 내용의 별지 기사 목록 1-2 기사를, 본문 32면에 “호남 조폭들의 ‘문어발’ 변신”이라는 제목과 “정권 교체후 대거 상경 ... 나이트클럽은 기본, 건설·금융·벤처 사업까지 손대”라는 소제목 아래 호남 조폭들의 근황을 소개하는 별지 기사 목록 1-3 기사를, 본문 34면에 “광주는 ‘프라도 게이트’ 몸살”이라는 제목과 “이용호 소유·여운환 운영 호텔에 잡음 들끓어 ... 인수과정·공사대금 착복 물의”, “정계·언론계 인사들에게 사우나 무료 이용권 뿌려”, “광주지검, 이용호씨 구속된 후에야 조사 착수” 등의 소제목 아래 광주의 프라도 호텔운영을 둘러싼 지역소식을 소개하는 내용의 별지 기사 목록 1-4 기사를 각 실어 보도한 다음 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각 기사를 게시하였다.

(2) 피고 조선일보사는 2001. 9. 27.자 주간조선 31-33면에 “이용호 게이트, 정-재-관계 거물들 총출연”이라는 제목과 “거액로비-전현직 검찰간부와 여권실세 개입설 등 산더미 의혹”, “검찰은 왜 두 번째 수사에서 이씨를 구속했나?”, “이씨가 뿌린 20억원의 행방과 검찰 고위층 개입 여부” 등의 소제목 아래 소위 이용호 게이트의 발전상황과 그와 관련하여 구속된 원고를 소개하는 내용의 별지 기사 목록 2-1 기사를, 2001. 10. 4.자 주간조선 34-36면에 “지방도호와 조폭이 검찰 인사 좌우한다”라는 제목과 “비리 수사 때마다 정치인·검찰 간부 비호설 ... 잘못 보이면 인사에 불이익도”, “검찰총장동원, 사건 무마 시도” 등의 소제목 아래 1991년과 1992년에 걸친 원고의 범죄단체조직혐의 구속과 경과를 소개하는 내용의 별지 기사 목록 2-2 기사를 각 실어 보도한 다음 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각 기사를 게시하였다.

(3) 피고 월간조선사는 2001년 11월호 월간조선 168-186면에 “한국 조폭의 역사와 계보”라는 제목과 “돈 있는 곳에 부패 있고, 부패한 곳에 조폭 편다”,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 때마다 등장”, “검찰 간부 통해 압력을 가할 정도로 커넥션 막강”, “21세기엔 주식시장, 벤처로 대거 진출” 등의 소제목 아래 한국 조폭의 역사를 주로 소개하면서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구속된 원고의 경력과 1991년 당시 원고의 수사를 담당했던 홍준표 검사의 인터뷰를 기재한 내용의 별지 기사 목록 3-1 기사를, 190-196면에 “이용호 게이트의 3인방, 이용호·여운환·김형운은 누구인가”라는 제목과 “여운환 정간산업개발 대표”라는 중간 제목 및 “동향출신 사정기관원, 정치인과 교분”, “홍준표 검사와 악연”, “출소 후 사업가로 변신” 등의 소제목 아래 원고의 약력과 배경을

소개하는 별지 기사 목록 3-2 기사를 각 실어 보도한 다음 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각 기사를 게시하였다.

(4) 피고 동아일보사는 2001년 11월호 신동아 220-231면에 “심층취재 주먹과 권력”이라는 제목 아래 원고의 경력과 활동을 소개하는 내용의 별지 기사 목록 4 기사를 실어 보도한 다음 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기사를 게시하였다.

라. 이 사건 보도 이후의 경과

검사는 서울지방법원에 원고를, 2001. 11. 26. 변호사법위반으로, 2002. 3. 15.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추가기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각 공소를 2001고합1054, 2001고합1256(병합), 2002고합236(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사건으로 병합하여 2002. 7. 18. 원고의 위와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를 징역 4년에 처하고, 원고로부터 금 1,590,000,000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3. 4. 15. 원고의 위와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고를 징역 3년에 처하는 것으로 파기자판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 7. 25.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만을 파기하여 원고로부터 1,558,769,551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파기자판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허위·과장되어 원고의 명예와 신용 및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재력을 앞세워 80년대부터 정치권 유력인사들과 돈독한 친분관계를 맺는 등 호남의 ‘마당발’로서 여권실세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다.

(2) 원고는 정치인은 물론이고 동향 출신의 경찰,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과 폭넓은 관계를 유지해오다, 98년 정권이 바뀐 뒤에는 사실상 ‘권력의 해결사’ 노릇을 했다.

(3) 원고는 국제 피제이(PJ)파의 두목급 조직폭력배로서, 현재는 기업인을 가장하고 있으나, 현정권의 실세인 K의원이나 그와 친분이 두터운 조폭대부 J씨의 아래에 있는 등 ‘정치조폭’인데, 로비의 귀재, 거물 로비스트, 마당발 로비스트, 해결사이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사기꾼이다.

(4) 원고는 술집대 등을 통해 수명의 검사장급 고위 검찰간부와 총경급 이상의 고위 경찰간부들을 비호세력으로 두고 있다.

(5) 지난 92년 원고가 당시 광주지검 강력부 홍준표 검사에 의해 구속되었을 때 원고를 비호해주는 검찰간부들을 통해 수사에 압력을 가했고, 그 중 2명은 아직 현 정부의 고위직에 재직하고 있다.

(6) 지난 92년 원고가 구속됐을 당시 현 여권실세인 H의원과 정부산하 기관장인 J모 전 의원이 직접 면회를 다녀가면서 동지라고 호칭하는 등 원고를 격려했는데, 이들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을 비호세력으로 두고 있다.

(7) 원고는 광주상고 출신으로서 지난 9월 초 구속된 지앤지(G&G) 그룹 이용호의 고고 4년 선배인데, 이용호의 ‘해결사’ 노릇을 해

왔다.

(8) 원고는 2000. 5.경 이용호 회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아 그 일부를 전현직 검찰고위간부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이 짙으며, 이용호의 진정인을 상대로 진정취하를 종용하였다.

(9) 이 과정에서 원고는 김태정 변호사(전 법무부장관)을 선임케 하여 그를 통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용호를 석방하게 하였다.

(10) 원고는 이용호로부터 각종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억원 상당의 돈을 제공받아 그중 수십억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정계·관계·금융계 등에 전방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

(11) 원고는 이용호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15억원 중 10억원만을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억원은 개인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12) 원고는 이용호의 진정인 등이 추가로 합의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용호를 속여 이용호로부터 추가 합의금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편취·사기를 친 사기꾼이다.

(13) 원고는 2000. 7.경 이용호로부터 KEP 전자, 삼애인더스가 300억원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해주겠다며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아 이를 금감원 및 금융기관에 뿌린 의혹이 짙다.

(14) 원고는 이용호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하였다.

(15)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가 아니라 '여운환 게이트'라 할 정도로 원고가 비리의 '몸

통'으로서 정·관·검·경·금융계 등에 전방위 로비를 했다.

####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사실 내용은 피고들의 각 기사에 보도된 바가 없거나, 관련된 부분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 설사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있다 하여도 위 각 기사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3. 불법행위의 성부

#### 가. 명예훼손의 성립

##### (1) 판단기준

신문 등 언론 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기사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기사 중 그 구체적 내용을 위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볼 때 허용되는 사소한 상위나 과장된 표현의 범위를 넘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하에서 항목별로 살펴본다.

##### (2) 피고들의 각 기사의 경우

###### (가) 피고 독립신문사

###### 1) 별지 기사 목록 1-1 기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기사는 "호

남주먹, 호남검사, 검은 커넥션"이라는 표지 제목으로 그 자체만으로 볼 때는 의견표명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인 나머지 기사들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호남주먹으로 호남검사들과 친분을 맺고 뒷거래를 한 듯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별지 기사 목록 1-2 기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기사는 원고가 서방파 행동대원 출신으로 1986년 호남 조직폭력배세계를 평정하였고, 1990년대에는 경매폭력의 일종인 소위 아도를 치는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으며, 1992년 국제피제이파의 누묵으로 범죄단체를 결성하였다고 하여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홍준표 검사에 의해 구속될 당시의 정황 및 전과를 소개하여 원고가 조직폭력배출신이며 현재도 조직폭력배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한편, 이용호로부터 로비자금 10억4천만원을 받아 삼애인더스의 전환사채발행을 위해 로비활동을 한 의혹을 사고 있으며, 호남 검사들 및 정·관계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로비활동을 하였다고 암시하는 내용으로, 피고 독립신문사는 위와 같이 사실을 적시 또는 추측을 보도함으로써, 이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다만 이 기사의 주목적은 조직폭력배와 관계를 맺은 의혹이 있는 호남 출신 검사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위 피고의 기사 중 원고가 호남 검찰·지역유지·정계 인사들과 친분관계를 맺었고, 특히 검사들에게 융성한 대접을 하며, 모 검사가 대구로 발령이 났을 때 대구에 대형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다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부분, '이용호 게이트'에서 원고가 몸통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적시한 부분 및

프라도 호텔에서 모 정치인을, 제주도에서는 김홍일 의원을 만났다는 부분 역시 명예훼손적인 표현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히 이러한 인사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그와 같은 향응을 제공받거나 친분을 유지한 인사들의 명예가 훼손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볼 수 없으며(이하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도 같다), '이용호 게이트'에서 원고가 몸통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표현한 것은 원고의 로비의혹을 전제로 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역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 볼 수 없다.

3) 별지 기사 목록 1-3 기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기사는 호남 조직폭력배들의 근황을 소개하는 것으로 원고가 조직폭력배임을 암시하거나 원고와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한 바 없으므로, 이는 원고의 명예훼손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4) 별지 기사 목록 1-4 기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기사는 주로 광주에서 프라도호텔의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원고와 관련되어 문제되는 부분은 위 프라도호텔을 임차한 원고가 위 호텔을 로비장소로 이용하며, 호텔사우나 무료 이용권을 뿌린 의혹이 있다고 적시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 중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위 장소에서 로비활동을 하였다는 부분만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고, 호텔사우나 무료 이용권을 뿌렸다는 부분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로비활동의 구체적 일례로 이해되는 풍문을 소개하는 사소한 상위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5) 소 결

따라서, 피고 독립신문사의 각 보도 중 원고

의 명예훼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별지 기사 목록 1-1, 1-2, 1-4 기사라 할 것이고, 이를 정리하면 ①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프라도호텔 등지에서 로비를 시도하였다는 부분, ② 원고의 전과를 적시하며 조직폭력배라는 인상을 받게 한 부분, ③ 이용호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았다는 부분인바, 나머지 부분은 위에 대한 사소한 과장이나 상위, 추측, 배경설명 등에 불과하여 위 내용 속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다만 원고는 2의 가.항에서 모두 15개 항목을 들어 피고 독립신문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중 피고 독립신문사의 위 각 기사와 관련이 있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위에서 정리한 세 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나) 피고 조선일보사

1) 별지 기사 목록 2-1 기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사는 이용호 게이트의 발전상황과 이와 관련하여 구속된 원고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원고의 전과를 소개하면서 구속영장에 기재된 원고의 혐의 내용을 적시하는 한편, 이용호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힘센 사람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원고에게 돈을 건넬 것이라는 추측을 보도하고 그 근거로 광주지검의 모 간부가 '원고의 권유로 슬롯머신 업소 지분에 투자해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을 적시한 내용으로써, 사실을 적시함과 아울러 일반 독자로 하여금 원고가 이용호의 구명을 위해 로비를 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인상을 받게 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 할 것이다.

2) 별지 기사 목록 2-2 기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사는 1991년과 1992년에 걸친 광주 국제 피제이파 사건에서 구속기소된 원고를 소개하면서, 당시 원고가 호남 검찰 간부출신과 상당히 가까웠고, 위와 같이 구속되자 이러한 친분관계를 이용해 수사검사에게 압력을 가하였으며, 당시 광주지검장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검·경인사 5명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이로 인해 이들이 옷을 벗거나 징계를 받았다는 것으로, 역시 사실을 적시함과 아울러 일반 독자로 하여금 원고가 위와 같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구명로비를 하였다는 인상을 받게 하므로, 이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 할 것이다.

3) 소 결

따라서, 피고 조선일보사의 각 보도 중 원고의 명예훼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별지 기사 목록 2-1, 2-2 중 일부분이라 할 것이고, 이를 정리하면 ① 구속영장에 기재된 원고의 혐의내용을 적시한 부분, ② 원고의 전과를 적시하며 조직폭력배라는 인상을 받게 한 부분, ③ 이용호의 구명활동이나 1992년 당시 자신의 구명을 위해 검사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로비활동을 하였다는 부분인바, 나머지 부분은 위에 대한 사소한 과장이나 상위, 추측, 배경설명 등에 불과하여 위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다만 원고는 2의 가.항에서 모두 15개 항목을 들어 피고 조선일보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중 피고 조선일보사의 위 각 기사와 관련이 있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위에서 정리한 세 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다) 피고 월간조선사

1) 별지 기사 목록 3-1 기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사는 한국조직폭력배의 역사와 계보를 소개하면서 원고와 관련하여 국제 피제이파 두목 출신으로 알려진 원고는 구서방과 출신으로 부동산 투기나 사채업 등의 조직폭력배와 관계된 사업으로 자금을 확보하였으며, 1988. 11. 14. 일본 야쿠자 조직과의 결연식에 전라도 대표로 참여하였는데, 1992년 홍준표 검사에 의해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하여 구속영장에 인용된 혐의사실을 인용하면서 현재 구속된 사실을 적시하는 한편, 당시 수사를 담당한 홍준표 검사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에 압력을 가할 정도로 커넥션이 막강하였고 현재도 그와 같은 연계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을 보도하는 내용으로써, 이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 2) 별지 기사 목록 3-2 기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사는 소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된 원고를 소개하는 내용으로써, 피고 월간조선사는 이와 관련된 원고의 혐의 내용을 적시하고, 원고의 전과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유력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프라도호텔 등지에서 로비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 할 것이다.

## 3) 소 결

따라서, 피고 월간조선사의 각 보도 중 원고의 명예훼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별지 기사 목록 3-1, 3-2 중 일부분이라 할 것이고, 이를 정리하면 ① 구속영장에 기재된 원고의 혐의내용을 적시한 부분, ② 원고의 전과와 일본야쿠자 연계대회의 참가사실을 적시하며 조직폭력배라는 인상을 받게 한 부분, ③ 이용호의 구명활동이나 1992년 당시 자신

의 구명을 위해 검사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로비활동을 하였다라는 부분인바, 나머지 부분은 위에 대한 사소한 과장이나 상위, 추측, 배경설명 등에 불과하여 위 내용 속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다만 원고는 2의 가.항에서 모두 15개 항목을 들어 피고 월간조선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중 피고 월간조선사의 위 각 기사와 관련이 있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위에서 정리한 세 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 (라) 피고 동아일보사

피고 동아일보는 별지 기사 목록 4 기사에서 이용호 게이트에서 주먹 출신 사업가인 원고가 주연급 조연으로 등장하는데, 원고가 호남 주먹계의 대부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으로 광주에서 힘이 센 정도에 불과하지만, 광주 국제 피제이파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원고는 특유의 친화력과 머리로 광주지역을 장악하였고, 주먹계에서는 표면에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 조직을 관리하였으며, 일본야쿠자조직과의 결연식을 위해 일본에 갔다는 사실이 있다고 보도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조직폭력배의 두목이라는 인상을 받게 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할 것이다(다만 원고는 2의 가.항에서 모두 15개 항목을 들어 피고 동아일보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중 피고 동아일보사의 위 각 기사와 관련이 있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위에서 정리한 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 (3) 소 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실적시로서

.....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의 위법성 유부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가) 공익성

위 각 기사들은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속된 후 원고와 이용호와의 관계, 원고의 로비의혹 및 원고의 경력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도된 것으로써, 기사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는 공인(公人)이 아닌 일반 사인(私人)에 관한 범죄보도로서 이른바 익명보도원칙을 위반하였고, 원고의 비밀스런 전과를 공개하였으므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해당하여 공익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 또는 전과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 사인(私人)에 관한 범죄보도에 있어서는 익명보도원칙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소위 이용호 게이트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 특히 원고의 경우는 원고의 전력을 이용해 정·관계 로비를 하지 않았는지 의혹을 사고 있었고, 그 가운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미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보도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진실성 내지 상당성

우선 피고들이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하여 구속된 원고의 혐의 내용을 보도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혐의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와 관련된 각 기사의 주요한 부분에 그 진실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들이 원고가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1992년 구속당시 사건의 무마를 위해 로비활동을 하였고,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하여 이용호의 사업과 석방을 위해 로비활동을 하였다고 보도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1호증의 1내지 21, 을다 제4 내지 6호증, 을라 제2호증의 1 내지 15, 을라 제14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2년 당시 수사 검사였던 홍준표 전 한나라당 의원이 원고에 대한 수사 당시 고위 검찰간부로부터 외압을 당했다고 진술한 사실, 그 당시의 신문기사 역시 위와 같은 주장을 보도한 사실, 원고가 친분관계가 있다고 광주지검장에게 공개한 5명 중 한 명인 광주지검 사건과장 최인주가 1993. 5. 17. 원고가 조직폭력배임을 모르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 놓고 변사체로 발견된 사실, 원고는 2000. 5.경 이용호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이중 1억원을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사실 및 원고가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하여 구속될 당시의 각 신문들이 원고의 로비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보도한 사실. 이용호는 검찰진술조서에서 원고가 평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인적관리를 하는데, 주변에 힘쓰는 사람이 많다고 과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 유죄로 확정된 원고의 범죄사실에 위홍준표 전의원은 검사이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그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검찰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파악되는 점, 언론의 사명은 사회의 각종 비리 의혹을 들쳐 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에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의혹제기 내지 추측과 관련된 주요한 부분이 진실 내지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보도는 언론 자유의 한계 내에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전과와 일본야쿠자 연계 대회의 참가사실을 적시하며 조직폭력배라는 인상을 받게 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92. 9.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996. 5.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21, 을다 제4 내지 6호증, 을라 제2호증의 1 내지 15, 을라 제14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광주 국제 피제이파와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등 관련이 있어 고문급 간부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또한 원고는 1988. 11. 14. 일본 야쿠자 조직과 연계를 위하여 전라도 대표로 참가한 사실, 원고는 백제

호텔, 국제관광호텔 등지에서 오락실을 운영한 적이 있었던 사실, 이용호는 검찰진술조서에서 원고를 김태춘의 직계후배로 전형적인 조직폭력배라 표현하며, 자신의 돈과 벤츠승용차는 원고에게 갈취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들이 원고를 단정적으로 국제 피제이파의 두목이라고 적시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들의 보도는 주로 검찰의 공소장이나 1992년 당시 홍준표 검사의 수배경위서를 참조로 한 점, 일반적으로 조직폭력배는 폭력을 수단으로 사채업이나 오락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표현은 주요한 부분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설사 이로 인해 일반독자들이 원고가 조직폭력배라는 인상을 갖게된다 할지라도 이는 원고가 수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공익을 위하여 진실 혹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종운  
판사 정경인  
판사 최정인

<별지 기사 목록 생략>



제보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큼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하라

서울지방법원 2003. 8. 29.자 판결(2002가합74843)

##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국가사랑모임'이 주식회사 내일신문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 ○○○가 홍준표 의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홍준표 의원의 제보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큼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 보도함에 있어 그

진실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내일신문은 2002년 10월 8일자 2면 『정형근 도청자료 입수는 '국사모'』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는 원래 김대중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해임된 직원들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모임으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국가정보원 내부정보를 빼내 정형근 의원에게 제공하는 사이로 바뀌었다는 내용 등의 보도를 하자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원고는 2002년 10월 1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2서울중재241)을 하였으나, 중재결과 중재불성립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 판결문

사 건 : 2002가합74843 손해배상(기)  
원 고 : 국가사랑모임  
대표자 회장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용 균, 손 범 규  
피 고 : 1. 주식회사 내일신문사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55  
대표이사 장 명 국

2. ○ ○ ○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55  
동일빌딩 내일신문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원 재

변 론 종 결 : 2003. 7. 11.

판 결 선 고 : 2003. 8. 29.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0. 8.부터 2003.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6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0.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9. 3. 31.자로 국가정보원에서 직권면직된 총 21명의 전직 국가정보원 이사관, 부이사관 등이 국가정보원의 직권면직처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승소하기 위하여 1999. 7. 3.경 조직한 단체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내일신문사(이하 피고 내일신문사라 한다)는 일간지인 '내일신문'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는 피고 내일

신문사 소속 기자이다.

나. 이 사건 보도 전의 정황

(1)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당시 정권이 현대그룹을 통하여 북한에 약 4,900억원을 송금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대북뒷거래조사특위를 구성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정형근은 2002. 9. 25.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과 청와대 모비서관사이의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에 관한 전화통화내용을 공개하며, 국가정보원의 현직고위간부가 넘겨주었다는 도청 기록을 제시하였다.

(2) 또 정형근 의원은 2002. 10. 4. 국회 정무분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북한에 대한 거액 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인 박지원과 요시다 다케시 신일본산업 사장 사이의 전화통화내용을 공개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3) 새천년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한화갑의 방북설인 이른바 도라산프로젝트도 정치권에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기사의 보도

피고 ○○○는 "정형근 도청자료 입수처는 '국사모'", "국정원을 정치권 출대기에 악용... '정보기관 무력화' 비판도"라는 제목 하에, ① 한나라당 대북뒷거래조사특위의 핵심 인물인 정형근 의원이 제시한 국가정보원의 도청자료와 관련하여 정형근 의원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인 원고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내용, ② 정형근 의원이 2002. 9. 25.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과 청와대 모비서관사이의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에 관한 전화통화내

용을 공개하면서 제시한 도청자료는 국가정보원의 현직간부가 전달하였다고 보다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원고를 통해 정형근 의원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라는 내용. ③ 정형근 의원이 2002. 10. 4. 국회 정무분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인 박지원과 요시다 다케시 신일본산업 사장 사이의 전화통역내용을 공개하면서 제시한 자료도 국가정보원의 내부자가 원고를 통하여 정형근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는 내용. ④ 원래 원고는 김대중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해임된 직원들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모임으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국가정보원 내부정보를 빼내 정형근 의원에게 제공하는 사이로 바뀌었다는 내용. ⑤ 한화갑 의원의 방북설인 이른바 도라산프로젝트도 원고가 그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는 내용. ⑥ 원고의 위와 같은 행태에 대하여 정보기관을 정치권 쫓아내기 위해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특히 차기정부에서 한자리 노리고 한 것이라면 더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 ⑦ 정형근 의원의 도청자료 공개는 정보기관의 존재 자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내일신문사는 2002. 10. 8. 자 내일신문 제2면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여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4호증, 갑 5호증의 4, 갑 6호증,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진취지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1) 어떤 보도행위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

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의 적시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 38032판결 등 다수 참조).

(2)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기사를 살펴보면, 이 사건 기사 중 “정형근 도청자료 입수처는 ‘국사모’”라는 제목 부분과 위 ① 정형근 의원이 제시한 국가정보원의 도청자료와 관련하여 정형근 의원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인 원고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내용. ② 정형근 의원이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과 청와대 모비서관사이의 한화그룹의 대한생병 인수에 관한 전화통화내용을 공개하면서 제시한 도청자료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원고를 통해 정형근 의원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라는 내용. ③ 정형근 의원이 박지원과 요시다 다케시 신일본산업 사장 사이의 전화통역내용을 공개하면서 제시한 자료도 국가정보원의 내부자가 원고를 통하여 정형근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는 내용. ④ 원고는 김대중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해임된 직원들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모임으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국가정보원 내부정보를 빼내 정형근 의원에게 제공하는 사이로 바뀌었다는 내용. ⑤ 한화갑 의원의 방북설인 이른바 도라산프로젝트도 원고가 그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는 내용 부분은 그 중 일부가 “...정설이다”,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여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

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가 본래 조직 목적과는 다르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빼내어 원고를 관리하고 있는 정형근 의원 등 한나라당측에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⑥ 원고의 위와 같은 행태에 대하여 정보기관을 정치권 줄서기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특히 차기정부에서 한 자리 노리고 한 것이라면 더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 부분은 원고가 국가정보원의 내부 자료를 정형근 의원 등 정치권에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원고는 그 구성원들이 대통령 선거후 차기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요직에 발탁될 것을 염두에 두고 국가정보원의 내부자료를 정치권과 관계를 맺는데 악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 내지는 의견표명이며, ⑦ 정형근 의원의 도청자료 공개는 정보기관의 존재 자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 부분은 위에서 본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 비판 내지는 의견표명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독자들에게 원고가 본래 조직 목적과는 다르게 그 구성원들이 대통령 선거후 차기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요직에 발탁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빼내어 원고를 관리하고 있는 정형근 의원 등 한나라당측에 전달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내부 자료를 정치권과 관계를 맺는데 악용하고 있고, 이는 비밀유지가 생명인 국가정보기관의 존재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 게재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도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공익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당시 사회적,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북한 거액 송금 의혹 등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도청 여부 및 그 도청자료의 유출 경위에 대한 의혹 및 문제점을 제기하는 점에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된다.

##### (2) 진실성 내지 상당성

###### 가) 진실성

이 사건 기사의 내용처럼 원고가 본래 조직 목적과는 다르게 그 구성원들이 대통령 선거후 차기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요직에 발탁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빼내어 원고를 관리하고 있는 정형근 의원 등 한나라당측에 전달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내부 자료를 정치권과 관계를 맺는데 악용하고 있고, 이는 비밀유지가 생명인 국가정보기관의 존재를 무력하게 만들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 나) 상당성

①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장병호가 정형근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자료에 대하여 그 출처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정형근 의원과 함께 한나라당 대북및거래조사특위 위원이면서 국회 정보분과위원회 위원인 홍준표

의원으로부터 정형근 의원이 원고와 연관되어 있고 폭로한 자료 모두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준표 의원의 국회의원 신분, 국가정보원 등에 근무한 경력, 정형근 의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홍준표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는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②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③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홍준표 의원으로부터 정형근 의원이 원고와 연관되어 있고 폭로한 자료 모두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 장병호가 홍준표 의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홍준표 의원의 제보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큼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 보도함에 있어 그 진실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 배포됨으로써 원고가 그 명예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및 신문 게재 시점과 신문 게재 부분,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피고 내일신문사가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기사 보도일인 2002. 10.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8.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법조항은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고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장부분 송

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를 적용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주 경 진  
판사 민 성 철  
판사 최 석 규

〈별지기사〉

정형근 도청자료 입수처는 ‘국사모’  
국정원을 정치권 줄대기에 악용 ... ‘정보기관  
무력화’ 비판도

북한 거액 송금 의혹을 제기하고, 진행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 ‘대북뒷거래조사 특위’의 핵심 인물은 정형근 의원이다. 특위는 정의원이 입수한 국정원의 도청자료를 토대로 대북 뒷거래의 큰 그림을 그려 놓고, 세부적 사항은 퍼즐마추기를 하듯 추적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정의원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인 국사모(국가사랑모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의원은 지난달 26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청와대 K비서관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국정원 현직 고위간부가 한화의 대한 생명 인수에 울분을 느껴 도청기록을 넘겨줬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정원 현직 고위간부가 정의원에게 직접 넘겨줬다기보다는 국정원 직원 누군가가 국사모 회원을 통해 정의원에게 전달했다는게 정설이다.

또 정의원이 4일 정부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박지원 대통령비서실장과 요시다 다케시 신일본산업 사장의 전화통화 내역도 국정원이 해외통화를 도청한 자료로 내부자가 국사모를 통해 정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사모는 김대중 정부 들어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개편하여 과거 정권과 유착의혹이 있는 인사들을 대거 해임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모임으로 출발하였다.

국사모의 주축은 김영삼 정부 시절 권영해 안기부장 재직시 L모 실장과 함께 근무했던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아직도 복직을 위한 재판을 벌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국정원 1차장으로 근무했던 정의원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사모와 정의원과의 관계는 국정원 내부 정보를 빼내 정의원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이로 점차 바뀌었다. 국사모 회원들은 국정원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현직원 중 친분 있는 인사들이 많고 이를 활용해 국정원 내부 정보를 정의원에게 제공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의 도청기록 뿐만 아니라 한화갑 의원의 방북설인 이른바 도라산프로젝트 등도 모두 국사모에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사모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숨겨진 정보의 공개라는 순기능과 함께 정보기관을 정치권 줄서기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행태가 차기 정부에서 ‘한 자리’를 노리고 한 것이라면 더욱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의 모의원은 “정의원의 도청자료 공개는 금도를 넘은 것”이라면 “정보기관의 존재 자체를 무력하게 만든 것”이라고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끝. □

일본 판결

소년법 제61조에 위반하는 '추지보도' 여부는,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이 해당 인물을 당해 사건의 본인이라고 추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 고 인 : 주식회사 문예춘추

피상고인 : 甲野太郎

최고재판소 2000(受) 제1335호 손해배상청구사건

2003. 3. 14. 제2소법정 판결, 파기환송

원심名古屋高等법원 1999년(未) 제648호,

2000(未) 제24호, 2000. 6. 29. 판결.

원원심名古屋지법 1997(7) 제5034호, 1999. 6. 30. 판결

주 문

원 판결 중 상고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전항의 부분에 관하여 본 건을名古屋高等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대리인 古賀正義의 상고신청이유 제1에 대하여

1. 본 건은 상고인이 발행한 주간지에 게재 된 기사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며 피상고인이 상고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심이 확정된 사실관계의 개요 등은 다음과 같다.

(1) 피상고인(1975년 10월생)은 1994년 9월부터 10월 사이 성인 또는 당시 18, 19세의 소년들과 공모, 연쇄살인, 강도살인, 시체유기 등의 4개 사건에 의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피고인이다.

상고인은 도서 및 잡지 출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週刊文春>이라는 제호의 주간지를 발행하고 있다.

(2) 상고인은名古屋(나고야)지법에 상기 각 사건의 형사재판의 심리가 계류되어 있던 1997년 7월 31일 <週刊文春> 지상에, 제1심 판결 침부의 별지2와 같이 “‘소년법’ 잔학(殘虐)”, “법정메모 독점공개”등의 제목으로 사건 피해자의 부모의 생각과 법정 방청기사 등을 중심으로 한 기사(이하 ‘본 건 기사’로 한다)를 게재했는데, 그 기사 속에 피상고인에 대해 가명을 쓰면서 법정에서의 모습, 범행양태의 일부, 경력, 교우관계 등을 기재한 부분

이 있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 피상고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1) 본 건 기사에 사용된 가명 '甲山一郎'(こうやまいちろう)는 본 건 기사가 게재된 당시의 피상고인의 실명 '甲野太郎'(こうのたろう)와 비슷하고, 사회통념상 그 가명의 사용에 의해 동일성이 비닉(秘匿)되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본 건 기사 중에 출생년 월, 출생지, 비행(非行)경력, 직장경력, 교우관계 등 피상고인의 경력과 합치하는 사실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피상고인과 면식이 있는 특정다수의 독자 및 피상고인의 생활기반인 지역사회에 불특정다수의 독자는 '甲野一郎'과 피상고인과의 유사성을 알게 되어 그것이 피상고인을 지칭하고 있음을 용이하게 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2) 소년법 제61조는 소년사건 정보 속에 가해소년 본인을 추지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보도(이하 '추지보도'라고 한다)를 금지하는 규정인데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소년의 성장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권리의 보호와 함께, 소년의 명예,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에 위반하여 실명 등의 보도를 한 자는 당해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될 것이며 민법 제709조에 근거, 본인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3) 소년법 제61조에 위반되는 '추지보도'는, 내용이 진실이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성인의 범죄사건 보도의 경우와는 달리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

다만 보호되어야 할 소년의 권리 및 법적 이익보다도 명백하게 사회적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는 요청이 강하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면책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본 건 기사는 소년법 제61조가 금지하는 '추지보도'이며, 사건 당시 18세였던 피상고인이 당해 사건의 본인으로 추지되지 않을 권리 및 법적 이익보다도, 명백하게 사회적 이익의 옹호가 강하게 우선되는 특단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본 건 기사를 주간지에 게재한 상고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그러나 원심의 상기 판단은 시인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 판결은 본 건 기사에 의한 피상고인의 피침해이익을, ①명예, 프라이버시로 보고 상고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인지, 이들 권리에 더해 ②원심이 소년법 제61조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한 '소년의 성장발달과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한 권리'까지도 피침해이익이라고 보고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인지에 대해 해당 판결문은 명백하게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상고인은 원심에서, 본 건 기사에 의한 피침해이익을 상기 ①의 권리, 즉 피상고인의 명예, 프라이버시라는 점을 일관해서 주장하면서도 ②의 권리에 대해서는 피침해이익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러한 원심에서의 심리 경과를 감안해 볼 때, 당심(當審)으로서는 원심이 상기 ①의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앞에서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심리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피상고인은 본 건 기사에 의해 '甲野一郎'이 피상고인이라고 추지할 수 있는 독자에

대해, 피상고인이 기소사실과 관련된 죄를 범한 사건 본인이라는 것(이하 '범인정보'라 한다) 및 경력이나 교우관계 등의 상세한 정보(이하 '이력정보'라 한다)를 공표 당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 건 기사에 기재된 범인정보 및 이력정보는 모두 피상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이며 또한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지고 싶지 않은 피상고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정보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피상고인과 면식이 있거나 또는 범인정보 혹은 피상고인의 이력정보를 알고 있는 자는 그 지식을 단서로 본 건 기사가 피상고인에 관한 기사임을 추지할 수 있으며 본 건 기사의 독자 중에 이러한 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들 독자 중에 본 건 기사를 읽고 바로 피상고인에 관하여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이상의 범인정보나 이력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고인의 본 건 기사 게재행위는 피상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그 한도 내에서는 타당하다.

하지만 소년법 제61조에 위반하는 '추지보도'인지의 여부는, 그 기사 등에 의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그 사람을 당해 사건의 본인이라고 추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본 건 기사는 피상고인에 관해 당시의 실명과 유사한 가명이 쓰여졌고, 그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상고인이라고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항의 기재가 없으므로 피상고인과 면식 등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본 건 기사에 의해 피상고인이 당해 사건의 본인이라고 추지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건 기사는 소년법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고 있다.

(3) 그런데 본 건 기사가 피상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 건 기사의 게재에 의해 상고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는 피침해이익별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유무 등을 심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만 할 것이다.

즉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련이 있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는 것일 경우에는 적시된 사실이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을 때 또는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최고재판소 1962년 (가) 제815호 동1966년 6월 23일 제1소법정 판결) 본 건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들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함이 필요하다.

또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관해서는, 그 사실을 공표 당하지 않을 법적 이익과 이를 공표하는 이유를 비교형량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우월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므로(최고재판소 1988년 (가) 제1649호 동1994년 2월 8일 제3소법정 판결), 본 건 기사가 주간지에 게재된 당시의 피상고인의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 당해 범죄행위의 내용, 이런 것들이 공표함으로써 피상고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정보가 전달되는 범위와 피상고인이 입는 구체적 피해의 정도, 본 건 기사의 목적이나 의의, 공표시의 사회적 상황, 본 건 기사에서 당해 정보를 공표할 필요성 등, 그 사실을 공표 당하지 않을 법적 이익과 이를 공표하는 이유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이들을 비교형량하여 판

단함이 필요하다.

(4) 원심은 이와는 달리, 본 건 기사가 소년법 제61조에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동조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소년의 권리 및 법적 이익보다는, 명백히 사회적 이익을 옹호하는 요청이 강하게 우선되어야만 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해야 하나, 본 건에 대해서는 이 특단의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3)에 지적한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심리, 판단함이 없이 상고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원심의 판단에는, 심리를 다하지 못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법령의 위반이 있다. 이 취지를 말하는 논지 제 1점의 2는 이유가 있으며 원 판결 중 상고인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부분에 관해 본 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에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판례타임즈』, 1126호 pp97~101.

번역 : 한동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

## 미국 판결

### 신문을 자신의 영업소 신문판매대에 무료신문들과 함께 비치한 행위는 명예훼손법상 '발행(publish)'으로 볼 수 없다

Piper v. Mize  
(미국 테네시 주 항소법원)

#### 판결요지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다고 주장되는 신문을 자신의 영업소 내 카운터에 다른 무료 신문들과 함께 비치한 개인의 경우, 그 신문을 '발행(publish)'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테네시 주 항소법원이 판단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신문에 게재된 소문이 그 신문의 발행 이전에 이미 마을에 퍼져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하였다.

#### 사건개요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Johnny Piper는 테네시주 Clarksville시의 시장이었고 원고 Donita Piper는 그의 부인이었다. 원고 Lori Turner는 Clarksville 시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이고 Clarksville시의 공인작가(Grants Writer)이었다.

2000년 2월 1일 경 Piper측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The Rattler라는 이름의 지하신문을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피항소인) Curtis Mize는 The Rattler에 글을 쓰거나 편집을 하거나 발행을 하는데 전혀 관여한 바 없고,

The Rattler는 제1심 피고 Paul Avallone의 손으로 제작되어진 것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Curtis Mize가 관여한 것은 그 신문 중 2000년 10월 5일자 신문을 자신의 영업소 내 카운터에 다른 무료 신문들과 함께 비치하여 원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뿐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2000년 10월 5일자 신문의 내용은, “섹스 스캔들이 여전히 시청을 흔들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이었다. 그 기사는, “올해 초 Piper 시장이 쾌활하고 씩씩한 여자인 Lori Turner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조용하고 작은 마을의 구석구석까지 삼시간에 퍼져나갔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 기사는 “시장의 부인인 Donita Piper가 지난 1월 Turner와 일을 벌이고 있는 그를 붙잡아 9번 아이언으로 때려 눕혔다.”고 하였다.

Curtis Mize는 소장의 내용을 부인하였고, 증거개시절차가 끝난 후 약식재판 신청을 하였다. 제1심은 약식재판(Summary Judgment) 신청을 받아들였고, 원고들은 이에 항소하였다.

## 판결이유

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결정적인 쟁점은, ① Curtis Mize가 그 신문의 2000년 10월 5일자를 ‘발행(publish)’하였는가, ② Donita Piper와 Lori Turner는 ‘공적 인물(public figure)’인가, ③ 만약 그렇다면, 기록상 Curtis Mize에게 현실적 악의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가의 세 가지이다.

### 1. 발행(Publication)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 소송에서 사용되는 발행(publication)은 일상 생활에

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명예훼손법에 있어서 ‘발행’은,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술적인 용어이다. ‘발행’은 불법행위의 요소로서 원고가 반드시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된다(Applewhite v. Memphis State University, 495 S.W.2d 190).

마찬가지로 형사소추에 있어서의 발행의 개념과 민사책임의 요소로 사용된 개념을 구분하여야 한다. 즉, 민사소송에 있어서 발행은 제3자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제3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그러나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발행은 인쇄된 내용 자체를 그 명예훼손의 대상인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이유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명예훼손을 당하는 당사자의 성격과 신용에 대한 금전적 손해인데 반하여,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위법행위의 기초가 평화로운 상태를 깨뜨리는 인쇄된 말들에 대한 책임에 있기 때문이다.

발행자인 Paul Avallone에 의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The Rattler 수천 부가 Clarksville 시내에 무료로 배포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지만, Curtis Mize에 관한 이 사건에서 문제는 그의 개인 행동이 어떠한지 여부이다. 그는 Piper측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이었고, 심정적으로 The Rattler지의 기자, 발행자 그리고 편집자와 같은 편이라는 점을 진술서에서 감추지 않았다. 반면, 그가 The Rattler의 배포에 가담한 것은 다른 무료 신문들과 함께 2000년 10월 5일자 The Rattler지를 원하는 고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자신의 영업소 카운터에 놓아둔 것뿐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기록상 2000년 10월 5일자 The Rattler지가 Curtis Mize의 어떠한 행동에 의하여 제3자의 손에 넘어갔다는 증거나 어떠한

제3자가 그의 영업소의 카운터에서 The Rattler지를 한 부라도 가지고 갔다는 증거는 없다. Donita Piper는 스스로 피고 Curtis Mize가 The Rattler지를 얼마나, 누구에게 배포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의 직원이나 고객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선서증언서에서, Curtis Mize 혹은 그의 영업소로부터 어떠한 제3자가 The Rattler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Lori Turner는 The Rattler의 수령을 거절한 Roger Freeman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 수 있었을 뿐, The Rattler지를 확실히 받은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명예훼손적이라고 주장되는 문서를 제3자에게 전달하려다 실패하였다는 사실은 '발행'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명예훼손적이라고 주장되는 내용이 실제로 제3자에게 이해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예훼손법에 있어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Restatement of the Law, Torts, Sec. 564 and comments).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수령자가 이를 그 의도된 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원고가 의도된 상대방이라는 것을 수령자가 알지 못한다면, 명예훼손행위자가 그를 언급하려고 의도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발행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을 읽었다는 것이 필요하다. 그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읽은 사람이 그 의미를 이해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명예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전달받았다고 주장되는 사람에 의하여 읽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그것을 읽은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이 읽었다는 추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Allen v.

American Indem. Co., 63 Ga.App. 894, 12 S.E.2d 127). 수령자가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면, 사용된 용어가 합리적으로 볼 때 명예훼손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Restatement of the Law, Torts 2d, §563, Comments).

우리는 이 사건에서, 신문이나 잡지가 대량으로 배포되어 Restatement(Second) of Torts section 563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다수의 제3자에게 읽혀지고 이해되리라는 것이 추정되는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The Rattler지의 기사의 작성, 발행 및 편집 또는 적극적인 배포에 관여하지 아니한 어느 한 사람이 2000년 10월 5일자를 제한된 방식으로 전시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요소인 '발행'의 의미로서, Curtis Mize가 The Rattler지 2000년 10월 5일자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약식재판을 허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2. 공적 인물(Public Figures)

기념비적인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의 '현실적 악의'의 요건은, 먼저 Donita Piper와 Lori Turner가 위 New York Times 사건에 의할 때 '공적 인물'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테네시 주는 Restatement(Second) of Torts(1997)의 580A조 및 580B조에서 공무원 또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과 일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구분하는 기준을 채택하였다. 공무원 또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만약 피고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과 그것이 명예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혹은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무모하게 무시한 채 행동하였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

을 부담할 수 있다. 일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만약 피고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과 그것이 명예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혹은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무모하게 무시한 채 행동하였을 때, 혹은 그러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함에 있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을 때에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 두 계층의 차이점은 미국 연방헌법 수정제1조, 테네시주 헌법 제1조 제19항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공무원의 행동을 비판할 언론 기관의 권리가 공적인 인물과 일반 개인을 구분하는 기반이 된다. New York Times 사건의 핵심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인 보장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즉 허위라는 점을 알고서 혹은 그것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무모하게 무시한 채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그 공무원이 입증하지 않는 한, 공무원이 그 자신의 공무상의 행위와 관련된 명예훼손적인 허위사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는 것을 금지하려는 연방법 원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대목이다(New York Times, 376 U.S. at 279-80.)

'공적 인물'의 지위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테네시 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공적 인물'이라는 용어는 법원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되어져 왔다. 이 분류에는 그 자신을 중요한 공공의 논쟁의 소용돌이에 자신을 던져 넣은 사람들, 상당한 명성이나 악명을 얻어서 모든 면에서 공적 인물이 된 사람들, 공공의 논쟁에 자발적으로 가담하거나 혹은 이끌려 나와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적 인물이 된 사람들, 공공의 의문점을 해결하는데 있어 특히 유명해진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관여함으로써 인하여 '공적 인물'이 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결정적 요소는 특정한 논쟁에 대하여 개인이 관여한 성격과 정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지위와 그 개인이 관여한 성격과 정도는, 명예를 훼손당한 당사자가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관여하였으나 공무원 혹은 공적 인물의 유형에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는 사건들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어느 한 사람이 오늘은 공무원이었다가 내일은 공적 인물이 되고, 또 그 다음날은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은 일상의 일이다. 그의 지위는 직함 또는 일부 편리한 명칭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그가 특정한 논쟁에 참여한 특성, 성격, 목적, 의도 그리고 정도에도 의존한다(Press, Inc. v. Verran, 569 S.W.2d at 441).

이 사건에서 문제된 상황이 발생할 당시 Donita Piper는 Clarksville 시장의 부인이었던 점, 그녀가 시장의 배우자로서 주를 벗어나 또는 외국으로 여러 차례 여행한 점, 그리고 그녀가 소설을 써 왔고 The Leaf-Chronicle 신문의 초빙 논평자로 활동하여 왔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Lori Turner는 당시 Clarksville시의 공인작가(Grants Writer)이었다. 그녀는 시장 선거의 후보자이었던 적이 있고, Our City 신문과 The Leaf-Chronicle 신문에 여러 가지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었으며, 지난 7년 동안 여러 민간 단체를 상대로 연설을 한 사람이었고, 지역 라디오 방송의 대담 프로의 진행자이었다. Donita Piper와 Lori Turner는 Press, Inc. v. Verran 사건에서 말하는 요소들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공적 인물'이다.

### 3.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이 사건에서 어떠한 음모가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주장하거나 그 점이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다. 원고가 모든 피고들의 연대책임을 주

장하지만, 제공된 증거들은 적어도 피고 Curtis Mize에 관한 한 공동의 행동이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이 약식 재판 신청에 있어서 그 개인의 행동만으로 판단을 받아야 한다.

New York Times 사건, Verran 사건의 기준에 의할 때, 현실적 악의의 증거는 기껏해야 미약한 정도이고,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함이 명백하다. Mize에 대한 약식 재판은 Tomlinson v. Kelly 사건(969 S.W.2d at 405-406)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공적 인물은,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토론은 억제되지 않고, 강건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결단 때문에, 무거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270).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그들은 피고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는 점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입증하여야 한다(Press, Inc. v. Verran, 569 S.W.2d 435, 551; Moore v. Bailey, 628 S.W.2d 431, 433).

명예훼손 사건에서 현실적 악의의 개념은 개인적인 나쁜 뜻, 적대감, 앙심 이상의 것을 내포하는 것이다(Masson v. New Yorker Magazine, Inc., 501 U.S. 496, 510; McCluen v. Roane County Times, Inc., 936 S.W.2d at 939). 오히려 이것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또는 그 진실성과 허위성에 대하여 부모하게 무시한 채 행하여진 것에 국한된다(Press, Inc. v. Verran, 569 S.W.2d at 441; Cloyd v. Press, Inc., 629 S.W.2d 24,27). 피고가 부모하게 무시한 채 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실의 인정권자로 하여금 피고가 실제로 그 발행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심각

한 의심을 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한다(Trigg v. Lakeway Publishers, Inc., 720 S.W.2d at 75).

Piper 시장과 Lori Turner 사이의 정사에 대한 소문이 2000년 10월 5일 이전에 지역사회에 무성하였다는 점은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다. 원고들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증거들을 해석에 보더라도, Mize가 개인적으로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다는 점, 그 소문의 진실성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가 정치적으로 Piper 시장의 반대자이었다는 점이 인정될 뿐이다.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현실적 악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로서 부족하다. 약식재판은 정당하다.

노골적 행동 또는 허위사실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Curtis Mize의 행동이 "그 성격상 노골적이고, 그 정도가 지나쳐서 품위의 한계를 벗어나고 문명화된 사회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것이라는 점"(Major v. Charter Lakeside Hosp., Inc., 1990WL125538)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 The Rattler지 2000년 10월 5일자에 담긴 소문은 그 이전에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었다. 허위사실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볼 근거가 없다(Langford v. Vnaderbilt University, 287 S.W.2d 32).

#### 4. 결론

우리는 제1심 법원이 내린 약식 재판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항소비용은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 Media Law Reporter 31권 pp 1833-1842.

번역 : 장상균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

영국사례 1

**신문사가 잘못된 보도에 대해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제안한 것은 만족할 만한 대응이므로 신청인의 불만신청은 수용할 수 없어**

**불만신청**

Flintshire에 사는 John Clare 씨는 2003년 4월 2일 Daily Post에 실린 "Officer honoured for bravery faces child porn charges" 제하의 기사가 부정확해서, 보도실천강령 제1조(정확성)를 위반했다고 신문평의회에 불만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아내를 위해 그녀의 대리인이 된 그는, 4월 4일 "PC guilty of child porn offences" 제하의 두 번째 기사가 아내의 신원을 노출시켜 실천강령 제10조(범죄 보도)를 위반했고, 부정확했다며 불만신청을 제기했다.

불만신청은 기각되었다.

관련 기사는 컴퓨터 상에

16세 이하 소녀의 음란한 이미지를 만들어 소지한 혐의가 있는 신청인의 재판과(유죄) 판결 내용을 보도했다. 신청인은, 우선 첫 번째 기사에서 그가 포르노그래프 이미지의 콜라주를 만들었다는 내용은 부정확한 기사이고, 두 번째 기사에서는 보도실천강령에 의해 보호받는 무고한 아내의 신원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문사는 첫 번째 기사에 대해 실수를 인정했고, 그것에 관해 사과하면서, 정정 기사 게재를 제안했다. 다만 두 번째 기사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부인이 방청석에서 공판 내내 남편을 지지했고, 재판과정 중 선고 낭독시 'no'라고

외쳤다는 점, 판결 후 남편을 위로했다는 점등을 이유로, 그녀에 대한 신원공개사실은 잘못된 점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신청인은 신문사의 사과와 첫 번째 기사의 부정확성에 대한 정정보도 제안은 충분한 보상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실제로 'no'라고 소리친 사람은 그의 아내가 아니었고, 부부가 공판 중에 서로 관련되는 것을 피하려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결 이후 그와 그의 아내가 서로를 위안하려고 한 것은 가족간에 상식적인 일이므로 그것이 신청인 부인의 신원을 공표하기로 한 신문사의 결정을 정당화시키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문사는 Clare 부인은 기사의 초점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만약, 기사에서 그녀를 방청석에서 'no'라고 외친 사람으로 믿

게 하는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제안했다.

### 평 결

PCC는 실천강령 제10조(1항)에 관한 예전의 결정들이 기사에서 나타난 범죄자와 친척 또는 친구 관계, 법정 절차와 그들의 연루, 그리고 그들의 두드러진 출연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입장 등을 고려했다는 점에 유의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신청인은 부부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피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신청인 부인의 법정 참석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불행히도 위원회는 그녀의 공판정 참석으로 인해 그녀와 그녀의 남편 신원이 보도상 공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한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는 두 개의 불만신청과 관련하여, 신문사가 그런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그것을 정정하는 기사를 제안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결국 위원회는 이러한 신문사의 제안 조치들은 보도실천강령 하에서 만족할 만한 대응이었으므로 더 이상의 조치는 필요치 않다고 결론지었다. □

불만신청은 수용되었다.

신문사는 이전에 그녀의 애인이었던 한 남자가 그들 사이의 적나라한 관계에 대해 제보한 사실을 기초로 문제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Coronation Street"(전원 생활을 그려 40년 넘게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영국의 드라마)에 출연하는 여배우인 신청인은 문제 기사가 도를 벗어나서 상세한 묘사를 담고 있고, 이러한 내용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 당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3년 전 신청인이 "Coronation Street"의 배역을 맡았을 때, 본사와 News of the World지 양사에서 신청인의 반대 없이 그 관계에 대한 유사한 보도를 한 바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문제의 기사는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이 이전에 불만 없이 허락했던 동종의 기사 소재에 대해 이제 와서 불만을 제기한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Granada TV는 신청인이 부모님의 간청으로 과거의 기사를 읽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어쨌든 과거의 기사들은 현재의 기사만큼 자세한 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 영국사례 2

### 예전의 사생활 침해보도를 신청인이 묵인했다는 점이 새로운 사생활 침해기사의 게재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어

#### 불만신청

Suranne Jones 양은 2003년 5월 22일자 Daily Sport지의 "Suranne은 내가 만난 가장 음탕한 소녀"라는 제하의 기

사가 그녀의 사생활(privacy)을 침해해, 보도실천강령 제3조(프라이버시)를 위반했다며 자신이 출연했던 Granada TV를 통해 PCC에 불만신청을 제기했다.

## 평 결

PCC는 신문사가 당사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간주한 이전의 기사들에 대해 신청인의 불만이 없었다는 것 이외에 보도를 옹호하는 다른 어떤 주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위원회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고려해 볼 때 사생활을 침해한 기사 내용이 게재될 때마다 불만신청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예전에 개인의 사생활을 다룬 기사의 내용에 대해 묵인했다는 점과 그러한 묵인이 새로운 사생활

침해 기사를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균형을 맞추어 봐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보도대상이었던 사적 영역의 성격과 사생활 묘사의 정도이다. 그러나 문제 기사에 공익성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청인이 3년 전에 동일한 전 애인과의 몇 번의 인터뷰에 대해 불만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 그런 침해적인 기사의 게재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결국 위원회는 문제의 보도가 심각하고 부당한 보도실천 강령 위반이어서 불만신청을 수용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

으로 만든 신문사의 편집방향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토마스 부인은 신문사가 삭제한 답변글의 한 단락에는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많은 부분에 있어 어떤 한 방향으로 이끄는 논조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미디어는 ‘강력한 남성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작가란 ‘성역에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생략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왜곡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답변글에 대한 신문사의 제목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신청인은 이러한 불만을 신문사에 항의하고,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사로부터 아무런 회답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불만신청에 대해 신문평의회는 편집인이 게재될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편집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편지의 의미를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편집인은 신문에 게재되는 편지내용에 적절한 제목을 선정할 권리도 갖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러한 고려 하에서 신문평의회는 편지에 주어진 제목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지만 토마스 부인의 편지에서 생략

## 호주사례 1

### 편집인이라 할지라도 독자편지의 내용 일부분을 생략하면서 전체의 논조를 바꾸는 것은 잘못

호주신문평의회는 Julie Thomas 씨가 Sunday Herald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불만신청의 내용은 Michael Barnard의 오피니언 기사에 관한 자신의 답변글에 대해 신문사가 논조와 관점을 변화시키

는 방식으로 편집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기사는 “가정 불안과 사회 혼란”이라는 현대사회의 문제에 있어 “극단적인 페미니즘”의 역할을 문제 삼은 내용이었다.

그녀는 평등과 공정을 향한 여성의 노력을 사소한 것

한 단락은 편지의 전체 논조를 바꾸었다고 판단하고, 이란 범위에서 신청인의 불만신청을 수용했다. □

## 호주사례 2

### 신문사가 기사본문에 언급되지도 않은 사실에 근거해 제목을 선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불만신청 수용

호주신문평의회는 Sunday Telegraph지에 게재된 두 개의 표제에서 “반역자(traitor)”란 단어의 사용에 대한 불만신청을 수용했다.

문제가 된 두 개의 제목은 탈레반 전사 혐의자 David Hicks에 대한 미 정부의 군사 재판이 중지될 수 있으며, 이후 그의 공판은 고국인 호주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사용되었다.

2003년 7월 20일자 1면에 실린 선두 제목은 ‘반역자를 집으로’(BRING HOME THE TRAITOR)였고, 전모를 취재한 9면 기사의 다른 제목은 ‘반역자, 고향에서 심판 받을 수도’(Traitor may be tried at home)였다.

신청인인 Michael Costigan 박사는 정의, 개발, 환경을 위한 Bishops' Committee의 사무총장으로서 문제의 제목들은 정직하고 공정하지 못했다

고 주장했다. 그는 1면의 제목은 아주 노골적인 편견으로서 아직 반역혐의로 공판정에도 선 적이 없는 데이비드 히스를 그 제목에서처럼 ‘반역자’라고 명명하거나 합당하게 부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신문사가 그의 기본적인 인권을 포악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하면서 두 개의 제목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전체적으로 공정성과 균형성이 부족한 방식으로 Hicks 씨에 대해 매우 심한 비난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Hicks 씨가 호주 법정인 아니라, 미군 법정에 서고 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당사 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매체들도 Hicks 씨를 테러리스트이자 탈레반 전사라고 언급한 적이 많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신문평의회는 신문사

가 고의로 Hicks 씨의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문제의 보도를 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거부하면서, 제목에서 사용된 ‘반역자’란 단어는 전체 어떠한 보도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즉 ‘반역자’란 단어는 1면의 요약 기사 본문이나 9면의 전모 기사 본문 어디에서도 사용되지 않았다. 1면에선 그가 탈레반 전사 혐의를 받는다는 점만 언급했고 9면에서는 그를 ‘테러용의자 David Hicks’로 묘사했다. 심지어는 그가 아프가니스탄 전투에서 체포된 이후 미군에 의해 “적군 전투요원”으로 공표 되었다는 사실조차 보도하지 않았다.

문제의 보도에는 Hicks 씨를 호주로 송환해 법정에 세우는 데 있어 직면한 난관들과 공정한 절차를 밟아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미국과의 회담에 대한 호주 수상의 발표내용들이 주로 언급되어 있었다.

결국 신문평의회는 제목에서 ‘반역자’란 단어의 사용은 Hicks 씨의 여러 범죄 혐의들에 관해 언급하고, Hicks 씨가 공판정에 선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문 기사의 전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했다. □

# 인론과 법

## 언론소송과 판결

### '조선 색깔시비' 비판 대법원 승소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주·반민족' 행태를 비판했다가 거액의 소송을 당한 언론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정지환 〈시민의신문〉 취재부장에 대해 조선일보 기자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정 부장은 월간 〈반〉 기자로 있던 1998년 12월, 〈월간 조선〉(11월호)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장이던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한 논문을 표집받아 '마녀사냥식 사상검증'을 벌이자 〈반〉에 조선일보의 행태를 비판하는 특집을 실었다. 문제가 된 기사는 '병리학적 심리분석-조선일보 왜 극우반공 집착하나'와

'집중해부/조선일보의 친일행각' 등 두 꼭지. "조선일보의 침입행적이 해방 이후 반공몰락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기사의 뼈대다. 그러자 조선일보와 월간 조선의 기자 세 명은 정 부장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겨레 2003. 8. 27

### "송신평 특혜의혹 제기 명예훼손" 시기명 씨, 조중동 상대 6억 소송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 씨는 8일 "『땅 거래에 특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4억원,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에 대해 각각 2억원 등 모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적도, 로비를 벌이거나 특혜를 받은 적도 없는데 마치 비리에 연루되고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5월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씨가 자신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땅 2만여 평을 팔 때 청와대를 업고 삼바타운 건축 인허가 조건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2003. 9. 9.

### 대전법조비리 보도 명예훼손 실책무죄 선고

이른바 '대전법조비리'를 보도했던 전·현직 대전MBC 기자들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5일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현직 기자 김 모(30)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나머지 전·현직 기자 3명에게는 벌금 5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1999년 1월 7일 보도내용이 이종기 변호사가 관·검사들에게 대가성 소개비를 건네고 사전처리에 있어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 변호사의 뇌물죄가 확정된 만큼 검찰과 경찰

등 공무원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했다는 것은 허위가 아니므로 이날 보도내용에 관련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9월 '대전지역 검사와 판사들이 이 변호사와 어떤 형태로든 뒷거래를 했거나'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보도이며 피고인들도 사건에 이를 마필적으로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방목적은 없었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이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된다"고 유죄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잘못된 보도로 개인 의 법의를 침해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

하지만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과 이 사건 보도로 법조계가 반성하고 자성하는 계기가 됐으며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이 해소된 점등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기자들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방침이다.

이들 기사는 1999년 1월 대전법조비리를 보도, 이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연합뉴스, 2003. 12. 5.

### '월간조선' 상지대에 3천만원 배상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임종운 부장판사)는 12일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학교를 비방하는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월간조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월간조선사는 상지학원에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간조선)은 4~9년 전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썼으

며 비리 혐의로 물러난 김분기 전 이사장의 학교운영 문제점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이사장 퇴임 이후의 문제점만을 중점적으로 과장 보도했다"며 "이 사건 기사는 공익 목적보다 김 전 이사장 쪽의 일방적 입장을 대변해 상지대학교를 비방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 김 전 이사장이 물러나고 관선이사장이 과전되면서 몇 년 동안 학내 갈등을 겪었던 상지대학교는 <월간조선>이 지난해 5월호에서 '상지대 학교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학생운동을 비호하면서 학교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자 소송을 냈다.

한겨레, 2003. 11. 12.

### 조선일보, 한겨레 상대 1억 손해소 패소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5일 "한겨레신문이 조선일보가 근거 없는 의혹을 키운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가 한겨레신문과 강모 기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출처 인용으로 의혹이 커져 가는 경우 언론사

상호간에 기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비록 그 의혹이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악의가 없는 한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한겨레 기사 중 일부 문구가 잘못 표현됐지만 대체로 진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 의회조사국 래리 넉시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3월 조선일보 등을 인용해

현대가 북한에 비밀자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한미관계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월간조선이 그 해 5월호에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대북비밀송금 의혹을 제기한 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그 해 9월 국감에서 같은 의혹을 주장하자 한겨레 신문은 "조선일보가 핑퐁식으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2003. 12. 5.

### '노 대통령 선손상대 소송' 재판 계속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노 대통령의 중지신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14일 "노 대통령이 지난 9월말 소송절차 중지신청을 냈지만 법에 규정된 중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서면공방을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소송절차 중지신청 사유는 천재지변 등으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당사자에게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겼을 때 등이며 중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재판부는 "장애사유'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통상 법학 교과서 등에서는 당사자가 국지적 정쟁에 휘말렸거나 유죄 당해서 소송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등으로 본다"면서 "노 대통령 소송의 경우 아직 이를 중지할 만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단 서면공방이 마무리되면 당사자의 의향을 보고 속도조절을 고려해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사상 최초의 대통령 소송으로 관심을 모은 이 사건은 노 대통령의 소장 제출 후 피고들에게 소장이 송달됐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답변서가 노 대통령 측

에 전달되면서 한차례 공방이 오갔다. 노 대통령 측의 재판변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노 대통령은 지난 8월 자신과 형 건평 씨 등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과 조선·동아·중앙·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들어 모두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라 9월 25일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다며 소송절차 중지신청을 법원에 냈다.

경향신문, 2003. 11. 15.

## 정△△, 시사저널 1억원 손해소

정○○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난달 30일자로 발행된 주간 '시사저널'이 게재한 "청와대 '강원도의 힘' 작용했다" 제하의 보도와 관련, 지난 17일 작성 기자와 발행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18일자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브리핑은 "시사저널은 이 기사에서 (주)아이엠티가 급성장한 것은 정

비서관이 이 회사 대표이사과 같은 강원도 출신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고, 이는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로서 총선과 관련한 뭉치돈 마련이 그 뒷배경일 것이라는 골자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비서관은 소장에서 "나는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과 기업현황, 성과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보도를 전후해 확인한 바로는 해당 회사는 보

도와 달리 최근 사세가 급성장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국 내가 모임에서 (대표이사) 세 차례 정도 만난 사실을 제외하고는 전부 허위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가 치명적으로 손상당한 것은 물론 참여정부 구성원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3. 11. 18.

## 한나라당 병풍조작 보도 손해뉴스 6천만원 배상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종운)는 한나라당과 이재오 의원이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이 김대업 테이프가 조작이라는 양심선언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 대표와 취재기자 및 거짓 진술자 금모(구속)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일 "피고들은 연대해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기사는 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의 병풍 확산을

막기 위해 금씨에게 기자회견을 강요하고 거짓 증언 대가로 3,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공작정치를 했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표명했으므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월간조선에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월간조선은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에서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4~9년 전 자료인데도 현재도 그런 것처럼 보도하고 다른 대학에서도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상지대만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는 등 원고를 반대하는 전임 이사장의 일방적 입장만을 대변해 원고를 비방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됐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2003. 11. 13.

## 민연련, 조선닷컴에 손해소

민주연론운동시민연합(민연련)은 자신들의 글이 조선닷컴(www.chosun.com)에 무단으로 올려져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사와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달 29일 서울지법에 냈다.

민연련은 소장에서 "민연련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시민연대)는 조선닷컴에 글을 기고한 적에 없는데도 피고들은 조선닷컴에 5월 16일 시민연대 결의문, 성명서, 선언 참가자 명단 등을, 5월 24일 민연련 성명서 <신군부의 독재

에 부역한 언론인은 사죄하라> 등을 마치 원고가 기고한 것처럼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민연련은 "이로 인해 민연련과 시민연대가 2000년 9월 조선일보 기고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놓고서 마치 이중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의 신용과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조선닷컴은 지난 5월 '조선일보 못참겠다' 코너에 민연련·시민연대의 자료를 올렸다가 6월초부터는 '퍼온글'이

라는 말머리를 붙였다. 이후 시민연대가 발간하는 '주간 안티조선' 등의 자료는 '게시판 링크'로 연결, 독자들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준석 조선닷컴 인터넷뉴스부장은 "민연련과 시민연대측이 공식적으로 항의해 온 적은 없었고 이들이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는 관련 기사를 보고서 '퍼온글' 형식으로 바꾸었다"면서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2003. 9. 3.

### 현대차노조,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 제기

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 이현구)는 5일 올해 임단협 과정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지법에 낸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임금 인상액과 연봉 등

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노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7건의 기사에 대해 건당 3천만원씩 모두 2억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또 이 회사 문모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혐의로 3-4개 중앙일간지 및 경제지에 대해 추가 제소 및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3. 9. 5.

### 현직검사, 기자상대 손배소 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는 15일 박○○ 광주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 11명이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여운환 씨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시사저널과 기자 네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5백만원씩 지

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남지역 검찰', '호남 검사'라는 호칭으로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원고들을 특정해 명예를 훼손했으며, 원고들이 여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보도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2001년 10월 '호남 주먹, 호남 검사, 검은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으며,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관련 검사들은 그 해 11월 1일당 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중앙일보, 2003. 10. 16.

### "권노갑 씨 등에 동사실보는 3천만원 배상하라"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29일 권노갑 전 민주당고문, 김옥두·김홍일 민주당 의원이 "정현준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동아일보사와 기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동아일보사 등은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 모두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현준 씨가 동고동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보도된 상황에서 기사 속 이니셜 표현만으로도 권 전 고문 등을 특정했다고 할 수 있다"며 "검찰 쪽에 공식적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한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권 전 고문 등은 <동아일보> 2000년 11월 1일자의 "정현준이 만든 사실판드에 여권 실세가 가입했다"는 요지의 기사에서 영어대문자 케이(K)로 여권 실세가 지칭되고 다음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의원에 의해 자신들의 실명이 거론되자 소송을 냈다.

한겨레, 2003. 10. 30.

### "기자실 폐쇄는 업무방해" 부산고법, 원심 판결 유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20일 울산시청 내 기자실을 폐쇄했다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강모(43)·김모(27) 씨 등 울산시청 공무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백만~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자실 폐쇄 권한이 없는 공무원 1백여 명이 기사작

성 중인 기자 10여명을 기자실 밖으로 몰아내고 출입문을 폐쇄한 것은 위력으로 기자들의 기사검색 및 취재, 기사작성과 송고 등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울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인 강씨 등은 지난해 8월 12일 기자실 폐쇄 투쟁다짐대회를 연 뒤 울산시청 본관 2층 204호 중앙지 기자실로 물러가 기자들

을 밖으로 내보내고 기자실을 폐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울산시청을 출입하던 중앙지와 경제지 출입기자 10여명은 아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후 대다수 중앙지 기자는 시청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 사용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3. 11. 21.

## “청와대 비서실 반론보도 청구 인용”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10일 대통령 비서실이 조선 일보사를 상대로 낸 8월 14일자 주간조선 「향응파문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제하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가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제1부속실장의 전횡에 의해 좌우된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 면담 등의 업무는 의전비서

관을 거쳐 합리적으로 처리된다는 등의 반론보도 청구는 보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지엽말단적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기사 내용에 대한 반박을 넘어 신청인의 의견 내지 가치 평가를 제시하거나 사실에 대한 반박을 넘는 보충적·추가적 진술은 반론보도 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

다.

주간조선은 8월 14일자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부속실 직원이 늘어나 보안사고 우려가 높으며 양길승 향응 파문이 엉성하게 마무리된 것은 부속실장의 막강한 파워 때문’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으며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10월 2일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연합뉴스, 2003. 12. 10.

## “뉴스화면 도송광고 배상책임”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13일 MBC와 ‘뉴스데스크’ 김주하 앵커가 ‘뉴스화면을 허락도 없이 신문 광고에 실어 저작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건강식품 판매업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천500만~2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기사는 단순한 사실

보도가 아니라 작성자의 주관이나 평가가 반영된 어문저작물로 봐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의 동의도 없이 보도 화면을 광고로 실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뉴스데스크의 공신력과 지명도 등을 감안, 화면인용의 매출 기여도는 전체 매출의 3분의 1로 봄이 타당하다”며 “아울러 당시 보도내용은 피고 회사의 제품을 소개한 것이 아닌데도 화면 도용을 통해 기사가 마치 제품을

소개한 것처럼 느끼도록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BC는 박씨가 작년 2월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된 ‘헛개나무 열매가 알코올 분해 및 간염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후 자신이 판매하고 있던 헛개나무 열매 추출액 광고에 허락도 없이 이 보도 화면을 따와 실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3. 11. 13.

## 이장희 교수, 한국논단, 월간조선에 실부송소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와 경실련 통일협회가 “통일교육용 교재를 이적표현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와 한국논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수의 이 사건 책자 내용이 북한을 찬양, 선전하거나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성을 띤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교수가 공산주의자

내지 친공, 친북세력이라고 할 수 없어 한국논단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월간조선 기사의 경우 이 교수의 책자가 이적 표현물이거나 이 교수가 친북인사라는 사실을 적시 또는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교수가 책자 내용에 자신의 통일관 내지 사상을 나타내기 위해 어린이들의 글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실었

다는 보도는 이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월간조선과 한국논단이 각각 97년 7월호와 9월호에서 자신이 경실련 통일협회와 공동으로 제작한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 1세대’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2003. 9. 28.

### '검찰 내 비호세력 보도' 언론사 상대소송 패소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16일 이○○ 인천지검 차장검사가 “‘이용호 게이트’ 당시 나를 이씨의 검찰 내 비호세력인 것처럼 보도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씨

와 통화를 시도한 사실에 근거, 두 사람이 밀접한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의 추측 및 의혹제기는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악의적 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동아일보가 제작년 9월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이씨, 권

력층과 수시통화’라는 기사에서 99년 4~6월 이씨의 전화손님 명단에 대검 중수부 과장이던 자신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자 3억원의 손배소를 냈고 1심 재판부는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2003. 10. 16.

### MBC, 월간조선 상대소송 패소

서울지법 민사26부(재판장 주경진)는 26일 MBC와 김종배 전 MBC 사장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월간조선과 박관용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전 사장 등에게 패소 판결 했다.

김 전 사장 등은 박 의원이 2001년 3월 월간조선에 기고한 글과 월간조선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신문개혁에 방송을 이용하려 한다’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가 자신들이 정권의 언론계 장악정

책에 동조하는 친정부 인사 내지는 정치적 하수인이라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심어줘 명예를 훼손했다며 4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여권이 언론장악 기도를 하였는지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찬양이었던 점, MBC가 공영 방송사로서 국민의 여론형성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 MBC의 대표이사에 대한 자질 평가에 대한 비판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월

간조선 등 보도는 언론자유 범주에 포함되는 정당한 비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언론이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간 갈등구조를 없애고 통합을 이뤄야 할 정권이 언론계 인사에 개입해 특정지역 출신 인사를 대거 등용하는 것에 대한 언론기관의 비판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2003. 9. 27.

### '야인시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강 현)는 22일 고 임○○(본명 권○○)씨의 유족들이 “SBS의 TV드라마 ‘야인시대’가 고인을 사실과 다르게 과격한 인물로 묘사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송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처분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인을 다소 과격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드

라마가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근대사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한 작품으로서 그 방송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인에 대한 묘사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스토리 구성이나 극적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 회화화한 것에 불과하고 드라마가 어디까지나 픽션 드라마라는 점에서 합

리적인 시청자라면 그러한 부분까지 모두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씨의 유족은 드라마 ‘야인시대’가 임씨를 단순하고 과격한 인물로 묘사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6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연합뉴스, 2003. 9. 22.

### 신문술리취, 굿데이에 '공개경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안용득)는 최근 제760차 회의를 열어 굿데이의 연재만화 '대물' 제220~222회 내용에 대해 공개경고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 만화에서 살인을 교사하고 칠순 노파를 범한다는 내용을 상스럽게 묘사한 것은 독자들에게 인명경시 풍조와 부적절한 성적 충동심

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유사한 모방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징계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3. 11. 27.

## 위원장, 미·일 언론계 시찰

박영식 위원장은 지난 11월 17일 출국, 일본 아사히신문사,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와 MLRC(Media Law Resource Center)를 차례로 방문해 언론사들의 자율적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다짐했다.

박 위원장의 이번 시찰에는 사무처 김일경 총무팀장과 권오근 심의2팀 차장이 수행했으며 11월 24일 귀국했다.

이들 일행은 아사히신문사를 방문하여 일본 언론의 자율 규제기구 전반기 아사히신문의 자율심의기구의 '지면심사위원회' 및 '보도와 인권위원회'의 역할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쓰야마 쇼에이(津島 昭英) 자율심의기구 사무국장은 '지면심사위원회의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한 보도와 편집의 방향 등을 정하는



기능을 하며, 보도와인권위원회는 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물론 일반 독자가 보도의 잘못을 호소해오면 이를 심사하여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도와인권위원회는 제3자적 시각의 자율기구로서는 일본 내 첫 시도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지 방문 때는 마이클 게틀러(Michael Getler) 음부즈맨과 미국 언론에 있어서 음부즈맨의 역할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언론사의 노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일행은 미국의 MLRC를 방문해 샌드라 바론(Sandra Baron) 사무국장과 데이빗 해러(David Heller) 상근변호사를 만나 언론소송의 심각성과 소송 예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조한 이스라엘 대사, 위원장 예방

지난 4일 우지 마노르(Uzi Manor)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아비빗 바일란(Avivit Bar-Ilan) 서기관이 박영식 위원장을 예방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과 한국의 언론중재제도 및 위원회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2003년도 추계 체련행사 실시

서울 사무처는 지난 10월 24일 과천 서울대공원 산림욕장에서 추계체련행사를 가졌다. 직원들은 대공원을 감싸고 있는 청계산에 조성된

약 7km에 달하는 코스를 산책하며 산림욕을 즐겼다. 지역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각각 체련행사를 가졌다.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발족

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총선이 치러짐에 따라 지난 12월 17일 헌판식을 갖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발족했다. 선심위는 이날 위원장으로 양

삼승 변호사를, 부위원장으로 유원석 변호사를 선출하고 본격적인 기사심의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선심위는 내년 5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된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명단〉

직책	성명	약력
위원장	양삼승	변호사(현)
부위원장	유원석	변호사(현)
위원	김재곤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경일	전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이동화	전 서울신문 주필, 상무이사
	최광일	전 대한매일신보 이사
	김영환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현)
	김주인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현)
최현철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현)	

## 강원지방토론회 개최

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춘천 베어스타운관광 호텔에서 『언론평해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을 주제로 강원지방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

론회는 강원지역 각계 인사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경 강원중재부장(춘천지법 부장판사)이 주제논문을 발표했으며 이관열 위원(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 사회를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취재나 보도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초상권이나 음성권 침해노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질문에서부터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통한 위원회의 역할 강화 요구에 이르기까지 열띤 토론

을 벌였다.

언론사측 참석자들은 공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전략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손해배상청구까지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일단 중재를 거치도록 한다면 소송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지역언론으로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위원회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로 언론피해사례 및 이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국방송학회, 『취재원 보호, 알권리 그리고 보도의 자유』, 한국방송학회, 2003.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와 프라이버시』, 한국언론재단, 2003.

한국언론재단, 『저널리즘 평론 : 오보』, 한국언론재단, 2003.

한국언론학회, 『세계의 미디어교육과 우리의 과제』, 한국언론학회, 2003.

권혁남, “우리나라 액세스 채널의 현황과 과제”, 한국언론정보학회 2003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2003. 11. 14.

김경호, “미국의 언론윤리 제고를 위한 제도와 기구 고찰”, 〈언론윤리 제고를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세미나, 2003. 11. 7.

김경호, “보도기사의 재산적 가치와 무단전재”, 한국언론학회 2003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2003. 10. 11.

김덕모, “보도와 인권 : ‘SBS 뉴스추적’”, 『언론중재』, 2003년 가을호.

김동민, “각계 방송법 개정안 검토”, 〈시청자 주권 차원에서 본 방송법 개정방향에 대한 세미나〉,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개최 세미나, 2002. 10. 30.

김성규, “인신공격과 수사적 과장, 그 경계선은 어디인가”, 『방송문화』, 2003년 9월호.

김성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방송문화』, 2003년 9월호.

김우룡, “방송의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을 비평한다”, 〈텔레비전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의 현실과 쟁점〉, 한국방송학회 개최 세미나, 2003. 11. 21.

김재협,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제한범위”, 『신문과방

송』, 2003년 10월호.

김재협, “공인에 대한 비판 기사의 허용 범위”, 『신문과방송』, 2003년 10월호.

김재협, “장소에 따른 표현 자유의 범위”, 『신문과방송』, 2003년 10월호.

김창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상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검토”,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대응 방안〉, 방송위원회 개최 토론회, 2003. 12. 1.

김창룡, “미디어 비평의 현실과 과제”, 〈텔레비전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의 현실과 쟁점〉, 한국방송학회 개최 세미나, 2003. 11. 21.

김창룡, “영국의 언론윤리 제고를 위한 제도와 기구 고찰”, 〈언론윤리 제고를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세미나, 2003. 11. 7.

김현주, “한국 TV의 매체비평 프로그램”, 〈매체 상호비평의 이상과 현실〉, 관훈클럽 개최 세미나, 2003. 11. 28.

류한호,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신문개혁입법운동의 의제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회 2003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2003. 11. 14.

박미영, “언론포해 구제제도 : 언론사 소송 대비책”, 『신문과방송』, 2003년 10월호.

박수택, “언론윤리강령의 비판적 재고찰과 실천적 제안”, 〈언론윤리 제고를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세미나, 2003. 11. 7.

박용상,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상)”, 『언론중재』, 2003년 가을호.

박진국, “지역언론의 역대 선거보도와 문제점”, 〈17대 총선과 지역언론의 역할〉, 전국언론노동조합 개최 토론회, 2003. 10. 23.

박형상, “언론의 자유 vs. 종교의 자유”, 『방송문화』, 2003년 9월호.

손동권,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형사책임”, 『언

- 론증재』, 2003년 가을호.
- 안호철, “인터넷상 불건전정보유통규제에 관한 고찰”, 〈인터넷 시대의 법제도적 쟁점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개최 학술대회, 2003. 12. 6.
- 양삼승, “언론평해 구제제도 : 실태와 개선방안”, 『신문과방송』, 2003년 10월호.
- 유익선, “취재원 보호의 사법적 현실과 쟁점”, 〈취재원 보호, 알 권리 그리고 보도의 자유〉, 한국방송학회, SBS 개최 세미나, 2003. 10. 17.
- 유익선, “통신방송융합 내용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개최 학술대회, 2003. 12. 6.
- 유일상,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권”, 〈취재원 보호, 알 권리 그리고 보도의 자유〉, 한국방송학회, SBS 개최 세미나, 2003. 10. 17.
- 유일상, “언론평해 구제제도 : 새 틀을 모색한다”, 『신문과방송』, 2003년 10월호.
- 윤 경, “언론평해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 언론중재위원회 개최 토론회, 2003. 11. 14.
- 윤영태, “선거보도와 윤리”, 〈17대 총선과 지역언론의 역할〉, 전국언론노동조합 개최 토론회, 2003. 10. 23.
- 이민규 · 현준영, “일간신문 스포츠면에 실린 성묘사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2003.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2003. 11. 14.
- 이민용, “취재, 보도의 자유와 한계”, 〈취재원 보호, 알 권리 그리고 보도의 자유〉, 한국방송학회, SBS 개최 세미나, 2003. 10. 17.
- 이용성, “언론평해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개최 토론회, 2003. 10. 31.
- 이용성, “한국 언론의 병폐와 원인 분석”, 〈언론윤리 제고를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세미나, 2003. 11. 7.
- 이재진, “SBS 압수수색 그리고 취재원 보호”, 『관훈클럽』, 2003년 가을호.
- 이재진,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갈등해결 방식에 관한 연구 - 한·미간의 판례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2003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2003. 11. 14.
- 이창현, “매체상호비평, 무엇을 위한 것인가?”, 〈매체 상호비평의 이상과 현실〉, 관훈클럽 개최 세미나, 2003. 11. 28.
- 임병국, “언론평해 구제제도 : 외국의 피해구제제도”, 『신문과방송』, 2003년 10월호.
- 임병국, “제3자적 조정기관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 『관훈클럽』, 2003년 가을호.
- 전영구, “출판·잡지 간행물 윤리강령의 재구축”, 한국언론학회 2003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2003. 10. 11.
- 정운식, “방송·통신 융합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대응방안〉, 방송위원회 개최 토론회, 2003. 12. 1.
- 조준원, “반문보도청구사건의 법적 쟁점과 판결경향”, 『방송문화연구』, 제15권 1호, 2003.
- 최영묵, “방송법 개정의 주요 쟁점 및 방향”, 〈시청자 주권 차원에서 본 방송법 개정방향에 대한 세미나〉,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개최 세미나, 2002. 10. 30.
- 최영훈, “주요국 인터넷 내용규제법제 비교: 호주, 싱가포르, 일본을 중심으로”, 〈인터넷 시대의 법제도적 쟁점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개최 학술대회, 2003. 12. 6.
- 허 영, “매체비평 프로그램의 현실과 쟁점”, 〈매체 상호비평의 이상과 현실〉, 관훈클럽 개최 세미나, 2003. 11. 28. □

## On-Line 중재 상담실



### 방송 횡포에 대처하려면...

얼마 전 대전OOO방송기자라고 하면서, 어떤 내용을 질문하기에, 혹시 방송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계속 질문만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답변하고, 정확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 9시 지역뉴스 방송시간에 저의 답변이 마치 인터뷰하는 식으로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사전에 인터뷰한다는 사실을 말하지도 않으면서, 저의 답변을 자의적으로 편집하는 방송 횡포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요.



귀하의 음성이 보도된 문제의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피해를 입었다면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내용의 사실여부가 아닌 취재과정의 문제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여부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인허유 사실을 공자하자 않고 주재하여 당사자와 허락 없이 방송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 한 잡지사가 무단으로 사진을 도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제 지인 중 한 분의 사진이 11월

중 한 잡지에 무단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사진의 내용은 그 분의 뒷모습 전신이 특정된 사진이었는데 그 잡지를 본 그 분의 친구들 중 몇몇 분이 알아보고 그 분께 연락을 취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진이 게재된 난에는 사진에 나온 특정인의 옷차림을 비평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잡지사는 그분의 허락이나 양해 없이 몰래 사진을 찍었기에, 그 분은 자신이 사진을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잡지사에 전화를 했지만, 잡지사에서는 뒷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그 분의 항의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지금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사진이 잡지에 게재된 것을 안 때로부터는 약 2주 정도가 경과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구제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법원의 참작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촬영된 사진이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의한 피해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사진이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더라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저희 위원회에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밝히는 중정보도나 반론보도 정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저희 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여 중정보도가 게재되었을 때 이것이 법원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부분이므로 저희가 답변해 드리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지하여 주십시오. 이를 포함하여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뉴스에 대하여 사과방송을 요청할 수 있나요.**

인천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의 '원생 확대사건'으로 연일 뉴스가 방송되고 있는데 ○○○와 ○○○방송국에서 인천에 있는 모 어린이집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데도 저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인천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표현이겠지만)이라고 방송됨으로 인하여 현재 원아 부모님들께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으며, 신입원아 모집에 치명적인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예훼손의 차원을 넘어서 저희 '○○어린이집'의 존립이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방송을 요청합니다.



인천 모 어린이집 '원생 확대사건'을 보도한 방송 기사에서 '○○어린이집'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귀하께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고유 명칭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각 방송사별로 중정보도 혹은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 과정에서 귀하께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재신청은 방송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이 때 요구하는 중정보도 혹은 반론보도의 내용은 "방송이 보도된 어린이집이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관련이 없음"을 밝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중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아닌 사과보도는 저희 위원회의 중재대상인 바가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십시오.



**애매모호한 특정인의 의견 게재에 대해**

11월 19일자 오전에 인터넷상에 올라왔던, 스포츠신문 모 기자의 "간 큰 ○○홈쇼핑 임원들"이라는 기사 중 일부를 올립니다.

· ○○홈쇼핑 한 관계자는 "약 2개월 전부터 준비한 행사인데다 외부 손님들을 초대한 것이라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다"며 "지난 1년 간 ○○홈쇼핑이 좋은 물건을 팔 수 있게 도와준 것에 대한 사은 성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타사 관계자는 "모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대검과 ○○ 간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보였다.

그는 "아무리 초청 행사라도 오히려 협력업체 쪽에서 부담을 느낄 만한 자리"라며 "○○그룹 정도의 정보력이면 대검의 움직임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 중 '타사 관계자'는 어느 회사의 어느 위치에 어떤 사람을 지칭한 것인지 너무나도 애매모호하고 신빙성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이 신뢰할 수 없는 특정인의 의견으로 인해 기사 전체를 읽은 독자로 하여금, ○○홈쇼핑이나 크게는 ○○전체의 기업이미지를 압수수사에 대해 반응도 없고 골프나 즐기는 율바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매도하는 듯합니다.

요즈음 언론의 흥포에 많은 회의를 느껴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이 중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가 언론사나 기자로 하여금 주재원의 신문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권한은 없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하신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특정 기업이

부도덕한 기업으로 인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기업이 직접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저희 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사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중재신청은 가능할 수 없습니다.



**매각 문제로 민감한 때에 회사로고를 중복시킨 경우**

현재 한국항공 노동조합과 대한항공이 경영권 인수 문제로 민감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간OO는 대한항공 로고 아래에 한국항공의 로고를 붙여 게재함으로써 마치 한국항공이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하였습니다.

저희 3,200명의 한국항공 노동조합은 항공산업 발전 위해서 '대한항공의 인수 반대'라는 목표를 위해 절대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마당에 주간OO의 이러한 행위는 실수로 자행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가 가능한지요?



회사에 관한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었다면 회사의 명의로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보도가 명확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로고를 아래위로 배치한 것을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자회사라고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으나, 만일 사건이 접수된다면 중재부의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신속 장애인복지관' 보도에 대한 사과방송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시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장애인업무 담당자 OOO입니다. 2003. 11. 17. OOO방송 저녁 9시 뉴스시간에 보도된 내용 중 저희 안양시에서 건립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마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

는 것처럼 보도된 바 사실과 다르게 과장 보도되어 담당자로서 이에 대한 반론보도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장애인에게 적기에, 전문가의 재활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장애가 고착되거나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지만 기존의 복지관을 통하여는 최장 1년 이상을 대기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위해 관내 여러 부지를 조사하였으나 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안양시 산하 청사가 있는 부지 내에 건립하기로 계획하여 2001년 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2년4개월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시설이 좋은, 또한 전국 시, 군에서 유일한 장애인종합복지관 2개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시장님의 지대한 관심과 관련 직원들의 노력으로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수영장, 목욕탕, 수치료실,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점자도서관 등 시설설치와 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좋은 점을 적극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2003. 11. 5일 개관식을 가졌으나 일부시설의 기계는 외국에서 들여오므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부터 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안산시에 거주하는 모 장애인이 안양시에서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복지관을 지었다고 OO O와 OOO방송국에 연락하여 2003. 11. 2. 취재를 하였으나 OOO에서는 취재가치가 없어 방영하지 않기로 하였고, OOO에서는 2003. 11. 17. 재차 취재를 하면서 수영장에 휠체어 장애인이 입수할 수 없도록 하였고, 목욕탕도 턱이 있어 사용하기 어려우며, 비상탈출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방송에서 언급한 수영장 목욕탕은 아직 외국에서 장비가 도착하지 않아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휠체어 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은 경사로보다는 이동리프트를 이용하여 수영장에 입수하고 목욕탕에도 입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며 장애인을 수영장내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재활교사와 장애인 모두에게 편리한 장비라 판단되어 고가의 외제장비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비상탈출구 또한 경사가 완만하여 열려하는 바와 같이 원심력에 의한 가속으로 하강하지 않습니다. 취재 다음날 직접 비상탈출구를 이용하여 보기도 하였습니다. 취재 당시 이러한 사

항을 설명하였으며 사전에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장애인에게 더욱 편리하지 않은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면 지적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안양시에서 지은 복지관이 탁상행정 의 표본으로 비주어져 본 방송을 시청한 일반시민은 물론 장애인들의 항의성 전화가 빈번한 실정이며 장애인들의 꿈의 도시로 가꾸고자 노력한 안양시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과방송 또는 반론보도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 드리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 문의하신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방송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었다면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보도나 반론이 아닌 사과방송은 저희 위원회의 중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같은 경우라면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안양시)가 되어야 할 것이며, 담당직원이나 부서장 개인의 명의로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십시오.

**Q** 본인의 동의 없이 기사에 실린 사진

현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어느 날 채용박람회 참석했다가 회사의 면접 인터뷰 도중에 신문의 취재행위의 일환으로 본인에 대한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이 이뤄졌고 면접관과의 인터뷰 도중이어서 면접에 마이너스가 될까봐 사진 촬영을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다음날 신문을 보니 실업과 관련한 기사에 저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모 지방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실업상태인줄을 모르고 있었던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모든 사실이 공개되었고 오히려 취업에 대한 모든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저의 동의 없이 사진촬영을 하고 사진을 게재한 해당

신문사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해당 신문에 먼저 항의하기 이전에 적절한 구제방법을 찾고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은 분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자 할 때 도움을 드리는 기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조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조상권 침해에 의한 피해는 법원에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으셔야 하며,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저희 위원회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도움을 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급식중단’ 뉴스 관련 문의**

며칠 전부터 보도되고 있는 부산의 한 중학교 급식비 미납자들에게 대한 급식 중단관련 사건에 대해 대부분의 기사들이 해당 학교를 학생 120명을 굶긴 비정형 학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정형편이 어려운 80여 명의 학생들과 급식시 도움을 주는 도우미 학생들 20여 명은 무료 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 도시락을 먹는 학생들 10여 명을 제외한 600여 명이 현재 급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급식신청에 대한 급식비의 기한은 11월 4일이며 이 기간에 미납된 학생수가 200여 명, 11월 8일까지 급식비 지급기한을 연장한 결과 미납된 학생이 120여 명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지난달 밀린 미납금과 이번 달 미납금이 거의 600여 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급식업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장기한 내에 납부를 해 주기를 바란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이 때도 미납이 될 경우에는 급식업체에서 급식을 중단한다고 하니 이때에는 각자가 도시락을 싸 올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들은 대부분 방송에서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식으로만 몰아 가고 있으며, 당일 급식 중단 후에도 여러 담임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왔는지, 용돈이 있어 매점에서 먹을 수 있는지를 확인

하고, 자비를 내어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를 벗어나 정말 사정이 어려워져서 식사를 못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미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굶긴 학생이 120명이라니요? 이런 제목의 글들을 쓴 언론에 대해 시정 요청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R** 급속중단 보도내용과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보도되어 해당 중학교가 피해를 입었다면, 중학교의 명의로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개월이 지났는데도 중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실확인여 전혀 없이 일방의 이야기만으로 기사가 나간 이후 언론이 적절한 구제를 해주지 않아 문제가 종결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신문을 본 사람들은 그 기사에 대한 일방적 주장만으로 모든 내용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2일에 기사가 게재되었고,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중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중재신청을 하려면 해당 일자 신문이 있어야 할텐데, 스크랩을 안 해 놔서 없거든요, 어디서 구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보도가 나온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10월 2일자 기사를 당일 날 확인하였다면 현재로서는 중재신청 기관이 도과하였으므로 중재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일자 신문은 도서관 등에서 열람과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료를 허락 없이 기사화 했다면?**

저희 회사는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수집·가공된 자료에 대해서는 본 회사

의 허락 없이 공개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 일간지에서 본 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자료의 출처를 묻는 회사의 요청에 대해 기사는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본 회사는 자료가 귀중한 재산이므로 이러한 보도는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자료의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는 기자의 대응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자료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그 취재원을 알아야 하겠는데 방법이 없을 지 알려주십시오.



**R** 문의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므로 저희 위원회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도움을 드리는 어려운 사항인 듯 합니다. 저희 위원회가 언론사로 하여금 자료의 출처를 밝히도록 결정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문의하시거나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소송을 통한 구제방법이 있는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기관이나 단체에서 언론사에 사진을 제공했을 때 제공한 기관이나 단체의 명이 기사에 게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사를 작성한 출입담당기자의 명의로 사진이 게재된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관련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R**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는 저작권에 대한 사항이라 여겨지므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제가 된 사진에 대해 기자가 촬영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공했다는 사실을 보도문의 형태로 밝히고 싶다면 저희 위원회에 해당 단체의 명의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문의 추측보도와 관련해...**

모 주간지의 보도와 관련해 문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한 주간지에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 추측보

도를 했습니다. 보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타이밍 절묘해 의혹낀길” - 청송감호소 농성사태 김태춘 배후설 왜 나왔나”라는 제목 하에, “청송감호소 농성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청송감호소 주변에서는 전 범서방파 두목 김태춘 씨의 연루설이 떠오르고 있다.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수감자들에 의해 지난해 10월 발생한 청송감호소 농성사태는 당시 일주일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지난 5월 다시 농성사태가 벌어졌고, 이어 지난 9월 말에도 농성이 발생했다. 이처럼 감호소 내에서 농성사태가 줄을 잇자 교정당국에서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특히 수감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라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더욱 교정당국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송감호소 주변에서는 이번 농성사태의 배후에 김씨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감호소 측이나 김씨 측은 모두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김씨 배후설이 나오는데는 몇 가지 정황상의 이유가 있다며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주장한 세 가지 배경 역시 한가지 부분은 완전히 잘못된 팩트인데다 또 한가지 이유는 단순한 사실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느낌마저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한가지 이유 역시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아렇다 저렇다 논할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자가 근거로 든 것이 김씨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 이는 표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지만 그 내심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기자의 추론만 있을 뿐 약 원고지 13매에 이르는 기사 어디에도 뚜렷한 증거나 증언은 한가지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며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근거 없는 추측보도가 혹시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을 음해하거나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게 되리라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었다면 저희 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때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보도에 직접 언급된 당사자만이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아니고 소속단체가 이 기사의 직접적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 이 기사로 인해 간접적 피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도가 아니라면 저희 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보도에 대하여...

2003년 9월 23일자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기사인데 기사내용이 허위 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호텔 측은 온천탕 영업을 숙박 영업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수과정에서 온천권자와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아 온천수에 대한 문제가 아직 매듭지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텔 측은 수돗물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천수라고 속여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그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는 호텔 측이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정보도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당사자의 명의로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의 당사자는 기사에 직접 언급된 사람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과 같은 경우는 온천수와 관련한 분쟁 당사자 등 해당 기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인터넷에 게재된 기사는 현재 중재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종이신문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 \*중재업무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시정권고업무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하여 전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서양식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나 지방사무소에서 무료로 배부하며, FAX나 인터넷 홈페이지(www.pac.or.kr)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 \*중재신청의 종류

##### • 반론보도청구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정정보도청구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 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추후보도청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

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중재심리

- 중재심리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

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 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전국 15개의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

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⑦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

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중재절차등)** ①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

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⑧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 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 제6항의 중재불성립 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 2(불복절차)** ① 반론보

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청구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

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출석요구서

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 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⑦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방 송 법

**제어조(반론보도청구권)**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은 당해 방송이 행하여진 날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무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한정되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 ④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

-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정당·후보자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인 경우에는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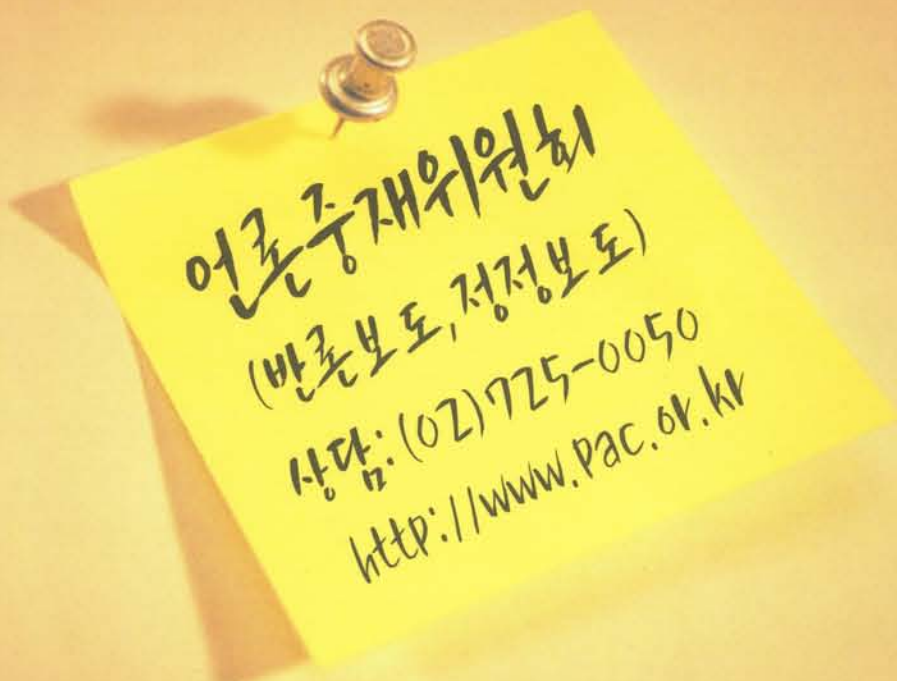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찾아가기: <http://www.pac.or.kr/>

# 언론중재위원회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정정보도)  
상담: (02) 725-0050  
<http://www.pac.or.kr>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언론중재위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비용없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드립니다.
- 언론중재 신청기간은 보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신청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14일(직권 중재결정의 경우 21일) 이내에 중재를 해 드립니다.
-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중재부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언론중재위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국 15개 중재부)



##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02)725-0050, (02)732-6031

<http://www.pac.or.kr>